

〈譯註〉

『舊唐書』·『新唐書』 杜黃裳·裴度·高崇文·田弘正 등 列傳 역주

정 병 준 *

〈목차〉

- | | |
|----------------------|----------------------|
| 1. 『구당서』 권147, 杜黃裳傳 | 2. 『신당서』 권169, 杜黃裳傳 |
| 3. 『구당서』 권158, 武元衡傳 | 4. 『신당서』 권152, 武元衡傳 |
| 5. 『신당서』 권173, 裴度傳 | 6. 『신당서』 권152, 李絳傳 |
| 7. 『구당서』 권151, 高崇文傳 | 8. 『신당서』 권170, 高崇文傳 |
| 9. 『구당서』 권162, 高霞寓傳 | 10. 『신당서』 권141, 高霞寓傳 |
| 11. 『구당서』 권140, 劉闢傳 | 12. 『신당서』 권158, 劉闢傳 |
| 13. 『구당서』 권112, 李錡傳 | 14. 『신당서』 권224상, 李錡傳 |
| 15. 『구당서』 권132, 盧從史傳 | 16. 『신당서』 권141, 盧從史傳 |
| 17. 『구당서』 권141, 田弘正傳 | 18. 『신당서』 권148, 田弘正傳 |
| 19. 『구당서』 권161, 烏重胤傳 | 20. 『신당서』 권171, 烏重胤傳 |

[해설]

이 역주는 唐 憲宗의 藩鎮改革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자료(II)이다. (1) 두황상·무원형·배도·이강은 현종을 보좌하여 변진개혁을 이끈 재상들이고, (2) 고승문·고하우는 현종 초기에 반역 변진을 토벌한 명장들이고, (3) 유벽·이기는 현종 초기

*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에 반역을 일으킨 변진의 수장들이고, (4) 노종사는 昭義節度使로 있으면서 현종이 成德節度使 王承宗을 토벌하던 중인 원화 5년(810) 4월 불손한 행동을 보이다가 당군에 사로잡혀 처단되었고, (5) 전홍정은 원화 7년(812) 8월 魏博 변진을 들어 조정에 귀순한 후 위박군을 이끌고 변진 토벌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6) 오중윤은 노종사의 부하 장수로 있으면서 唐軍이 노종사를 사로잡을 때 공을 세워 河陽節度使 등에 임명된 후 변진개혁이 거의 완수된 원화 14년(819) 3월 변진 支郡(즉 屬州)의 군사권을 刺史에게 귀속시키도록 建言하여 채택된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I. 『구당서』 권147, 杜黃裳傳¹⁾

두황상은 字가 遵素이고 京兆[府] 杜陵²⁾ 人이다. 進士·宏辭科에 급제하자 杜鴻漸³⁾이 심히 그릇이라고 하며 중히 여겼다. 郭子儀의 朔方從事가 되었는데, [代宗 大曆 13년(778) 12월] 곽자의가 입조하면서 [判官 京兆] 두황상에게 삭방의 留務(즉 유후의 사무)를 맡겼다. 邠의 장수⁴⁾인 李懷光과 監軍이 몰래 곽자의를 대신하고자 모의하여 거짓 詔書를 만들어 大將 溫儒雅 등을 주살하려고 하였다. 두황상이 바로 그 거짓을 분별하고 이회광을 힐문하자 이회광이 땀을 흘리며 죄를 자복하였다. 諸將 가운데 제어하기 어려운 자는 두황상이 곽자의의 명이라고 속여 모두 박

1) 『구당서』 권147, 두황상전, 3973~3975쪽.

2) 『元和郡縣圖志』 권1, 關內道1, 京兆府 萬年縣 조, “杜陵, 在縣東南二十里, 漢宣帝陵也”(中華書局, 4쪽).

3) 『구당서』 권108, 두홍점전, 3282~3284쪽; 『신당서』 권126, 두홍점전, 4422~4424쪽.

4) 보다 정확한 직명은 朔方軍都虞候·兼邠寧慶三州都將이었을 수 있다. 즉 정병준, 『舊唐書』·『新唐書』 李納·李師古 등 列傳 譯註, 『한국고대사탐구』 22, 2016, 421쪽(『구당서』 권121, 이회광전 역주), 433쪽 참조.

으로 내보내니 수개월이 지나도 난이 일어나지 않았다.⁵⁾

후에 조정으로 들어가 臺省의 관원이 되었으나 裴延齡의 미움을 받아 10년 동안 승진하지 못하였다. [德宗 興元 원년(784) 정월 給事中 두황상이 江淮宣慰副使가 되었다.⁶⁾ 貞元 말기 [順宗 정원 21년(805) 4월] 太常卿이 되었다.⁷⁾ 王叔文이 권력을 흠쳤을 때 두황상은 마지막까지 그 門에 나아가지[造] 않았다. 일찍이 그 사위 [재상] 韋執誼⁸⁾에게 말해 百官을 이끌고 皇太子가 監國하기를 청하게 하였는데, 위집의가 즉시 말하길 “丈人께서는 겨우 하나의 관직[官]을 얻었는데, 입을 열어 禁中의 일을 의논하려고 하는가”라고 하자 두황상이 발끈하면서 “두황상은 三朝(즉 肅宗, 代宗, 德宗)에서 은혜를 입었는데, 어찌 하나의 관직이라고 하는가”라고 하고 바로 옷을 털면서 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순종 정원 21년(805) 7월 두황상이] 平章事에 배수되었다.⁹⁾ 邠州節度使 韓全義가 마침 討伐의 임무를 맡게 되었으나 공이 없자 두황상이 상주하여 파직시키게 하였다.

[憲宗 元和 원년(806) 정월]¹⁰⁾ 劉闢이 난을 일으키자 논자들이 劍南은 險固하여 마땅히 일을 벌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나 두황상만이 강하

5) 『자치통감』 권225, 대력 13년 12월 조, 7253쪽.

6) 『자치통감』 권229, 흥원 원년 정월 조, 7396쪽.

7) 『자치통감』 권236, 順宗 정원 21년 4월 조, “先是, 太常卿杜黃裳爲裴延齡所惡, 留滯臺閣, 十年不遷, [胡三省 注: 杜黃裳自佐朔方軍入爲侍御史, 十年不遷] 及其壻韋執誼爲相, 始遷太常卿”(7614쪽). 덕종은 같은 해 정월에 죽었다.

8) 『자치통감』 권236, 순종 정원 21년 2월 조, “以吏部郎中韋執誼爲尙書左丞·同平章事. 王叔文欲掌國政, 首引執誼爲相, 己用事於中, 與相唱和”(7608쪽). 위집의의 정치활동에 관해서는 任士英 저, 류준형 역, 『황제들의 당제국사』, 푸른역사, 2016, 265~266쪽, 268~269쪽, 273쪽 등 참조.

9) 『자치통감』 권236, 순종 정원 21년 7월 조, “又以太常卿杜黃裳爲門下侍郎, 左金吾大將軍袁滋爲中書侍郎, 並同平章事. 俱文珍等以其舊臣, 故引用之”(7619쪽).

10) 뒤의 『구당서』 고승문전 참조. 거기서는 유백이 阻兵(반역)한 시점이 전 해인 헌종 영정 원년(805) 11월로 기술되어 있다.

게 토벌하길 청하였고 현종이 이에 따랐다. 또 상주하여 中官을 監軍으로 삼지 않고 다만 高崇文을 使로 삼아 맡기길 청하였다.¹¹⁾ 두황상이 蜀 토벌을 주도(經營)하여 성공에 이른 것은 고승문을 지목하여 맡긴 것이 실제에 매우 합당한 때문이다. 고승문은 평소 劉濼¹²⁾을 꺼려 피했는데, 두황상이 사람을 보내 고승문에게 말하길 “만약 분발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유용으로 그대를 대신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고승문이 사력을 바쳤다. 유벽을 평정하고 재상[宰臣]이 입조하여 축하하자 황제가 두황상을 가리키며 말하길 “이는 卿의 공적이다”라고 하였다. 후에¹³⁾ 현종과 대화하다가 方鎮의 임명[除授]에 대해 이르자 두황상이 상주하여 말하길

-
- 11) 『자치통감』 권237, 원화 원년 정월 조, “劉關既得旌節, 志益驕, 求兼領三川, …… 上欲討關而重於用兵, 公卿議者亦以爲蜀險固難取, 杜黃裳獨曰, ‘關狂戇書生, 取之如拾芥耳! 臣知神策軍使高崇文勇略可用, ……’, 上從之. 翰林學士李吉甫亦勸上討蜀, 上由是器之. 戊子, 命左神策行營節度使高崇文將步騎五千爲前軍, ……”(7626쪽).
- 12) 『冊府元龜』 권374, 將帥部, 忠5, 유옹 조, 中華書局, 4450쪽; 『구당서』 권143, 유옹전, “[劉]濟之異母弟也. …… 後[父]怱爲盧龍節度使, 病將卒, 濼在父側, 卽以父命召兄濟自漠州至, 竟得授節度使. 濟常感濼奉己, 濼爲瀛洲刺史, …… [濼]拔所部兵一千五百人·男女萬餘口直趨京師, 在道無一人犯令者. 德宗龍遇, 特授秦州刺史, 以普潤縣爲理所. 順宗傳位, …… [憲宗]賜其額曰保義. 其軍蕃戎畏之, 不敢爲寇, 常有復河湟之志, 議者壯之. 元和二年十二月, 卒”(3901쪽); 『구당서』 권14, 현종본기상, 원화 원년 4월 조, “戊申, 以隴右經略使·秦州刺史劉濼爲保義軍節度使”(417쪽); 『신당서』 권148, 유옹전, “盧龍節度使[劉]怱之次子, [劉]濟母弟也. ……”(4780~4781쪽) 등. 유평·유제에 관해서는 정병준, 『舊唐書』·『新唐書』李師道·吳元濟·王承宗 등 列傳 역주, 『동국사학』 72, 2021, 499쪽, 503쪽(유옹 기사도 있음) 참조. 또 유옹에 관한 논저로는 任士英 저, 류준형 역, 『황제들의 당제국사』, 281~282쪽; 許超雄, 「河朔規矩與朝廷憲章: 中晚唐時期京西北的河朔將領 -以劉濼爲中心」, 『史林』 2019-1 등 참조.
- 13) 『자치통감』 권237, 원화 원년 정월 조, 7627쪽.

덕중은 艱難 이후에 일[事]에 대해 대부분 姑息하였다. 貞元 연간에 매 번 수[帥守]가 죽으면 반드시 먼저 中使를 보내 그 군대의 동태를 살피고 그 副貳의 大將 중 명망이 있는 자는 반드시 近臣에게 후하게 뇌물을 주어 임명되기를 구하였다. 황제는 반드시 그 稱美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니 이것이 관례[因循]가 되어 方鎮 가운데 변수를 特命한 것이 드물었다. 폐하께서는 마땅히 貞元의 故事를 깊이 생각하시어 점점 法度로 諸侯를 정숙하게 하면 천하가 다 스러지지 않을 걱정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는데,¹⁴⁾ 헌종이 그 말을 옳다고 여겼다. 이로 말미암아 군대를 동원하여 蜀·夏를 주살한 후 藩臣의 교만[驕傲]을 용납하지 않고 兩河를 克復하여 威令이 다시 떨쳤는데, 대개 두황상이 황제의 결단을 열게 한 때문이다. 두황상은 스스로 추진하고 계획하는 재주가 있고 權變에 능하였으나 자신과 사물을 대할 때 청렴의 명예심이 적었기 때문에 재상[鼎職]에 오래 있지 못하였다. [원화] 2년(807) 정월 檢校司空·同平章事·兼河中尹·河中晉絳等州節度使가 되었다.¹⁵⁾ 8월 邠國公에 봉해졌다. [원화] 3년 9월 河中에서 졸하니¹⁶⁾ 나이가 71세였다.¹⁷⁾ 司徒로 추증하고 시호를 宣이라 하였다.

두황상은 성품이 우아·담박하고 사람에게 너그러웠으며 마음에 비록 주장이 강했으나[從長] 입으로 사리를 어기지 않았다. 처음에 卿士가 되었을 때 딸이 韋執誼에게 시집갔는데, 위집의의 존경을 거의 받지 못했다. 위집의가 유형에 처해지자[譴逐] 두황상이 끝내 그를 보호하였으나 嶺表

14) 정병준, 「四王의 亂」 이후 平盧節度使 李納의 兩面性, 『한국고대사탐구』 35, 2020, 490쪽, 519쪽 참조.

15) 『자치통감』 권237, 원화 2년 정월 조, 7639쪽.

16) 『자치통감』 권237, 원화 3년 9월 조, “河中·晉絳節度使·邠宣公杜黃裳薨”(7656쪽).

17) 『신당서』 권169, 두황상전에서는 70세라고 보인다.

에서 죽었는데, 그 喪이 돌아오도록 청하여 葬事를 지내주었다. 이에 이르러 질병에 걸렸는데, 醫人이 그 약을 잘못 처방하여 병이 심해졌으나 화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재상이 되어 除授할 때 流品을 분간하지 않고 혹은 뇌물을 받고 관인을 승진시켰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겼다.

두황상이 죽은 후 뇌물 문제가 발각되었다. [원화] 8년 4월¹⁸⁾ 御史臺가 상주하길 “前 永樂令 吳憑이 승려 鑿虛의 청탁으로 故州 邠寧節度使 고승문의 처소에서 4만 5천 貫을 뇌물로 故 司空 두황상에게 주었는데, 모두 두황상의 아들 [杜]載에게 보냈다. 按問하니 자복하였다”라고 하였다. 칙서를 내려 말하길

오빙은 일찍이 使府에 佐하고 宦途(즉 朝官)를 역임하였으니 스스로 마땅히 法을 무서워하고 몸을 아껴야 하거늘 어찌 사람에게 뇌물을 주었는가! 사안이 非道에 해당하고 이치가 懲愆에 합당하니 마땅히 昭州로 配流하라. 그 두재에게 준 錢物은 [두황상이] 재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충애가 실로 깊었으므로 이 貨財를 보내도 능히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이미 按問하고 모두 徵收하였으니 終始의 은혜를 온전히 하고자 寬大의 전범을 넓게 적용하도록 한다. 그 취한 錢物은 모두 마땅히 矜免하고 두재 등을 모두 석방하라.

라고 하였다.

두재는 太子僕이 되었다가 [穆宗] 長慶 연간에 太僕少卿·兼御史中丞으로 승진하고 入吐蕃使에 증임되었다.

18) 『구당서』 권15, 현종본기하, 원화 8년 2월 조, “捕獲受于嶺路爲致出鎮人梁正言, 及交構權貴僧鑿虛, 並付京兆府杖死”(445쪽); 同 4월 조, “僧鑿虛爲高崇文納賂四萬五千貫與宰相杜黃裳, 共引致人永樂縣令吳憑, 付錢與黃裳男載, 敕吳憑配流昭州, 黃裳·崇文已薨歿, 所用錢不須勘問, 杜載釋放”(446쪽) 등. 지배선, 『고구려 유민의 나라 제와 당, 그리고 신라·발해·일본 교류사』, 혜안, 2012, 507쪽 참조.

두황제의 동생 [杜]勝은 進士에 급제하여 [宣宗] 大中 시기에 給事中이 되었다. 두승의 아들 [杜]庭堅 또한 진사에 擢第되었다.

2. 『신당서』 권169, 杜黃裳傳¹⁹⁾

두황상은 字가 遵素이고 京兆 萬年人이다. 進士第에 뽑히고 또 宏辭에 합격하였다. 郭子儀가 벽소하여 朔方府를 佐하게 하고 곽자의가 입조하면서 留事를 주관하게 하였다. 李懷光이 監軍과 함께 몰래 모의하여 조서라고 속여 大將 등을 주살하고 무리의 마음을 움직여 곽자의를 대신하려고 하였다. 두황상이 조서를 받고 가짜라는 것을 알고서 이회광에게 질문하니 이회광이 땀을 흘리며 죄를 자복하였다. 이에 諸將 가운데 마음이 비뚤고 무례하여 제어하기 어려운 자는 두황상이 모두 곽자의의 명으로 교체하니 무리가 감히 난을 일으키지 못하였다.

조정으로 들어가 侍御史가 되었으나 裴延齡의 미움을 받아 10년[期] 동안 승진하지 못하였다. [德宗] 貞元 연간 말에 太子賓客이 되어 韋曲에 거주하였다. 당시 中人이 그 땅을 청해 公主에게 주려고 하였는데, 덕종이 말하길 “城南은 杜氏의 鄉里이니 바꿀 수 없다”라고 하였다. [順宗] 정월 21년(805) 4월] 太常卿으로 승진하였다. 당시 王叔文이 권력을 잡았는데 [用事], 두황상은 한 번도 그 문을 지나지 않았다. [같은 달] 사위 韋執誼가 재상[輔政]이 되었는데, 두황상이 太子監國을 청하도록 권하자 위집의가 말하길 “公은 비로소 하나의 官을 얻었는데, 바로 입을 열어 禁中의 일을 논하는지!”라고 하였다. 두황상이 화를 내며 말하길 “나는 三朝에서 은

19) 『신당서』 권169, 두황상전, 5145~5147쪽.

해를 입었는데, 어찌 하나의 관이라고 하는가”라고 하고 바로 옷을 털면서 나갔다.

[순종 정원 21년(805) 7월] 皇太子가 軍國事를 총괄하며 두황상을 門下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로 발탁하였다.²⁰⁾ 이에 夏綏銀節度使 韓全義가 간사하게 아첨하였으나 공을 세우지 못하였으므로 그가 입조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파직시키도록 아뢰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劉關이 叛하자 논자들은 유벽이 험한 것에 의지하므로 토벌하면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하였으나 두황상만은 강하게 사면하지 않기를 권하고 中人이 監軍하지 않도록 상주하여 高崇文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였다. 무릇 병사들의 진퇴는 두황상이 조정에서 지시하고 명을 내렸는데[指授], 機[要]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고승문은 평소 劉濼을 꺼렸는데, 두황상이 사람을 보내 말하길 “公이 명에 분발하지 않으면 마땅히 유옹으로 바꿀 것이다”라고 하였다. 고승문이 두려워서 사력을 다해 賊을 포박하여 헌상하였다. 蜀이 평정되자 군신들이 축하하였는데, 憲宗이 두황상을 가리키며 “이는 卿의 공이다”라고 하였다.

이전에 덕종은 전란[多難]을 삼가고 경계하여 藩鎮에게 姑息하는 데 힘써 매번 帥臣이 죽으면 中人을 보내 그 軍을 엿보고 무리가 세우려는 자를 관찰하였으므로 大將이 사사로이 金幣로 [황제] 좌우 사람과 관계를 맺어 節制를 구하였는데, 만년에는 더욱 심하여 方鎮의 [人]選이 조정에서 나오지 않았다. 두황상이 매번 조용히 갖추어 말하길

폐하께서는 마땅히 貞元의 폐단을 거울삼아 法度を 정돈하고 諸侯를 삭감[腹損]하면 천하가 다스려질 것이다.

20) 『신당서』 권7, 순종본기, 정원 21년 7월 조, 206쪽.

라고 하였다. 황제가 일찍이 前古의 王者가 어떻게 어지러움을 다스렸는가에 대해 묻자 두황상은 황제가 다스림에 굳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요체를 얻지 못할까 우려하여 미루어 말하길

王者의 道는 자기를 수양하고 賢[才]에게 맡기는 데 있을 따름이다. 綱領을 장악하는 것은 그 큰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簿書·獄訟이나 百吏의 능력 여부와 같은 것은 본래 人主가 自任하는 것이 아니다. 옛날 秦始皇帝가 친히 헤아려 일을 결정하여 前世의 웃음거리가 되고, 魏明帝가 尙書의 일을 살피고자 하였으나 陳矯가 따르지 않았으며, 隋文帝가 해가 질 때까지 일을 처리하였으므로 衛士가 저녁밥을 전달하여 太宗이 조소하였다. 그러므로 왕자는 사람을 택해 위임하고 책임지게 하여 성공하면 반드시 상을 내리고 죄가 있으면 확실히 벌을 준다면 누가 감히 힘쓰지 않겠는가? 孔子가 칭송한 帝舜은 스스로 삼가며 南面하고 그 16相을 능히 천거하고 4凶을 제거하여 無爲[之治]에 이르렀다. 어찌 반드시 정신을 소모하고 신체를 피로하게 하며 이복을 애써 집중한 연후에 다스림을 이루겠는가?

라고 하였다. 황제는 두황상의 말이 충심이라고 여기고 칭찬하며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夏를 평정하고 齊를 제거하고 蔡를 멸망시켜 兩河를 회복하고 機秉을 재상에게 돌려주니 紀律이 바로잡혀 성대하게 中興이라고 불렸는데, 두황상이 啓[發]한 것이다.

元和 2년(807) 檢校司空·同中書門下平章事로서 河中·晉絳節度使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邠國公에 봉해졌다. 다음해에 40이 나이가 70세였다. 司徒로 추증하고 시호를 宣獻이라고 하였다. 두황상은 權變에 뛰어나고 왕을 보좌할 大略이 있었다. 성격이 우아·담박하고 사물에 거스르지 않았다. 이전에 위집의에게 예우를 받지 못했으나 [위집의가] 패하자 힘을 다해 구하려고 노력하고 이미 죽은 뒤에는 表를 올려 그 [靈]柩를 운

반해 와서 장사지냈다. 일찍이 병에 걸렸을 때 醫者가 약을 잘못 진상하여 병이 마침내 심해졌으나 끝내 화를 내거나 견책하지 않았다. 하지만 관리[吏]를 제수할 때 등급[流品]을 엄격하게 분별하지 않고 또 서로 예물을 주고받아 감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청렴의 이름이 없었다. 大政을 관장한 지 오래지 않아 그 재능을 모두 발휘하지 못하고 밖으로 전출되어 천하 사람들이 항상 눈 여겨 보았다. 사망한 지 몇 년 후 御史에 의해 두황상이 邠寧節度使 高崇文으로부터 錢 4만 5천 緡을 받았다고 劾奏되었으므로 故吏 吳憑 및 두황상의 아들 [杜]載를 심문하니 죄를 인정하였다. 황제가 옛 공을 생각하여 단지 오빙을 昭州로 流하고 두재는 용서하고 추궁하지 않았다.

두재는 太僕少卿에서 마쳤다.

3. 『구당서』 권158, 武元衡傳²¹⁾

무원형은 字가 伯蒼이고 河南[府] 緱氏[縣]²²⁾ 人이다. 증조부 [武]載德은 天后의 사촌동생[從父弟]으로 官이 湖州刺史에 이르렀다. 조부 [武]平一은 문장을 잘 지었고 考功員外郎·修文館學士로 마쳤는데, 逸人傳에 사적이 적혀 있다. 부친 [武]就는 殿中侍御史에 임명되었는데, 무원형이 존귀해져 吏部侍郎으로 추증되었다.

무원형은 進士에 登第하여 누차 使府에 벽소[辟]되고 監察御史에 이르렀다가 후에 華原縣令이 되었다. 그때 畿輔에 鎮軍督將 가운데 은총

21) 『구당서』 권158, 무원형전, 4159~4162쪽.

22) 『구당서』 권38, 地理志 1, 河南道, 河南府 조, “開元元年, 改洛州爲河南府. 二十二年, 置河陰縣. 天寶元年, 改東都爲東京也”(1421~1423쪽).

을 믿고 공을 자부하는 자들이 많이 吏民을 어지럽혔으므로 무원형이 고생하다가 병을 칭하고 관직을 떠났다. 마음 가는대로 구속되지 않고 讌詠에 빠져 생활하기를 오랫동안 하였다. 德宗이 그 재능을 알고 불러 比部員外郎에 제수하고 일년 후 左司郎中으로 승진시켰다. 당시 그는 두루 알고 가지런함[詳整]으로 높게 평가받았다. 貞元 20년(804) 御史中丞으로 승진하였다. 일찍이 延英에서 [問]對가 끝났을 때 덕종이 눈으로 전송하고 좌우 사람에게 가리키며 말하길 “무원형은 참된 재상의 그릇이다”라고 하였다.

[정원 21년(805) 정월] 順宗이 즉위하였으나²³⁾ 병으로 친히 정사를 보지 못하였다. 王叔文 등이 그 黨을 보내 權利로 무원형을 유인하였으나 무원형이 거부하였다. 당시 덕종의 山陵을 받들었는데, 무원형이 儀仗使가 되었다. 감찰어사 劉禹錫은 왕숙문의 당인데, 儀仗判官에 충임되기를 구하였으나 무원형이 응하지 않았다. 그 黨이 점점 기분이 상해 며칠 후 [순종 영정 원년(805) 3월] 무원형을 파직시켜 右庶子로 삼았다.²⁴⁾

[永貞 원년(805) 8월] 憲宗이 즉위하였는데,²⁵⁾ 앞서 [같은 해인 정원 21년(805) 3월] 皇太子로 책립될 때²⁶⁾ 무원형이 [의례를] 도와서 이끌었기[贊引] 때문에 그를 알았다. 보위에 오르자 다시 [무원형을] 어사중승에 임명하였다. 공평무사하고 법령[綱條]을 모두 적용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우 칭찬하고 신뢰하였다. 얼마 후 戶部侍郎으로 승진하였다. 元和 2

23) 『구당서』 권14, 순종본기, 정원 21년 정월 조, 405쪽.

24) 『자치통감』 권236, 영정 원년 3월 조, “以御史中丞武元衡爲左庶子”(7612쪽).

25) 『자치통감』 권236, 영정 원년 8월 조, 7620쪽.

26) 『구당서』 권14, 憲宗本紀, 永貞 원년 4월 조, “順宗即位之年(805)四月, 冊爲皇太子”(411쪽); 『자치통감』 권236, 順宗 貞元 21년 4월 조, “上御宣政殿, 冊太子”(7614쪽). 한편 『구당서』 권14, 順宗本紀, 정원 21년 3월 조, “詔冊廣陵郡王淳爲皇太子, 改名純”(406쪽); 『자치통감』 권236, 정원 21년 3월 조, “立[李]淳爲太子, 更名純”(7614쪽)이라는 것이 보인다.

년(807) 정월 門下侍郎·平章事に 배수하며 金紫를 하사하고 判戶部事를 겸하게 하였다.²⁷⁾ 황제가 太子로 있을 때 그가 進退하면서 바름을 지킨 것을 알고 이에 이르러 재상으로 기용하여 심히 예우하고 신임하였다.

처음에 浙西節度 李錡가 입조를 청하자 右僕射에 배수하여 들어오게 하였는데, 얼마 후 다시 병을 칭하며 歲暮에 입조하길 청하였다. 황제가 재상[宰臣]에게 묻자 鄭綱은 이기의 주청과 같이 하길 청하였으나 무원형이 말하길 “불가하다. 이기가 입조를 자청하여 조서를 내려 허락하였음에도 다시 병을 칭하는 것은 가부의 결정이 이기에 있는 것이다. 지금 폐하께서 새로 大寶에 임하시어 천하가 눈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만약 奸臣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한다면 威令이 이로부터 추락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그렇게 여기고 바로 입조하게 하니 이기가 과연 계략이 궁해져 反하였다.

앞서 高崇文이 蜀을 평정하자 그를 절도사에 제수하였다. 고승문은 군대를 다스리는 데 법도가 있으나 州縣의 정무[政]를 알지 못하였다. [원화 2년 10월] 황제가 그를 대신할 자를 찾는 것이 어렵자 무원형에게 고승문을 대신하게 하여 檢校吏部尙書·兼門下侍郎·平章事·充劍南西川節度使로 삼았다.²⁸⁾ 장차 떠나려 할 때 황제가 安福門으로 나가 전송하며 위로하였다. 고승문이 成都²⁹⁾를 떠나면서 그 軍資·金帛·帟幕·伎樂·工

27) 『자치통감』 권237, 원화 2년 정월 조, “以戶部侍郎武元衡爲門下侍郎, 翰林學士李吉甫爲中書侍郎, 並同平章事”(7639쪽).

28) 『자치통감』 권237, 원화 2년 10월 조, “以門下侍郎·同平章事武元衡同平章事·充西川節度使”(7641쪽).

29) 『구당서』 권41, 地理志4, 劍南道, 成都府 조, “隋蜀郡. 武德元年, 改爲益州, ……益州領 成都·雒·九隴·郫 … 綿竹等十三縣. …… 天寶元年, 改益州爲蜀郡, …… 十五載, 玄宗幸蜀, 駐蹕成都. 至德二年十月, 駕廻西京, 改蜀郡爲成都府, 長史爲尹”(1663~1664쪽); 『신당서』 권42, 지리지6, 劍南道, 成都府·蜀郡 조, “至德二載曰南京, 爲府, 上元元年罷京”(1079쪽).

巧를 모두 신고 갔다. 무원형이 이르러 만사[庶事]를 간소화하여 사람들을 편하게 하는 데 힘썼다. 3년 후公私가 조금 성취를 이루었다[濟].蠻夷를 어루만지고 법령[約束]을 명확히 갖추고 일을 갑자기 만들지 않았다. 근신하고 자중하면서 비록 사람과 교제하는 것은 적었지만 막부[開府]에 당시의 걸출한 인재를 모았다. [원화] 8년(813) [3월] 徵還되어 駱谷에 이르렀을 때 다시 門下侍郎·平章事에 배수되었다.³⁰⁾

당시 李吉甫와 李絳은 성향이 맞지 않아 각각 事理를 가지고 황제 앞에서 曲直을 다투었다. 무원형은 중간에 있으면서 여기거나 부회하기 않았기 때문에 황제가 훌륭하다고 칭찬하였다. 이길보가 추한 후 황제가 바야흐로 淮蔡를 토벌하면서 機務를 모두 위임하였다. 당시 王承宗이 사람을 보내 奏事하여 吳元濟를 사면하길 청하였다. 재상에게 일을 요청하면서 辭禮가 어그러지고 오만하자 무원형이 질책하였는데, 왕승종이 章[表]를 빠르게 보내 무원형을 비난하면서 책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매우 심하였다.³¹⁾

무원형의 자택은 靜安里에 있었는데, [원화] 9년(10년 815년?) 6월 3일³²⁾ 장차 입조하기 위해 里의 東門을 나섰는데, 어둠 속에서 촛불을 끄게 하는 자가 있었다. 이끄는 기병이 야단치자 賊이 활을 쏘아 어깨에 명중시켰다. 또 나무 뒤에 숨었다가 갑자기 나온 자가 곤봉으로 무원형의 왼쪽 정강이(넓적다리)를 쳤다. 그 수행원들[徒馭]은 이미 賊에게 맞아 도망쳤고 賊이 이에 무원형의 말을 잡고 동남쪽으로 10여 보를 가서 해치고 그 두개골[顛骨]을 베어 품고 갔다. 무리가 소리를 지르며 함께 이르러 볼

30) 『자치통감』 권239, 원화 8년 3월 조, “甲子(11일), 徵前西川節度使·同平章事武元衡入知政事”(770쪽).

31) 정병준, 『『舊唐書』·『新唐書』李師道·吳元濟·王承宗 등 列傳 역주』, 487쪽 참조.

32) 『구당서』 권15, 헌종본기하, 원화 10년 6월 癸未(3일) 조, “鎮州節度使王承宗遭盜夜伏於靖安坊, 刺宰相武元衡, 死之, 又遭盜於通化坊刺御史中丞裴度, 傷首而免”(453쪽); 『자치통감』 권139, 원화 10년 6월 癸未 조, 7713~7715쪽.

을 들고 비쳐보니 무원형이 피 속에 쓰러져 죽어 있었다. 즉 무원형 자택의 동북쪽 모퉁이 담 밖이었다. 그때는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거리[陌]에 말 타고 입조하는 사람 및 行人이 많았고, 鋪卒이 連呼하는 소리가 10여 리에 미쳤는데, 모두가 賊이 재상을 살해하였다고 하여 소리가 朝堂에 이르렀다. 百官이 흥흥해 하였으나 죽은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다. 잠깐 사이에 무원형의 말이 달려오자 마주친 사람[遇人]이 비로소 알게 되었다. 날이 밝아 의장[仗]이 紫宸門에 이르자 有司가 무원형이 해를 입은 사실을 상주[聞]하였다. 황제가 떨리고 놀라 조회를 철회하고 延英[殿]에 앉아 재상을 召見하여 오랫동안 소리 내어 울고 식사를 하지 못하였다. 司徒로 冊贈하며 부의로 布帛 500필과 粟 400石을 보내고 5일 동안 輟朝하며 시호를 忠愍이라 하였다.

무원형은 五言詩를 잘 지었는데, 호사가가 이를 전하여 왕왕 악기[管絃]로 연주되었다.

이전에 [원화] 8년(813) 무원형이 蜀에서 다시 재상[輔政]이 되었을 때 太白 별이 上相 별을 범하며 執法 별을 지나갔다. 점치는 사람이 말하길 “지금의 세 재상[三相]은 모두 불길하다. 시작하는 [재상은 재난이] 가볍지만, 마지막은 무겁다”라고 하였다. 한 달 남짓 후 이강이 足疾로 [재상을] 그만두었다. 다음 해(814) 10월 이길보가 暴疾로 죽었다. [원화 10년(815) 6월] 이에 이르러 무원형이 도적에게 해를 입으니 나이가 58세였다. 처음에 무원형과 이길보가 나란히 급제하고[齊年] 또 같은 날 재상이 되었다. 번진으로 나가서는 揚·益을 각각 다스렸고 이길보가 다시 들어가자 무원형도 역시 돌아갔다. 이길보는 1년 먼저 무원형이 태어난 달에 출하고, 무원형은 1년 뒤 이길보가 태어난 달에 출하였다. 吉凶의 숫자가 마치 符와 같이 부합된다.

이보다 먼저 長安에서 노래[謠]하여 말하길 “打麥하고 麥打하니 333이다”라고 하고 그 소매를 돌리며 말하길 “춤추었다[舞了]”라고 하였다.

해석하는 사람이 말하길 “打麥이라는 것은 보리를 타작하는 시기이고, 麥打라는 것은 대개 暗中에서 突擊하는 것을 말하고, 333은 6월 3일을 말하고, 舞了라는 것은 무원형의 죽음을 말한다. 이로부터 京師가 크게 두려워서 城門에 衛兵을 늘려 출입하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物色을 엿보았다. 그 신체가 크거나(偉狀) 복장이 다르거나(異製) 燕趙의 발음을 하는 자는 대부분 잡아 심문하였다. 무원형의 從父弟가 [武]儒衡이다.

4. 『신당서』 권152, 武元衡傳³³⁾

무원형은 字가 伯蒼이다. 증조부 [武]載德은 則天皇后의 族弟이다. 조부 [武]平一은 이름이 알려졌다. 무원형은 進士에 합격[擧]하고 승진하여 [京兆府] 華原令이 되었다. 畿輔의 鎮軍 督將이 모두 교만·방자하여 정치를 어지럽히자 무원형은 질병을 이유로 관직을 떠났다. 德宗이 그 재능을 흠모하여 불러 比部員外郎에 배수하였는데, 그 해에 세 번 승진하여 右司郎中에 이르고 詳整하여 직임에 적합하다고 칭해졌다. [貞元 20년(804)] 御史中丞에 발탁되었다. 일찍이 延英에서 [問]對하니 황제가 헤어지면서 멀리까지 바라보며 말하길 “진정한 재상의 그릇이다!”라고 하였다.

[정원 21년(805) 정월] 順宗이 즉위하자 王叔文이 사람을 보내 꺾어 들여 黨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山陵儀仗使가 되자 감찰어사 劉禹錫이 判官이 되길 원하였는데, 무원형이 수여하지 않으니 왕숙문이 더욱 불쾌하게 여겼다. 며칠 후 [순종 영정 원년(805) 3월] 太子右庶子로 바뀌었다. [4월] 마침 皇太子를 冊[立]

33) 『신당서』 권152, 무원형전, 4833~4835쪽.

하였는데, 무원형이 贊相하였으므로 태자가 알게 되었다. [영정 원년 8월] 즉위하니 즉 憲宗이다. [11월] 다시 어사중승에 배수되고³⁴⁾ 戶部侍郎으로 승진되었다. 元和 2년(807) [정월] 門下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兼判 戶部事に 배수되었다. 황제가 평소 무원형이 바른 것을 견지하고 지조를 지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의로 대하고 신임하는 것이 다른 재상과 다르게 하였다. 浙西의 李錡가 입조를 청해놓고 다시 병을 칭하며 그 기한을 연기하려고 하였다. 황제가 재상 鄭絪에게 물으니 정인이 들어주기를 청하였으나 무원형이 말하길 “불가하다. 이기는 자신이 입조를 청하여 조서를 내려 허락하였으나 다시 이르지 않았는데, 이는 可否가 이기에게 있는 것이다. 폐하께서 새로 즉위하셔서 天下가 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만약 奸臣이 그 사사로움을 이룬다면 威令을 떨칠 수 없다”라고 하니 황제가 그렇게 여기고 급거 이기를 재촉하자 이기가 계책이 궁해져 과연 反하였다.

이때 蜀³⁵⁾이 새로 평정되고 高崇文이 절도사가 되었으나 吏治를 알지 못했으므로 황제가 그를 대신할 자를 뽑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원화 2년 10월] 무원형에게 조서를 내려 檢校吏部尙書·兼門下侍郎·同平章事に 임명하며 劍南西川節度使로 삼고 蕭縣伯에서 臨淮郡公에 봉하였으며 황제가 安福門으로 나가 위로하여 보냈다. 고승문이 成都를 떠나면서 金帛·幣幕·伎樂·工巧를 모두 가지고 갔으므로 蜀이 거의 텅 비었다. 무원형이 이르러 綏靖하면서 約束하고 자신에게 검소하며 백성에게 관대하였다. 3년이 지나니 上下가 충실해지고 蠻夷가 懷歸하였다. 본디 성격이 莊重하여 비록 사람과 교제하는 것은 적었지만 막부[開府]에 당시의 걸출한 인재를 모았다.

34) 『자치통감』 권236, 영정 원년 11월 조, 7623쪽.

35) 앞의 『구당서』 무원형전의 ‘成都’에 대한 각주 참조.

[원화] 8년(813) [3월] 소환되어 권력을 잡았다[秉政]. 李吉甫·李絳이 자주 황제 앞에서 논쟁하고 화합하지 못하였는데, 무원형이 홀로 중심을 잡고[持正] 違附하지 않으니 황제가 그 훌륭함을 칭찬하였다. 이길보가 졸하고 淮蔡에 군사를 일으킬 때 황제가 기밀 정무[機政]를 모두 맡겼다. 王承宗이 上疏하여 吳元濟를 사면하길 청하며 사람을 보내 中書에서 일을 아뢰었는데, 오만[悖慢]하고 공손하지 않았다. 무원형이 꾸짖어 보내니 왕승종이 원망하여 자주 章을 올려 무고하고 비난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³⁶⁾ [원화 10년(815) 6월 계묘일(3일)] 입조하기 위해 靖安里의 집을 나섰을 때 밤이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 賊이 어둠 속에서 외치며 말하길 “燭을 꺼라!”라고 하며 무원형에게 활을 쏘아 어깨를 맞추고 다시 그 넓적다리를 쳤다. 수행원[徒御]이 격투를 벌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모두 놀라 달아났으며 마침내 무원형을 해치고 두개골을 베어 가지고 갔다. 도적이 재상을 살해하였다고 순라병이 시끄럽게 외치며 전하는 것이 10여 리를 이어 朝堂에 이르니 百官이 두려워하였지만 해당자가 누구지를 알지 못하였다. 잠시 후 말이 달아났다가 집으로 돌아오니 中外가 상세히 알게 되었다. 이 날 의장[仗]이 紫宸門으로 들어가자 有司가 황제에게 보고하니 황제가 놀라고 두려워하였다. 조회를 중지하고 延英에 앉아 재상을 접견하며 슬퍼서 통곡하였고 이로 인해 두 번이나 식사를 하지 않았다. 司徒로 추증하고 시호를 忠愍이라 하였다.

조서를 내려 金吾·府·縣에게 대거 수색하게 하였는데, 흑자가 전하여 말하길 “賊을 수색하지 말라. 적이 궁해지면 필시 난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하고 또 거리에 投書하여 말하길 “나를 다급하게 하지 말라. 내가 먼저 너를 죽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吏卒이 최선을 다해 찾지 않았

36) 『자치통감』 권239, 원화 10년 5월 조, “上自李吉甫薨, 悉以用兵事委武元衡. 李師道所養客說李師道曰, ‘天子所以銳意誅蔡者, 元衡贊之也, 請密往刺之. 元衡死, 則他相不敢主其謀, 爭勸天子罷兵矣.’ 師道以爲然, 卽資給遣之”(7713쪽).

다. 兵部侍郎 許孟容이 황제에게 말하길 “國相의 시체가 길모퉁이에 가로누웠는데, 도적이 잡히지 않는 것은 조정의 치욕이다”라고 하니 [6월 무신일(8일)]³⁷⁾ 황제가 조서를 내려

능히 賊을 잡는 자에게 錢 1천만을 상으로 주고 五品官에 제수하겠다. 적과 모의하거나 적을 숨겨주어도 능히 자수하는 자 또한 상을 주겠다. 조서와 같이 하지 않으면 멸족하겠다.

라고 하고 錢을 東·西市에 쌓아두고 고발자를 모집하였다. 이에 左神策將軍인 王士則과 左威衛將軍 王士平이 賊을 보고하였는데, 즉 張晏 등 18인을 잡으니 왕승종이 보냈다고 한다고 하여 모두 참수하였다.³⁸⁾ 달을 넘겨 東都防禦使 呂元膺이 淄青 留邸의 賊인 門察·訾嘉珍을 잡으니 스스로 말하길 처음에 무원형을 살해하기로 모의하였는데, 마침 [張]晏이 먼저 행동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빌어 이사도에게 알리고 그 상을 훔쳤다고 하니 황제가 비밀리에 주살하였다.

앞서 京師가 크게 두려워하자 城門에 병사를 증강하여 누군지를 검문하여 그 신체가 크고[偉狀] 특이한 복장을 하거나 燕趙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는 모두 조사하고 보냈다. 公卿이 조회할 때 家奴에게 무기를 들고 호위하게 하고 재상은 金吾의 활을 장전한 기병이 앞과 옆을 호위하게 하고 里門을 지날 때마다 수색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³⁹⁾ 이에 조서를 내

37) 『자치통감』 권239, 원화 10년 6월 조, 7714쪽.

38) 『자치통감』 권239, 원화 10년 6월 조, “成德軍進奏院有恆州卒張晏等數人, 行止無狀, 衆多疑之. 庚戌, 神策將軍王士則等告王承宗遣晏等殺元衡. …… [監察御史]陳中師按張晏等, 具服殺武元衡, 張弘靖疑其不實, 屢言於上, 上不聽. 戊辰, 斬晏等五人, 殺其黨十四人, 李師道客竟潛匿亡去”(7714~7715쪽).

39) 『자치통감』 권239, 원화 10년 6월 조, “於是詔宰相出入, 加金吾騎士張絃露刃以衛之, 所過坊門呵索甚嚴. 朝士未曉不敢出門. 上或御殿久之, 班猶未齊”(7713쪽).

려 寅[時](오전 3~5시)에서 2刻(30분)이 지나 傳點(즉 판을 쳐서 사람을 모으는 것)한 후 [조회하게] 하였다고 한다.

사촌동생이 [武]儒衡이다.

5. 『신당서』 권173, 裴度傳⁴⁰⁾

배도는 字가 中立이고 河東 [絳州] 聞喜[縣]⁴¹⁾ 人이다. [덕종] 정원 연간 초에 進士에 급제하고 宏辭에 합격하여 校書郎에 보임[補]되었다. 賢良方正에 異等으로 합격하여 [河南府] 河陰[縣]⁴²⁾ 尉에 임명[調]되었다. 監察御史로 승진한 뒤 권신·총신[權嬖]을 논하는 것이 강직하였기 때문에 河南[府]⁴³⁾ 功曹參軍으로 진출되었다. 武元衡이 西川을 帥하면서 表를 올려 節度府 書記를 掌하게 하였다. 소환하여 起居舍人에 임명하였다.

[憲宗] 元和 6년(811) 司封員外郎으로 知制誥가 되었다. 田弘正이 魏博 6주를 조정에 바치자[效] 헌종이 배도를 보내 宣諭하였는데, 전홍정은 배도가 황제에게 특별히 선발된 것을 알았으므로 교외에서 맞이하여 중

40) 『신당서』 권173, 裴度傳, 5209~5220쪽.

41) 『元和郡縣圖志』 권12, 河東道1, 絳州 조, 330쪽, 333쪽; 『구당서』 권39, 지리지2, 河東道, 河中府 조, “聞喜[縣], …… 武德元年, 分置聞喜縣”(1471쪽); 同, 絳州 조, “絳州領正平·太平·曲沃·聞喜·稷山五縣. …… 領翼城·絳·小鄉三縣”(1471쪽); 『신당서』 권39, 지리지3, 河東道, 絳州·絳郡 조, “聞喜[縣], 武德元年置”(1002쪽).

42) 『구당서』 권38, 지리지1, 河南道, 河南府 조, “[開元]二十二年, 置河陰縣”(1422쪽); 『신당서』 권39, 지리지3, 河北道, 孟州 조, “河陰[縣]. 望, 開元二十二年析汜水·滎澤·武陟置, 隸河南府, 領河陰倉, 會昌三年來屬”(1010쪽).

43) 『구당서』 권8, 玄宗本紀上, 開元 원년 12월 조, “改元爲改元, …… 改尚書左·右僕射爲左·右丞相, 中書省爲紫微省, 門下省爲黃門省, 侍中爲監. 雍州爲京兆府, 洛州爲河南府, 長史爲尹, 司馬爲少尹”(172쪽).

종결음으로 달려가 꿰어앉아 명을 받고 또 屬州를 두루 둘러보기를 청해 천자의 德澤을 선양하자 魏人이 이로 인해 기뻐하며 따랐다. 조정으로 돌아와 中書舍人에 제수되었다. 시간이 흐른 뒤 御史中丞으로 승진하였다. 宣徽[院] 五坊⁴⁴⁾의 小使가 바야흐로 가을에 鷹狗를 놓아주었는데, 이르는 곳마다 官司를 요란스럽게 하고 후하게 대접[餉謝]을 받은 후 갔다. 下邳[縣]⁴⁵⁾ 丞 裴襄은 재간 있는 관리[才吏]로 그들을 받들지 않았는데, 배환이 醜言을 하였다고 무고하여 詔獄에 보내니 큰 不恭[罪]에 해당하였다. 재상 武元衡이 완곡한 말로 간하였으나 황제의 노기가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 배도가 延英[殿]에서 알현하여 배환이 무고하다고 말하자 황제가 화를 내며 말하길 “배환이 진실로 죄가 없다면 小使를 매질[杖]하고 小使가 무죄라면 배환을 매질하겠다”라고 하였다. 배도가 말하길 “이렇게 문책하면 진실로 마땅하다. 배환은 현령이 되었으므로 폐하의 백성을 아낀 것인데 어찌 죄가 되겠는가?”라고 하자 황제의 안색이 펴졌고 이에 배환을 석방하였다.

王師가 蔡를 토벌할 때 배도에게 行營諸軍을 순시하게 하자 돌아와 攻取策을 상주하였는데, 황제의 마음과 합치하였다. 또 諸將의 재능 여부를 묻자 배도가 답하길 “李光顏⁴⁶⁾은 정의롭고 용감하여 마땅히 공을 세울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3일이 되지 않아 이광안이 時曲의 병사를 격파하였다. 황제가 배도의 선견지명에 감탄하였다. 승진하여 刑部侍郎을 겸하였다.

王承宗·李師道가 蔡를 공격하는 군대를 느슨하게 하기 위해 모의하

44) 五坊은 독수리·매·개 등 5종류의 동물을 잡아 관리하는 궁중 안의 기구였는데(鷓坊·鶡坊·鷓坊·鷹坊·狗坊로 구성), 順宗 때 폐지되었다. 즉 任士英, 『황제들의 당제국사』, 269~270쪽 등 참조.

45) 『신당서』 권37, 지리지1, 關內道, 華州·華陰郡 조, 964쪽.

46) 『책부원구』 권374, 將帥部, 忠5, 이광안 조, 4451~4452쪽.

여 도적을 京師에 매복시켜 권력을 행사하는 大臣을 찔렀는데, 재상 무원형을 해쳤고 이어 배도를 공격하여 칼을 세 번 휘둘렀으나 가죽신[鞞]을 절단하였고 등을 공격하였으나 속옷[中單]을 찢었고 또 머리에 상처를 입었으나 배도가 전모[鬪]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길을 인도하던 사람들[哄導]은 놀라 엎드리고 홀로 말을 끄는 王義가 賊을 잡고 큰 소리를 지르자 賊이 왕의 손을 잘랐다. 배도가 도랑에 떨어졌는데, 賊이 이미 죽었다고 여기고 달아났다. 농자들이 배도를 파직시켜 두 鎮의 反側을 안정시키자고 하자 황제가 노해 말하길 “배도가 살아남은 것은 하늘의 뜻이다. 만약 파직시킨다면 賊의 계략대로 되는 것이다. 나는 배도에게 의지하여 죽히 세 賊을 격파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배도 또한 權紀가 떨어져지 못하고 王室이 쇠락한 것에 대해 항상 몸을 바칠 기회가 없음을 분해하고 부끄럽게 여겼다. 行營을 다녀와 賊의 사정을 알았으므로 황제가 더욱 믿고 의지하였다. 상처를 치료하는 20일 동안 衛兵을 나누어 집을 호위하게 하였고 위문하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았다. 몸이 회복되자 조서를 내려 宣政衛로 입조하지 않고 延英[殿]에서 대면하게 하며 中書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에 임명하였다. 당시 바야흐로 諸道 병사를 동원하여 분쟁[環擊]이 해소되지 않고 內外가 크게 두려워하여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배도가 국정을 맡자 內外가 비로소 안정되고 이로 인해 적을 토벌하는 것이 더욱 급박해졌다.

이전에 德宗은 사찰하고 캐묻는 것[何伺]을 좋아하여 中朝士가 서로 방문하면 金吾에서 바로 啓를 보냈으므로 재상도 문을 닫고 賓客을 사절하였다. 배도는 일이 많은 시기여서 마땅히 천하 인재[髦英]를 불러 모책[籌策]을 자문하려고 생각하여 이에 [황제에게] 집에서 士大夫와 만날 수 있기를 청원하자 조서를 내려 허가하였다. 마침 莊憲太后가 붕어하여 禮儀使가 되었다. 황제가 정무를 보지 않으며 의논하여 冢宰를 두려고 하였다. 배도가 말하길

총재는 商·周 시기 六官의 수장으로 百僚를 총괄하였고 王者가 부모상중에 있을 때 임시로 정무를 보게 하는 제도가 있었다. 시대가 흐르면서 이 관직이 폐지되었으므로 國朝에서 설치 여부가 일정하지 않았다. 마땅히 空名을 쫓아 중요 정무를 정지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자 조서를 내려 百司는 임시로 中書門下의 조치에 따라 행하게 하였다.

[원화 10년(815) 12월] 王鏐이 죽자⁴⁷⁾ [이듬해 11월] 家奴가 왕악의 아들 [王]稷이 부친의 [遺]表를 고쳐 遺를 모칭하여 [家財]를 헌상하였다고 알렸다. 황제가 奴를 仗內에 머물게 하고 使者를 보내 東都로 가서 그 재산을 조사[按責]하게 하였다. 배도가 간언하여 말하길 “왕악이 죽은 후 여러 차례 헌상하였다. 지금 폭로하여 알리는 것에 따라 그 사적인 것을 살핀다면 신이 생각건대 친하 將帥가 소식을 듣고 집을 위해 계책을 세울까 우려된다”라고 하자 황제가 깨닫고 두 奴를 죽이고 사자를 소환하였다.⁴⁸⁾

당시 蔡를 토벌하면서 자주 불리해지자 군신들이 다투어 罷兵을 청하였는데, 錢徽·蕭俛이 더욱 확고하였다. 배도가 상주하여 “病은 腹心에 있고 제때에 제거하지 않으면 大患이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兩河가 또한 이를 보고 逆順을 택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때마침 唐鄧節度使 高霞寓가 패해서 퇴각하자 그 외 재상은 황제가 전쟁을 싫어할[厭兵] 것으로 생각하고 賊을 사면하려고 하여 황제의 뜻을 탐색하였다. 황제가 말하길

47) 『자치통감』 권239, 원화 10년 12월 조, “乙丑, 河東節度使王鏐薨. 王承宗縱兵四掠, 幽·滄·定三鎮皆苦之, 爭上表請討承宗. 上欲許之, 中書侍郎·同平章事張弘靖以爲‘兩役並興, [胡三省注: 兩役, 謂既討淮西, 又討恆冀也] 恐國力所不支, 請併力平淮西, 乃征恆冀’. 上不爲之止, 弘靖乃求罷”(7720쪽).

48) 『자치통감』 권239, 원화 11년 11월 조, 7725쪽.

한 번 승리와 한 번 패배는 兵家의 常勢이다. 만약 병사들이 항상 이긴다면 옛날에 어찌 用兵을 꺼렸겠는가? 비록 여러 聖[王]들이라고 해도 또한 賊을 짐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은 단지 帥臣의 勇怯과 병사의 강약과 處置의 여하를 논할 뿐이다. 어찌 한 차례 패배로 원래의 계획을 그만 두겠는가?

라고 하였다. 이에 左右가 그 사이를 들어갈 수 없었다. [원화] 12년(817) 재상 [李]逢吉·[王]涯가 건의하길 “군비가 매우 부족하므로 마땅히 군사를 거두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단지 배도가 직접 싸움을 독려하길 청하자 황제가 오직 배도에게 눈짓하여 남게 하고 말하길 “과연 짐을 위해 갈 수 있는가?”라고 하였다. 배도가 엮드려 눈물을 흘리며 말하길 “신은 賊과 함께 살아있지 않을 것을 맹서한다”라고 하였다. 바로 門下侍郎·平章事·彰義軍節度·淮西宣慰招討處置使에 배수하였다.

배도가 韓弘에게 都統을 맡기고자 하여 ‘招討’라는 명호를 반환하여 한홍과 중복을 피하였으나 실제로는 都統의 일을 수행하였다. 또 制詔에 賊의 사기를 높이고 한홍을 화나게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한홍이 불만을 가져 배도가 함께 공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이었다. 배도가 그 말을 바꾸어 의심의 혐의를 없애길 청하고 이에 表를 올려 馬愬을 宣慰副使로 삼고 韓愈을 行軍司馬로 삼고, 李正封·馮宿·李宗閔을 兩使의 幕府에 배치하였다. 들어가 延英[殿]에서 대면하여 말하길 “군주의 근심은 신하의 치욕이니 義는 반드시 죽는 데 있다. 賊이 항복하지 않으면 신은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하자 황제가 장하다고 하고 눈물을 흘렸다. 출발하자 通化門으로 나가 전송하며 通天御帶를 하사하고 神策 기병 300을 내어 호위병으로 삼았다. 앞서 이봉길이 배도를 싫어하였으므로 황제가 조정에서 방해하는 것을 싫어하여 외지로 보냈다.

배도가 鄆城에 주둔하며 諸軍을 위로하고 조정의 두터운 마음을 선포

하자 병사들이 분발하여 용기를 내었다. 이때 諸道 병사는 모두 中官이 統監하고 직접 進退를 결정하였다. 배도가 상주하여 그만두게 하니 장수들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게 되어 號令이 통일되고 사기가 배가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李愬가 밤에 懸瓠城으로 들어가 吳元濟를 포박하고 보고하였다.⁴⁹⁾ 배도가 [선위부사] 마충을 보내 먼저 蔡로 들어가게 하고 다음날 洄曲의 降卒 1만 인을 통솔하여 부절을 가지고 서서히 나아가 그 사람들을 어루만져 안정시켰다.

앞서 오원제는 길에서 마주하여 말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밤에 촛불을 켜지 못하게 하였으며 酒食을 서로 제공하면 軍法으로 논하였다. 배도가 일을 보면서 영을 내려 다만 盜賊·鬥死만 법으로 처단하고 나머지는 모두 면제하였다. 이에 왕래하는 데 밤낮의 제약을 받지 않으니 백성들이 비로소 삶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배도가 蔡의 牙卒에게 장막[帳下]에서 지키게 하자 어떤 사람이 反側이 아직 안정되지 않아 방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배도가 웃으며 말하길 “나는 彰義節度인데, 元惡이 사로잡혔으니 사람들은 모두 내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무리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申·光이 평정된 뒤 마충을 留後로 삼았다.

배도가 입조할 때 마침 황제가 두 자루의 劍을 監軍 梁守謙에게 주며 가서 賊將을 모두 주살하게 하였다. 배도가 郾城에서 [양수겸을] 만나 다

49) 『구당서』 권161, 董重質傳, “本淮西牙將, 吳少誠之子壻也. 性勇悍, 識軍機, 善用兵. 及元濟拒命, 重質又爲謀主, 領大軍當王師, 連歲不拔, 皆重質之謀也. 元和十二年, 宰相裴度督兵淮西, 至郾城, 元濟乃悉發左右及守城之卒, 委重質而拒度. 時李愬乘虛入蔡, 既擒元濟, 重質之家在蔡, 愬乃安卹之, 仍使其子持書禮以召重質. 重質見其子, 知城已陷, 及元濟囚窘之狀, 乃慨然以單騎歸愬, 白衣叩伏, 愬揖登階, 以賓禮與之食. 憲宗欲殺之, 愬奏許以不死而來降, 請免之, 且乞於本軍驅使. 於是, 貶春州司戶參軍. 明年, 轉太子少詹事, 委武寧軍收管驅使, 仍加金紫. 十五年, 徵入, 授左神武軍將軍, 知軍事, 兼御史中丞. ……” (4227쪽).

시 함께 蔡로 가서 죄를 헤아려 주살을 의논하였다. 양수겸은 조서대로 하길 청하였으나 배도가 강하게 반대하고 급히 상주하여[騰奏] 사정을 아뢰니[申解] 온전히 용서[宥]한 사람이 매우 많았다. 훈공을 논해 金紫光祿大夫·弘文館大學士·上柱國·晉國公·戶3천으로 승진하고 다시 知政事가 되었다.

程류·皇甫鏞은 財賦를 논한 것으로 은총을 받아 오래지 않아 재상이 되었다. 배도가 세 번 上書하여 극력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황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신의 印을 바쳤으나 또 듣지 않았다. 소인들[織人]이 비로소 틈을 타게 되었다.

앞서 蔡가 평정되자 王承宗이 두려워하였는데, 배도가 辯士 柏耆를 보내 위협하며 설득하였다. 이에 德·棣 2주를 헌상하고 質子를 보냈다. 또 程權을 타일러서 입조시켰다. 비로소 滄·景·德·棣를 하나의 鎮으로 만들어 조정이 帥를 임명하니, 왕승종의 세력이 삭감되었다.

李師道가 강함[疆]을 믿자 배도가 몰래 황제에게 권해 주살하도록 하였다. 이에 조서를 내려 宣武·義成·武寧·橫海 네 절도사에게 田弘正과 함께 토벌하게 하였다. 전홍정이 黎陽에서 건너 諸節度 군사와 만나기를 청하자 재상이 모두 마땅하다고 하였지만, 배도가 말하길

魏博軍이 여양을 건너면 즉 賊의 영역으로 들어간[卽] 것으로 경계[封畛]가 서로 접하기 때문에 관망할 마음이 쉽게 생길 것인데, 자신의 땅에서 싸우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전홍정·[李]光顏은 평소 결단력이 부족하여 병사들의 마음이 망설일 것이므로 가히 기용할 수 없다. 따라서 하북에서 위세를 길러 서리가 내리고 수위가 낮아지기를 기다린 후 陽劉에서 [황하를] 건너 깊숙이 鄆에 이르러 陽穀에 군영을 세우면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할 것이고 賊勢는 곧 궁해질 것이다.

라고 하자 황제가 “좋다”고 하였다. 조서를 내려 전홍정에게 배도의 말처럼 하게 하자 전홍정이 조서를 받들었고 이사도가 과연 사로잡혔다.

대상인[大賈] 張陟이 五坊의 息錢을 빚지고 亡命하자 坊使 楊朝汶이 그 집의 장부를 몰수하여 貸錢을 살펴보니 비록 이미 배상하였으나 이름이 모두 지워져 있었다. 이에 수십~백 인을 根引하여 차례로 세워놓고 매질을 하였으나 승인하지 않았다. 또 盧大夫의 逋券을 조사하여 이에 盧坦의 家客을 잡아 상환하게 하고 한참 후 盧羣의 [契]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노탄의 아들이 上訴하자 양조문이 속여 말하길 “錢이 禁中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御史中丞 蕭俛과 諫官이 中人の 璲포를 나열하였고 배도도 극력 말하였다. 당시는 바야흐로 鄴을 토벌할 때였는데, 황제가 말하길 “잠시 먼저 동방의 군사[東軍]를 의논하기로 하자! 이는 작은 일이니 내가 처리하겠다”라고 하자 배도가 말하길 “兵事를 다스리지 않는 것은 山東에 그치지만, 中人の 璲포는 장차 도성을 어지럽힐 것이다”라고 하였다. 황제는 기분이 나빴으나 서서히 깨닫고 양조문을 꾸짖어 말하길 “너 때문에 내가 재상에게 수모를 당했다!”라고 하며 명을 내려 죽이고 수감된[繫]⁵⁰⁾ 자를 풀어주었다. 이로 인해 京師가 깨끗하고 엄숙하게 되었다.

황제가 일찍이 말하길 “신하가 군주를 섬길 때는 마땅히 善에 힘쓰며 公에 매진해야 한다. 짐은 黨을 세우는 자를 싫어한다”라고 하자 배도가 말하길 “君子와 小人은 부류끼리 모여 무리[徒]가 없는 자가 없다. 군자의 무리는 德을 함께 하고 소인의 무리는 악을 함께 한다. 겉으로는 심히 비슷하지만 안은 실로 다른데, 폐하께서 그들이 행하는 바를 보면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말하길 “논하는 자들은 대체로 이렇게 말하지

50) 繫囚라고 하면 수감된 죄수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범죄가 발각된 후 수감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자도 포함한다. 정병준, 『《舊唐書》憲宗本紀 下 역주』, 『신라사학보』 43, 2018, 218쪽의 각주 5) 참조.

만, 짐이 어찌 쉽게 알 수 있겠는가?”라고 하자 배도가 물러나 기뻐하며 말하길 “황제께서 구별하기 어렵다고 여긴다면 [구별하기] 쉬운 것이고, 구별하기 쉽다고 여긴다면 어려운 것이다. 군자와 소인이 잘 판단될 것이다” 얼마 후 끝내 정이와 황보박의 모함에 빠져 檢校尙書右僕射·兼門下侍郎·平章事로 河東節度使에 임명되었다.

穆宗이 즉위하여 檢校司空으로 승진시켰다. 朱克融·王廷湊가 河朔에서 난을 일으키자 배도에게 鎮州行營招討使를 더해 주었다. 당시 황제는 李光顏·烏重胤을 爪牙의 장수로 삼아 그들에게 의지하여 賊을 공격하였다. 병사가 10여 만이었으나 싸움을 두려워하여 조금도 공을 세우지 못하였다. 배도가 명을 받은 후 賊의 영역으로 들어가 자주 장수를 베고 보고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押北山諸蕃使를 겸하였다. 당시 元稹이 환관 魏弘簡과 공개적으로 교류하며 재상[執政]을 구하였고 배도가 다시 국정을 맡을 것[當國]을 우려하였다. 이에 軍事를 經制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자주 조정에서 방해하여 공을 세우지 못하게 하였다. 배도는 亂이 일어날까 우려해 上書하여 원진의 죄악을 통렬하게 폭로하였다. 황제가 어쩔 수 없이 위홍간과 원진의 직무를 파직시켰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원진을 재상으로 발탁하고 배도를 守司空·平章事·東都留守로 삼았다. 諫官이 연영전에서 대면을 청하면서 배도의 병권을 파면하여 병사들의 마음을 동요시키면 안 된다고 하였다. 황제가 부르지 않자 章을 올려 극력 논하였으나 살피지 않았다.

마침 中人이 幽·鎮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와 말하길 “[두 번진의] 군사들은 배도가 조정에 있으면 兩河 諸侯 중 충성스러운 자는 귀순하고 강대한 자는 두려워한다고 말하며 지금 東[都]로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한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깨닫고 조서를 내려 배도를 太原에서 京師로 입조시켰다. 황제를 알현하여 비로소 두 賊이 횡포하여 명을 받았으나 공을 세우지 못한 것을 진술하고, 또 입조한 의도를 말하며 감정이 북반

쳐 눈물을 흘렸다. 엎드려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때 謁者가 宣旨하러 하자 황제가 급히 말하길 “짐이 마땅히 연영전에서 卿을 대면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앞서 논자들은 배도에게 지지자가 없고 또 오랫동안 밖에 있어 간신[姦檢]에게 배격될 것으로 생각하고 황제가 그 충성을 알아보지 못할 것을 우려하였다. 하지만 나아가 알현하면서 언사가 간절하고 기색이 편안하며 특히 천자의 의중에 합당하였다. 在位하여 들은 자가 모두 숙연해 하고 毅將·貴臣이 감탄하여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舊儀에서는 閣中에서 군신들이 물러나지 않으면 재상이 상주하지 않았고 축하면 謁者가 답하였다. 황제는 공이 많고 덕이 높다고 생각하여 특별한 예의로 대우하였다. 배도가 떠나면서 주극용·왕정주에게 書를 보내[移] 정성스럽고 유창한 말로 타이르며 이치를 깨닫게 하자 두 사람이 감히 흥포한 짓을 하지 못하고 모두 군사를 그만두길 원하였다. 황제가 바야흐로 深州의 포위를 근심하여 반드시 우원익을 구출하기 위해 배도를 시켜 글을 빨리 보내 뜻을 전하게 하였다. 흑자가 말하길 “賊이 배도가 병권을 잃은 것을 알면 필시 약속을 어기고 관망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의혹을 풀고 이에 배도를 守司徒에 배수하며 淮南節度使로 삼았다.

마침 昭義의 監軍 劉承偕가 劉悟에게 오만하게 굴자 모든 군인이 시끄럽게 화를 내며 유승해를 붙잡았는데, 유오가 구금한 후 [황제에게] 보고[聞]하였다. 황제가 노하여 배도에게 묻길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고 하자 배도가 머리를 조아리며 사절하고 “藩臣은 정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대답하지 않았다. 황제가 강제하자 배도가 말하길 “신은 평소 유승해가 은총을 믿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유오가 능히 감당하지 못해 일찍이 신에게 서신을 보내 호소하였다. 이때 中人 趙弘亮이 行營에서 상황을 알고 유오의 서신을 상주하였으므로 폐하께서도 알지 않은지?”라고 하였다. 황제가 말하길 “나는 알지 못한다. 유오가 진실로 싫다면 어찌 직접 [奏]聞하지 않았는가?”라고 하자 배도가 말하길 “설령 유오가 주문했다고

해도 아마도 폐하는 필시 들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신이 天顏을 지척에서 보아도 아직 결정되지 않는데, 천리 밖에서 단편적 말을 하면 가히 황제를 깨우치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황제가 다급히 말하길 “앞의 말은 잠시 제쳐두고 바로 지금을 말하면 어떤가?”라고 하자 배도가 말하길 “필시 忠義의 마음을 거두어 帥臣에게 절개를 위해 죽게 만들고자 한다면 오직 유승해를 참수해야 한다. 그러면 四方의 羣盜가 은연 중에 간담이 서늘해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말하길 “돌아보면 太后께서 길러 아들로 삼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차선책을 말하라”라고 하자 배도가 말하길 “諸荒裔로 보내면 가하다”라고 하였는데, 황제가 “가하다”라고 하였다. 유오가 과연 유승해를 보내주고 소의가 마침내 안정되었다.

이때 徐州의 王智興이 崔羣을 몰아냈고 諸軍이 河北에 웅크리고 있으며[盤互] 進退가 일정하지 않았다. 논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배도를 재상에 임명하길 청하였으므로 本官으로 中書侍郎·平章事를 겸하게 하였다. 권력자와 간특한 자[權佞]가 결눈질하며 생각하길 李逢吉이 음험하고 모략을 잘 하므로 가히 배도를 모함할 수 있다고 하고 함께 넌지시 황제에게 권해 襄陽에서 이봉길을 소환하게 하여 兵部尙書에 임명하였다.⁵¹⁾ 배도가 재상이 된 지 2개월 후 과연 이봉길에게 이간되어 [재상을] 파직하고 좌복야가 되었다. 황제가 갑자기 風眩에 걸려 中外가 3일 동안 [황제의] 소식을 듣지 못하였다. 배도가 자주 內殿에 이르길 청해 太子를 세우길 원하자 다음날 만났다. 황제가 마침내 景王을 세워 후사로 삼았다. 이봉길이 대신하여 재상이 된 후 배도를 모해할 방법을 생각하여 자신과 친밀한 李仲言·張又新·李續·張權輿 등을 끌어들이고 안으로 환관과 결탁하며 支黨을 심었고 배도에 관한 추문을 매일 퍼뜨렸다. 이에 배도를 山南西道

51) 『신당서』 권173, 이봉길전, “穆宗即位, 徙山南東道. 緣講侍恩, 陰結近倖. 長慶二年, 召入爲兵部尙書. 時[裴]度與元稹知政, 度嘗條稹儉佞, 逢吉以爲其隙易乘, 遂并中之, ……”(5221~5222쪽).

節度使로 진출시키고 平章事를 빼앗았다.

[敬宗] 長慶 4년(824) 왕정주가 우원익의 가족을 살해하자 경종이 탄식하며 재상 자리에 인물이 없어 兇賊이 멋대로 방자하다고 한탄하였다. 學士 韋處厚가 上疏하여 말하길

신이 듣건대 汲黯이 조정에 있으니 淮南이 음모를 그만두고 干木이 魏에 있으니 諸侯가 息兵하였다. 王霸의 이치는 한 명의 병사가 백만의 군사를 저지하고 한 명의 현명한 신하가 천리 밖의 환난을 해결한다. 배도는 元勳 대신 이면서 문무를 겸비하였다. 만약 재상으로 삼아 參決하게 하면 반드시 戎虜를 두렵게 만들어 幽·鎮이 스스로 신복할[臣] 것이다. 管仲이 말하길 “인심이 떠나갈 때 다스리면 우매한 것이고 인심이 모여들 때 다스리면 聖[明]한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治亂의 근본은 다른 술책에 있는 것이 아니다. 폐하께서는 음식을 대하며 탄식하여 蕭[何]·曹[參]과 같은 사람이 없음을 한탄한다. 지금 배도를 밖으로 내쳤는데, 馮唐이 漢文帝에게는 [廉]頗·[李]牧과 같은 장수가 있었으나 임용하지 못한 것을 알았던 것과 같다.

라고 하자 황제가 깨닫고 위치후에게 말하길 “배도는 누차 재상이 되었으나 官에 平章事가 없는데, 왜인가?”라고 하자 위치후가 갖추어 그 이유를 말하였다. 황제가 이에 다시 배도를 兼章平事로 삼았다. 황제는 비록 어렸으나[孺蒙] 배도를 중시하였으므로 中人이 배도가 있는 곳에 이르면 반드시 정중하게 위문하고 또 소환될 기일을 알려 주었다. [경종] 寶曆 2년(826) 배도가 입조를 청하자 이봉길 黨이 크게 두려워하였고 [張]權輿가 거짓 가요[僞謠]를 지어 퍼뜨리길 “옷이 없는 小兒는 그 배를 드러내고 天上에 입이 있으니 쫓겨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배도가 [吳]元濟를 평정한 때문이다. 都城은 동서로 언덕[岡]이 6개 있고 민간에서는 이를 乾數로 여겼는데, 배도의 집은 平樂里에 있어 다섯 번째 언덕에 해당하였다.

장권여가 이에 말하길 “배도의 이름이 圖讖과 상응하여 집이 岡原에 있다. 부르지 않아도 오는데, 그 뜻을 알 수 있다”라고 하여 배도를 쓰러뜨리려 하였다. 천자는 홀로 능히 그 모함을 알고 조서를 내려 다시 輔政에 임명하였다.

앞서 황제가 장차 東都로 가려하자 大臣이 간절히 간언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제가 화를 내며 말하길 “짐의 뜻이 확고하다! 비록 從官과 宮人이 스스로 식량을 휴대하더라도 백성을 동요시키지 않겠다”라고 하고 有司에게 行宮을 檢料하게 하였으므로 中外가 감히 아무 말도 못했다. 배도가 조용히 상주하여 말하길

國家가 別都를 둔 것은 본래 巡幸에 대비한 것이다. 안사의 난[艱難] 이래 宮闕·署屯·百司 구역이 황폐해졌으나 수리하지 않았다. 시간을 들여 모두 새롭게 해야 갈 수 있다. 갑자기 출행하면 준비가 되지 않아 有司가 죄를 얻게 된다.

라고 하자 황제가 기뻐하며 말하길 “群臣이 짐에게 간언한 것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卿의 말대로 하겠다. 진실로 편안하지 못한데, 어찌 가겠는가?”라고 하고 행차를 그만두었다.

汴宋觀察使 令狐楚가 亳州에 聖水가 나와 이를 마시면 질병이 바로 낫는다고 말하였다. 배도가 말하길 “요사스러움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지 물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현지에 명해 폐쇄시켰다.

朱克融이 賜衣使者 楊文端를 억류하고 말을 꾸며 자기에게 오만하였다고 하고 아울러 사여한 것이 조악하다고 호소하며 度支의 帛 30만 필을 빌리기를 청하고 빌려주지 않으면 군대에 필시 변고가 생길 것이라고 하고 또 工[匠] 5천을 보내 東都 수리를 돕겠으니 천자가 東巡하기를 기다린다고 하였다. 황제가 화를 내면서도 근심이 되어 重臣을 보내 위무하려

고 하였다. 배도가 말하길

주극용은 연유도 없이 반역[悖]하였으므로 장차 망할 것이다. 비유컨대 猛虎가 山林에서 포효하며 뛰어다니지만, 窟穴에 의지하여 그런 것으로 형세가 그곳을 벗어날 수 없다. 사람 역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폐하께서는 중신을 사신으로 보낼 필요가 없고 단지 조서를 내려 말하길 “中人이 오만하고 무례하였으므로 돌아오면 내가 질책할 것이다. 春服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니 곧 有司를 힐문하겠다. 파견하려는 공장은 마땅히 바로 보내도록 하라. 이미 현지로 조서를 내려 맞이하도록 준비시켰다”라고 하면 賊의 모략이 궁지에 이를 것이다. 陛下께서 만약 이렇게 행하지 못하신다면 즉 “宮室의 營繕은 이미 순서를 잡아 두었으니 공장을 보내 수고하지 않도록 하라. 조정이 징발[召發]하면 사여를 하는데, 짐은 편애하지 않으므로 오로지 范陽에게만 줄 수 없으니 도리상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십시오.

라고 하자 황제가 “좋다”라고 하고 배도의 차선책을 채택하였다. 주극용이 명을 듣고 양문단을 돌려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군란이 일어나 주극용을 살해하였다.

황제(즉 경종)가 방종하여 태만하게 매일 늦게 조정에 나와 정무를 보았다. 배도가 간하여 말하길

이전에 폐하께서는 대략 한 달에 6~7번 臨朝하시어 천하 사람들이 정무에 힘쓰는 알았고 河朔의 賊臣이 모두 두려워하였다. 근래에는 연영전에서 만나는 횡수가 점점 줄어들어 萬機의 奏稟이 막히게 될까 우려된다. 대저 양생의 道는 마땅히 時候에 따라야 六氣가 和平하고 萬壽를 누릴 수 있다. 道家法에 의하면 春夏는 일찍 일어나 닭이 우는 때에 맞추고[取] 秋冬는 늦게 일어나日出 시에 맞춘다. 대개 陽이 이길 때는 음으로 조절하고 음이 이길 때는 양으로

조절한다. 지금 바야흐로 盛夏이니 마땅히 새벽에 자주 조정에 임해 널리 延問해야 한다. 시간이 巳午에 이르러 나오시면 炎赫이 가히 심하므로 聖躬이 피곤하게 된다.

라고 하자 황제가 홀륭하다고 하며 받아들이고 자주 조정에서 정무를 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判度支가 되었다. 황제가 붕어하자 定策 [환관]이 劉克明 등을 주살하고 江王을 맞이하여 세우니 곧 文宗이다. [배도에게] 門下侍郎을 더해주었다. 李全略이 죽자 아들 [李]同捷이 滄景軍을 세습하길 구하였다. 배도가 토벌하기를 상주하여 말하길 “兵·食을 調[發]하는 것은 재상의 일이 아니므로 度支를 그만두고 有司에게 돌려주길 청한다”라고 하니 상주대로 하게 하였다. 開府儀同三司로 進階하고 實封300호를 하사하였다. 배도가 간절하게 사양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해 이에 實封을 받았다.

[문중] 大和 4년(830) 자주 병이 들어 機重의 일을 맡지 못한다고 하며 재상[政事]에서 물러나길 청하였다. 황제가 上醫를 뽑아 치료하게 하니 中人이 매일 위문하는 것이 끊이질 않았고 이에 조서를 내려 司徒·平章軍國重事로 승진시키고 병이 낫기를 기다려 3일이나 5일에 한 번 中書에 나오게 하였다. 배도는 冊禮의 면제를 사양하였다. 배도는 스스로 공이 많고 지위가 높다는 것을 알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조금씩 행적을 속여 [詭迹] 禍를 피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때 牛僧孺와 李宗閔이 함께 輔政이 되어 배도의 勳業이 오랫동안 자기들 위에 있는 것을 질투해서 뉘그러다 하고자 하여 함께 그 행위를 헐뜯어 흠집내려고 하였는데, 배도가 재상을 사직하는 것을 이용하여 황제에게 아뢰어 兼侍中으로 승진시키고 山南東道節度使로 전출시켰다. [배도는] 아뢰어 [헌종] 원화 연간에 설치한 臨漢監을 없애고 1천 필의 말을 거두어 軍營[校]에 주고, 좋은 밭 400頃

을 襄人에게 돌려주었다. 얼마 후 퇴직을 굳게 청하였으나[請老] 허락하지 않았다.

[대화] 8년(834) 東都留守로 옮겼고 얼마 지나지 않아 中書丞이 더해졌다. 李訓의 禍가 일어나 환관이 마음대로 위세를 드러내고 무릇 李訓·鄭注의 친척과 빈객이 모두 체포되어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배도가 疏를 올려 변호해 살아남은 자가 수십 姓이었다. 武德縣의 창고를 관리하는 서리[主藏史]가 錢을 훔쳐 亡命하였는데, 잡지 못하였다. 河陽節度使 濫造가 그 현령 王賞을 옥에 가두고 상환하게 하여 3년 동안 수감된[繫] 상황에서 모친이 죽었음에도 喪에 가지 못하게 하였다. 배도가 황제에게 말해 왕상이 석방되었다.

당시는 환관이 권력을 행사하고 천자는 虛器를 가졌을 뿐이며 搢紳이 道喪하여 배도가 다시 경국제민[經濟]할 마음이 없었다. 이에 東都 集賢里에 집을 지었는데, 沼石林叢이 있고 봉우리로 둘러싸여 그윽하였다[幽勝]. 午橋에 별장[別墅]을 짓고 燠館과 涼臺를 갖추어 綠野堂이라고 부르고 그 아래로 물살이 흐르게 하였다. 배도는 野服을 입고 한가하게 살면서 白居易·劉禹錫과 더불어 文章을 짓고 술을 주고받으며 晝夜로 서로 즐기고 人間事를 묻지 않았다. 하지만 황제는 배도의 나이가 비록 많다고 해도 정신이 쇠퇴하지 않은 것을 알고 매번 대신이 洛에서 오면 반드시 배도의 안부를 물었다.

[문종] 開成 2년(837) 다시 本官으로 河東을 節度하였다. 배도는 老疾을 들어 강하게 사양하였지만, 황제가 吏部郎中 盧弘에게 명해 諭意를 선포하게 하여 말하길 “집을 위해 北門을 臥護하면 된다”라고 하고 빨리 떠나게 하였기 때문에 배도가 이에 鎮으로 갔다. 易定節度使 張璠이 卒하자 軍中에서 장차 그 아들 [張]元益을 세우려 하였는데, 배도가 이에 사신을 보내 禍福을 깨닫게 하자 장원익이 두려워서 저항하지 않고[束身] 歸朝하였다.

[개성] 3년(838) 병으로 東都로 돌아가길 청하였다. 中書승에 眞拜하였으나 집에 누워 감사를 표하지도 못하였다. 조서를 내려 먼저 俸料를 지급하였다. 또 황제가 군신들에게 曲江에서 연회를 베풀었으나 배도는 달러가지 못하였다. 황제가 詩를 하사하여 말하길 “정성으로 元老를 대우하려 하며 君을 안 것이 늦음을 한탄하네. 우리 집안의 柱石이 쇠약해졌으나 근심이 생기면 공자의 기도를 배우려 한다”라고 하고, 별도로 조서를 내려 “바야흐로 봄이거늘 보양하는 것이 어려우나 醫藥으로 잘 치유되길 바란다. 짐의 [詩]集에서 公의 [唱和]詩를 보고 이를 보내니 훗날 [다시] 올리고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사신이 문에 이르자 배도가 흥거하였는데, 나이가 75세였다. 황제가 소식을 듣고 놀라 애도하며 詩를 靈几 위에 두게 하였다. 太傅로 冊贈하고 시호를 文忠이라 하였으며 예물을 매우 많이 보내고 京兆尹 鄭復에게 명해 護喪하게 하였다. 배도가 임종할 때 스스로 銘誌를 지었다. 황제는 遺奏가 없는 것을 기이하게 여겨 家人에게 칙서를 내려 찾아보게 하였더니 반쯤 쓴 원고[半藁]가 나왔는데, 황태자[儲貳]를 청하는 것이었고 私言은 없었다. [武宗] 會昌 원년(841) 太師로 加贈되었다. [宣宗] 大中 연간 초에 조서를 내려 憲宗廟廷에 配享하였다.

배도는 온화한 외모를 지닌 대략 중간 정도의 사람이지만 神觀이 걸출[邁爽]하고 품행이 堅正하며 응대를 잘 하였다. 공을 세운 뒤 이름이 四夷에까지 떨쳤다. 外國에 사신으로 가면 그 君長이 반드시 배도의 나이가 얼마이며 狀貌는 누구를 닮고 천자가 임용하였는지를 물었다. 그 명성과 德業은 郭汾陽(즉 郭子儀)에 비견되었고 임용과 임용하지 않은 것은 항상 천하의 重輕[重輕]과 관계되었다. 4朝를 섬기며 시종 全德으로 하였다. 그가 죽자 천하에 그 風烈을 생각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管城에 장사지내고 지금에 이르도록 제사를 지낸다[廟食].

아들이 다섯인데, [裴]識과 [裴]諗의 이름이 알려졌다.

배식은 字가 通理인데, 천성이 총명하고 무릇 한번 본 것은 잊어버리지 않았다. 蔭으로 京兆[府]參軍에 임명되고 여러 차례 승진하여 大理少卿이 되었다. 王師가 劉稹을 토벌할 때 供軍使가 되었다. 유진이 평정되자 司農卿이 되고 湖南觀察使로 승진하였다. 들어가 大理卿에 임명되고 晉國公의 半封을 계승하였다. 涇原節度使가 되었다.

당시 蕃酋 尙恐熱이 3州7關을 바치고⁵²⁾ 줄지어 주둔하며 나누어 지켰다. 宣宗이 名臣을 선발하여 배식에게 涇原을 거느리고, 畢誠에게 邠寧을 거느리고, 李福에게 夏州를 거느리게 하여 황제가 친히 보냈다.

배식이 이르러 堡障을 수리하고 戎器를 정돈하고 屯田을 열었다. 앞서 將士가 변경을 지키면 때로 여러 해 동안 돌아가지 못하였다. 배식이 그들과 함께 戍限을 세워 기한이 차면 교대시켰고, 부모가 70세 이상이면 가까이에서 戍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감격하며 기뻐하였다. 檢校刑部尙書가 더해지고 鳳翔·忠武·天平·邠寧·靈武 등 軍으로 옮겼다. 檢校尙書右僕射로 승진하였다. 靈武는 땅에 염분이 많고 우물이 없었는데, 배식이 神에게 맹서한 후 뚫으니 과연 샘이 솟았다. 6절도사를 역임하였는데, 모두 가히 기술할 만한 업적이 있었다. 줄하자 司空으로 추증하고 시호를 昭라고 하였다.

배식은 文[才]가 있고 蔭으로 [임관해] 승진하여 考功員外郎이 되었다. 宣宗이 元和 시기 재상의 아들을 찾다가 배도의 勳望을 생각하게 되

52) 『신당서』 권13, 禮樂志3, “宣宗已復河·湟三州七關, 歸其功順宗·憲宗而加諡號”(342쪽); 『자치통감』 권248, 宣宗 大中 3년 2월 조, “吐蕃秦·原·安樂三州及石門等七關來降. [호삼성 주: 原州界有石門·驛藏·制勝·石峽·木靖·木峽·六盤七關. 考異; 實錄, ‘涇原節度使康季榮奏吐蕃宰相論恐熱殺東道節度使, 奉表以三州·七關來降’. …… 蓋三州·七關, 以吐蕃國亂, 自來降唐, 朝廷遣諸道應接撫納之, 非恐熱帥以來. 實錄誤耳] 以太僕卿陸耽爲宣諭使, 詔涇原·靈武·鳳翔·邠寧·振武皆出兵應接”(8037~8038쪽).

어 배심을 잘 대우하였다. 翰林學士가 되었다가 여러 차례 승진하여 工部侍郎이 되었는데, 조서를 내려 [翰林]承旨를 더해주었다. 때마침 황제가 그 [翰林]院으로 행차하였고 배심이 바로 은혜에 감사하자 황제가 말하길 “집으로 돌아가 妻子와 함께 경하하도록 하라”고 하고 황제가 먹던 상자의 과자[御奩果]를 집어 하사하였다. 배심은 옷을 들어 무릎을 꿇고 받았다. 황제가 宮人을 돌아보며 [毛]巾으로 싸서 주게 하였다. 후에 太子少師가 되고 河東郡公에 봉해졌다. 黃巢가 나라를 훔쳐 僞官을 받도록 협박하였으나 따르지 않아 해를 입었다.

贊하여 말하길 현종이 蔡를 토벌할 때 出入한 것이 4년이다. 오원제가 밖으로 姦臣과 연계하여 재상을 찌르고 권력을 행사하는[用事] 자에게 反하여 朝謀를 저지하고 어지럽혔다. 오직 天子가 赫然하게 羣議를 물리치고 배도를 政事에 임명하고 의지하여 賊을 토벌하였다. 직접 싸움을 두려워하여 마침내 淮西를 평정하였다. 배도가 아니면 賊을 격파하는 것이 어려웠고, 배도를 임용하는 것이 어려웠다. 韓愈가 그 공을 칭송하여 말하길 “무릇 이 蔡의 공적은 오로지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였는데,⁵³⁾ 사리에 맞는 말[知言]이라고 하겠다! 穆宗은 군주의 체통이 없어 간사하고 부패한 자가 틈을 이용하여 비방함에 따라 배도가 마침내 顯功을 세우지 못하였다. 이전에는 지혜롭고 후에 어리석었던 것이 아니라 기용되었는가 기용되지 않았는가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이다. 前史에서 칭하기를 배도가 만년에 세파의 흐름에 따르는 것으로 자신을 안전하게 하는 계책으로 삼았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大雅에서 말하길 “이미 도리에 밝고 또 일을 살피서 그 몸을 보호한다”⁵⁴⁾ 라고 한다. 배도를 어떻게 비난

53) 정병준, 『『舊唐書』·『新唐書』 李師道·吳元濟·王承宗 등 列傳 역주』, 481쪽.

54) 성백효 역주, 『詩經集傳』 下, 大雅, 烝民, “既明且哲, 以保其身”(전통문화연구회, 1993, 325쪽).

할 수 있겠는가.

6. 『신당서』 권152, 李絳傳⁵⁵⁾

이강⁵⁶⁾은 字가 深之이고 본래 [河北道 趙州] 贊皇[縣]⁵⁷⁾ [사람]이다. 進士·宏辭에 급제하여 渭南尉에 보임되었다가 監察御史에 배수되었다. [憲宗] 元和 2년(807) 翰林學士에 제수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知制誥가 되었다. 마침 李錡가 주살되자 憲宗이 장차 그 재물을 몰수하여 옮기려고 하니 이강이 裴埴와 함께 간언하여 말하길

이기는 참람하게 사치하여 誅求하였기 때문에 6州 사람의 원한이 골수에 스며들었다. 지금 元惡이 傳首되었는데 만약 그 재물을 취한다면 亂略을 막고 困窮한 이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할까 우려된다. 원컨대 本道에 하사하여 貧民의 租賦를 대신하게 하시오.

라고 하니 제서를 내려 허가하였다. 樞密使 劉光琦가 中人에게 赦令을 들고 諸道로 가서 饋餉을 모으는 것을 의논하였는데, 이강이 度支·鹽鐵에게 명해 급히 차례로 보내 取求의 폐단을 없애게 하길 청하였다. 유광기가 故事를 들어 대답하자 황제가 말하길 “고사가 옳다면 마땅히 지켜야 하나 그렇지 않으면 마땅히 고쳐야 한다. 어찌 옛것을 쫓기만 하겠는가!” 라고 하였다.

55) 『신당서』 권152, 이강전, 48364~844쪽.

56) 王朝中, 「李絳藩鎮對策述論」, 『中國唐史學會論文集』, 三秦出版社, 1991 등 참조.

57) 『구당서』 권39, 지리지2, 河北道, 趙州 조, 1501쪽.

황제가 일찍이 太宗·玄宗의 성세를 찬미하여 “짐은 재주가 없지만 2
 祖의 道德·風烈에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 諡號에 부끄럽지 않고 宗廟를
 욕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니 이강이 말하길

폐하께서는 진실로 능히 몸을 바르게 하고 자신에 힘쓰며 道德을 높이고
 邪佞을 멀리하며 忠直을 권장하고 大臣과 말할 때 공격하고 믿으며 소인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고, 賢者와 어울리면서 친근하게 대하고 예로 상대하며 불
 초한 이가 어울리지 못하게 하시오. 다스림에 무익한 官을 없애면 재능 있는
 이가 나타날 것이고, 황제를 시봉하지 못하는 宮女를 내보내면 원망이 없어질
 것이다. 將帥가 잘 선발되면 士卒이 용감해지고 官師가 공정하면 吏治가 갖
 추어질 것이다. 法令이 행해지면 아랫사람이 어기지 않고 教化가 돈독하면 풍
 속이 반드시 좋아질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가히 祖宗과 合德하여 中興을 칭
 할 수 있을 것이니 대저 어찌 이러한 것을 멀리하겠는가? 말만 하고 행하지 않
 으면 무익하고 행하되 이르지 못해도 무익하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황제가 말하길 “훌륭하다, 이 말이여! 짐은 장차 예복
 의 띠[諸紳]에 적어두겠다”라고 하고 즉시 조서를 내려 이강과 崔羣·錢
 徽·韋弘景·白居易 등에게 군신의 성패 50종을 搜次하게 하여 병풍에 이
 어서 便坐에 펼쳐두었다. 황제가 매번 閱視하고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길
 “그대들은 마땅히 유의하고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이때 安國佛祠를 성대하게 일으키고 있었는데, 총신 吐突承璀가 돌을
 세워 聖德을 기록하길 청해 華廣하게 조영하면서 이강에게 그 頌을 짓게
 하기 위해 장차 錢 1千萬 貫을 보내려고 하였다. 이강이 황제에게 말하길

폐하께서 積習의 폐단을 청산하여 四海가 목을 빼고 德音을 바라보는데,
 홀연히 스스로 碑를 세워 사람들에게 넓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易에서

말하길 “大人은 천지와 合德한다”라고 하는데, [대인의 덕은] 文字로 능히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만약 가히 말할 수 있다면 이는 폐하의 미덕이 한계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堯·舜에서 文·武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일을 전하지 않았다. 다만 秦始가 嶧山에 새겨 誅伐과 巡幸의 노고를 선양하였는데, 道를 잃은 군주여서 족히 法으로 삼을 만한 것이 아니다. 지금 安國에 碑를 세워 만약 游觀을 서술한다면 治要가 아니고, 崇飾을 서술한다면 또한 政宜가 아니다. 그만두길 청한다.

라고 하였다. 황제가 노하자 이강이 옳드려 더욱 간절히 상주하였다. 황제가 깨닫고 말하길 “이강이 아니면 내가 알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하고 소 100마리를 부려 돌을 넘어뜨리게 하고 使者를 보내 이강을 위로하였다. 襄陽의 裴均이 조서를 어기고 銀으로 된 壺甕 수백具를 헌상하자 이강이 度支로 보내 천하에 민음을 보이기를 청하였다. 황제가 상주를 可하다고 하고 배균의 죄를 사면하였다. 당시 의논하기를 盧從史를 昭義로 돌려 보냈다가 장차 다시 소환하려고 하였는데, 노종사가 軍에 쌓아둔 것이 없음을 구실로 삼았다. 李吉甫가 鄭綱에 의해 그 모의가 누설되었다고 하자 황제가 이강을 불러 논의하여 정인을 쫓아내려고 하였는데, 이강이 그를 위해 해명하자 이에 벗어났다.

이강이 浴堂殿에서 알현하자 황제가 말하길 “근래에 諫官이 많이 朋黨을 만들어 論奏가 부실하며 모두 비방하고 헐뜯고 있다. 그 심한 자를 내쫓으려고 하는데,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이에 이강이 말하길

이는 폐하의 뜻이 아니고 필시 간사한 사람이 이 말로 황제의 마음을 미혹 시키려는 것이다. 예부터 간언을 받아들이면 번창하고 간언을 거부하면 망하였다. 대저 人臣이 황제에게 進言하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인가? 군주가 존귀한 것은 하늘과 같고 신하가 낮은 것은 땅과 같으며 이에 더해 우레와 천둥의 위

업이 있다. 그들은 주야로 숙고하여 비로소 10가지를 진술하려고 하였어도 갑자기 5~6가지를 없애고 장차 황제에게 상주하려고 할 때 또 두려워서 그 반을 삭제하기 때문에 上達하는 것은 겨우 10분의 2에 지나지 않는다. 왜일까? 不測의 화란을 범하면 자신에게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비록 간언을 장려해도 간언이 없을 것을 우려했는데, 지금 질책하려 한다면 直士에게 입을 단게 하는 것으로 社稷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였다. 황제가 말하길 “卿의 말이 아니었다면 내가 간언의 유익함을 몰랐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전에 토돌승최가 王承宗을 토벌할 때 논자들이 모두 옛날에 宦人을 統帥로 삼은 적이 없다고 하고 또 이강이 制書를 기초[當]하면서 강하게 다투자 황제가 의지를 꺾지 못해 재상에게 조서를 내려 授敕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토돌승최가 과연 공을 세우지 못하고 돌아왔으나 開府儀同三司를 더해주었다. 이강이 상주하여 “토돌승최가 군사를 잃었으니 마땅히 죄에 저촉되는데, 지금 총애하여 秩을 높이면 훗날 도망친 장수가 이익을 쫓아 상을 요구하면 폐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였다. 또 자주 환관의 橫肆와 方鎮의 進獻 등의 일을 논하였다. 스스로 말이 격하고 또 퇴출될 것을 알고 內署의 上疏 초안을 모두 꺼내 불태우고 명을 기다렸다. 황제가 과연 화를 내자 이강이 사죄하여 말하길 “폐하께서 우매한 신을 어여삐 여겨 腹心으로 삼았는데 몸을 아껴 말하지 않는다면 이는 신이 폐하를 저버리는 것이다. 만약 위로 황제[聖顏]를 범하고 두루 貴倖을 거역한 것으로 죄를 얻는다면 폐하께서 신을 저버린 것이다”라고 하자 황제가 표정을 바꾸며 말하길 “경이 짐에게 말하기 어려운 것을 알려주었다. 疾風이 勁草를 안다고 하는데, 바로 경이 이에 부합된다”라고 하고 마침내 司勳郎中에서 中書舍人으로 승진시켰다. 다음날 金紫를 하사하고 친히 良笏을 골라 사여하고 또 말하길 “훗날 南面을 顧託하게 되면 마땅히 이와 같

아야 한다”라고 하자 이강이 머리를 조아렸다.

[원화 5년(810) 4월] 烏重胤이 노종사를 포박하자 토돌승최가 [오중운을] 昭義留後에 牒署하였는데, 이강이 말하길

澤潞는 山東의 要害에 해당하고 磁·邢·洺은 兩河 간에 걸쳐 있어 그들의 合從을 견제할 수 있다. 지금 흉악한 놈(孽豎)을 사로잡아 바야흐로 威柄을 거두었는데, 급거 偏將을 本軍에 세운다면 기강이 크게 무너진다. 河南·北의 諸鎮이 폐하께서 관작으로 유혹하여 그 [藩]帥를 쫓아냈다고 해도 수궁할 수 있는가? 마땅히 [河陽節度使] 孟元陽을 澤潞에 임명하고 오중운은 三城을 절도하게 해야 한다. 兩河의 諸侯가 이를 들으면 반드시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하자 황제가 이를 따랐다.⁵⁸⁾

[원화 5년 9월 義武節度使] 張茂昭⁵⁹⁾가 일족을 거느리고 입조하자⁶⁰⁾ 이강이 上言하길 “任迪簡이 이미 가서 대신하였으나 장무소를 [隨]從하는 병사들은 모두 定[州] 사람이니 마땅히 바로 관직을 수여하고 또 사신을 보내 그 휘하에게 조서를 내려 모두 장무소의 節度를 듣게 하시오”라고 하였다. [10월] 조서를 내려 [장무소를] 河中節度使로 삼았다.⁶¹⁾ 그

58) 『자치통감』 권238, 원화 5년 4월 조, “…… 上嘉吳重胤之功, 欲卽授以昭義節度使, 李絳以爲不可, 請授重胤河陽, 以河陽節度使孟元陽鎮昭義. 會吐突承璀奏, 已牒重胤句當昭義留後, 絳上言, …”(7674~7676쪽).

59) 『구당서』 권141, 장무소전, 3858~3860쪽; 『신당서』 권148, 장무소전, 4770~4771쪽.

60) 『자치통감』 권238, 원화 5년 9월 조, “義武節度使張茂昭請除代人, 欲舉族入朝. 河北諸鎮互遣人說止之, 茂昭不從, 凡四上表, 上乃許之. 以左庶子任迪簡爲義武行軍司馬. 茂昭悉以易·定二州簿書管鑰授迪簡, 遣其妻子先行, 曰, ‘吾不欲子孫染於汚俗’. 武昭既去, 冬, 十月, 戊寅, 虞候楊伯玉作亂, 囚迪簡”(7679쪽); 同 12월 조, “張茂昭入朝, 請遷祖考之骨于京兆. [호삼성 주: 張茂昭祖謚·父孝忠, 皆葬河北]”(7681쪽).

61) 『구당서』 권14, 헌종본기상, 원화 5년 10월 조, “甲午(27일) 以前義武軍節度·檢

때 임적간이 창고[帑廩]가 비자 疲老한 병사를 조금 簡罷하자 人情이 불안해지고 임적간 역시 위험해졌다. 이강이 禁帑의 絹 10만을 斥하여 事機를 구제하게 하였다.

[원화 4년(809) 7월] 吳少誠의 병이 심해지자 이강이 建言하길 “淮西는 땅이 賊과 인접하지 않는다. 만약 조정이 帥를 임명한다면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다. 만약 命을 거부하면 絶단하여 가히 討벌할 수 있다. 하지만 鎮·蔡를 동시에 踰할 수 없으므로 王승중을 사면하고 빨리 蔡功을 세우길 願한다”라고 하였다.⁶²⁾ 당시 江淮에 큰 가뭄이 들어 황제가 赦令을 내려 [부세를] 蠲·弛하였는데, 이강이 말하길

강희의 流亡하는 사람은 貸하여 받는 것이 광범위하지 않다. 하지만 宮人은 많이 적체되어 怨罵의 마음이 있으니 마땅히 대거 방출하여 경비를 줄이시길 바란다. 嶺南의 풍속에서는 자식 파는 것을 業으로 하지만, 가히 방치하고 있다. 證券[券劑]가 없이 값을 받는 자는 掠賣法으로 處단하고 有司에게 勅을 내려 일체 확실히 금지시키게 하십시오.

라고 하자 황제가 모두 그대로 받아들였다.

후에 한 달이 되어도 對面하라는 命[賜對]이 없자 이강이 말하길 “大臣은 祿을 받기 때문에 감히 干언하지 않고 小臣은 죄가 두려워 감히 말을 하지 않는데, 管仲은 가장 패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지금 신 등이 飽食하며 말하지 않는 것은 위험에 빠질 걱정이 없도록 스스로

校太尉·兼太子太傅·同平章事張茂昭檢校太尉·兼中書令·河中尹·忠河中晉絳慈隰節度使”(433쪽); 『신당서』 권7, 현종본기, 원화 5년 10월 조, “張茂昭以易定二州歸于有司. 辛巳(14일), 義武軍都虞候楊伯玉反, 伏誅”(211쪽).

62) 『자치통감』 권238, 원화 4년 7월 조, “時吳少誠病甚, 絳等復上言, ‘……’ 既而承宗未得朝命, 頗懼, 累表自訴”(7664쪽).

계책을 세우는 것인데, 聖治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라고 하였다. 조서를 내려 다음날 三殿에서 대면하게 하였다. 황제가 일찍이 苑中에서 사냥[畋]하면서 蓬萊池에 이르러 左右에게 말하길 “이강이 일찍이 나에게 간언하였으니 여기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였다. 그가 禮憚된 것이 이와 같았다.

황제가 前世에는 賢[才]에게 맡겨 정치를 이루었으나 지금은 가히 맡길 만한 현재가 없다고 의아해하며 그 이유를 묻자 대답하길 “聖王이 當代의 사람을 뽑아 그 才分을 더하게 하면 저절로 다스림을 이룰 수 있다. 어찌 다른 시대의 현재를 빌려 지금의 사람을 다스리겠는가? 천자가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과시하지 않고 힘껏 지조를 굽혀 선비[士]를 대우하면 천하의 賢者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말하길 “어떻게 그 사람이 반드시 현자라는 것을 알아 맡기는 것인가?”라고 하자 대답하길

사람을 아는 것은 진실로 어려우므로 堯·舜도 병으로 여겼다. 하지만 그 명성에 따르고 일로 확인하면 10의 7을 얻을 수 있다. 대저 任官하면 잘 살피 흔들리지 않고 일을 처리하는 때 느슨하지 않고 명리를 바라거나 관망하는 언어를 쓰지 않고 간사하게 아첨하거나 기쁘게 해 주려는 표정이 없으면 현재에 가까운 것이다. 현재는 마땅히 임용되어야 하고 임용되면 마땅히 오래 지속되어야 한다. 賢者는 중간에 서므로[中立] 도와주는 이가 적고[寡助], 같은 부류를 천거하면 불초한 자가 원망하고, 샅된 길을 막으면 간교한 자가 미워하고, 制度를 한결같이 하면 貴戚이 험뜯고, 過失을 바로잡으면 人君이 멀리한다. 그러므로 用賢이 어찌 용이하겠는가?

라고 하였다. 황제가 말하길 “경의 말은 요점을 얻었다”라고 하였다.

[원화] 6년(811) [2월]⁶³⁾ 學士를 그만두고 戶部侍郎으로 승진하여 本司를 判하였다. 황제가 戶部는 이전에 獻하였으나 이강이 홀로 하지 않는

것은 왜인가라고 묻자 대답하길

무릇 方鎮이 땅을 영유하면 賦를 거두지만, 혹 用度를 아껴 羨餘로 바꾸어 獻이라고 한다. 신이 폐하를 위해 삼가 出納하는데, 어찌 남는 것(羨贏)이 있겠는지? 만약 獻이라고 한다면 이는 東庫의 物을 옮겨 西庫를 채운 것으로 官物을 진상하여 私恩을 맺는 것이다.

라고 하자 황제가 놀라면서 깨달았다. 황제가 자문을 구하면 일에 따라 補益하였는데, 말하는 것을 듣지 않는 것이 없었고 마침내 재상으로 삼으려 하였다. 하지만 토돌승최에 대한 총애가 바야흐로 아주 컸는데, 그가 승진하는 것을 꺼려 음으로 비방하였다. 황제가 이에 토돌승최를 淮南監軍으로 보내고 다음날 이강을 中書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로 삼고 高邑男에 봉하였다.

바야흐로 江淮가 매년 흉작이어서[歲儉] 백성들이 거둬서 굶주렸다. 御史가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와 재해가 아니라고 상주하였다. 황제가 이를 이강에 말하자 대답하길 “方隅는 모두 폐하의 大臣인데, 누가 부실하게 상주하겠는가? 어사가 구차하게 폐하를 기쁘게 하기 위함일 뿐이다. 무릇 군주는 마땅히 大臣을 임명해야지 小臣을 보내 이간하게 하면 안 된다. 원컨대 그 이름을 밝히고 질책해야 한다”고 하였다.

李吉甫가 일찍이 천자의 威德을 높이 칭찬하자 황제가 기뻐하였다. 이강이 홀로 말하길 “폐하께서는 스스로 지금이 漢文帝 시기와 비교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하자 황제가 말하길 “짐이 어찌 감히 文帝를

63) 『자치통감』 권238, 원화 6년 2월 조, “宦官惡李絳在翰林, 以爲戶部侍郎, 判本司. [호삼성 주: 判本司者, 判戶部職事. 唐自中世以後, 戶部侍郎或判度支, 故以判戶部爲判本司, 此二十四司之司也] 上問, ‘故事, 戶部侍郎皆進羨餘, ……’ (7682~7683쪽).

바라보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대답하여 말하길 “그때 賈誼는 불이 積薪 아래에 놓였으니 아직 불타지 않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편안하였는데, 그 우려하는 바가 이와 같았다. 지금 法令이 미치지 않는 곳이 50여 州이고⁶⁴⁾ 西戎이 안으로 어지럽혀[內訌] 가까이 涇·隴이 변경이 되어 京師와의 거리가 1천 리도 되지 않고 烽燧가 서로 이어져 있다. 이에 더해 근래에 水旱이 매년 이어져 倉廩이 공허해졌다. 진실로 폐하께서 노심초사하여 濟時의 책략을 구해야 하는데, 어찌 베개를 높이 베고 잘 수 있는가!”라고 하였다. 황제가 안으로 들어가 좌우에게 말하길 “이강은 말이 강직[骨鯁]하니 진짜 재상이다”라고 하고 사신을 보내 醪醢酒를 하사하였다.

魏博의 田季安이 사망하자 아들 [田]懷諫이 약관[弱]이었으나 軍中이 절도사를 세습하게 해주길 청하였다. 이길보가 토벌하자고 의논하였으나 이강이 말하길

그렇지 않다. 兩河가 두려워하는 것은 部將이 병사를 이끌고 자기를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諸將에게 병사를 총괄하도록 위임하여 모두 힘이 대등하고 임무를 고르게 해서 서로 견제하여 변고를 일으키지 못하게 한다. 만약 主帥가 강하면 죽히 그 명을 관찰시킬 수 있지만, 지금 전회간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능히 일을 처리하지 못해 필시 권력을 다른 사람에게 임시로 맡길 것인데, 권력이 무거우면 원망이 생겨 앞서 권력이 동등했던 사람이 장차 일을 일으켜 환란을 만들 것이다. 무리가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寬厚하고 簡易하여 軍中이 평소 아끼는 사람이고 그가 세워지면 조정에 기대지 않으면 또한 능히

64) 『자치통감』 권238, 원화 5년(810) 12월 조, “[李]絳嘗從容諫上聚財, 上曰, ‘今兩河數十州, 皆國家政令所不及, 河·湟數千里, 淪於左衽, 朕日夜思雪祖宗之恥, 而財力不贍, 故不得不蓄聚耳。不然, 朕宮中用度極儉薄, 多藏何用邪! [호삼성주: 淮西旣平, 帝之所聚, 適爲驕侈之資耳]’”(7682쪽).

안심할 수 없다. 단지 폐하는 위엄을 지키며 기다리면 된다.

라고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田興이 과연 세워졌고 위박을 들어 명을 청했으므로 황제가 크게 기뻐하였다. 이길보가 다시 中人을 보내 위로하며 그 변고를 정탐하게 하여 서서히 마땅한 바를 의논하길 청하였다. 이강이 홀로 말하길

성의를 다해 撫納하며 바로 旌節을 假하는 것보다 못하다. 뒤에 使者가 三軍의 表를 가지고 와서 전흥에게 사여하길 청하면 주도권[制]이 그들에게 있고 이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상주를 따른 것과 특별히 제수하는 것이 어찌 동일하겠는가?

라고 하였다. 하지만 황제는 이길보를 어기기 어려워 조서를 내려 張忠順에게 부절을 가지고 가게 하여 전흥을 留後로 제수하였다. 이강이 강하게 청해 말하길 “만약 전흥이 만에 하나라도 명을 받들지 않으면 바로 姑息하고 다시 이전과 같이 하라”라고 하였다. 이로 말미암에 바로 전흥을 절도사로 제수하였다. 이강이 다시 말하길 “王化가 위박에 미치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하루아침에 6주를 들어 귀순하였으므로 크게 犒賞하지 않으면 人心이 감격하지 않을 것이다. 禁[中]의 錢 150만 緡을 내어 그軍에 하길 청한다”라고 하였다. 어떤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자 이강이 말하길 “가령 15만 병사를 동원해 1년이 걸려 6주를 얻었다고 하면 轉給한 경비가 3배에 달한다. 지금 전흥은 매우 두드러지게[天挺] 忠義하여 앞장서 汚俗을 바꾸어 兩河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다. 小費를 아껴 機事를 농칠 것인가?”라고 하였다. 이에 따랐다.

황제가 朋黨을 근심하여 이강에게 문자 대답하여 말하길

옛날부터 人君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朋黨이다. 小人은 헤아려서 깨닫기 때문에 항상 핑계를 붙여 上의 마음을 격노시킨다. 붕당이라는 것은 찾아보면 중적이 없고 말을 하면 가히 의심이 간다. 소인은 항상 이익으로 움직이며 忠義를 돌아보지 않고, 君子는 군주가 알아주면 나아가고 의심하면 물러나므로 그 자리를 편안하게 하고 다른 계산을 하지 않아 항상 奸人의 모해를 받는다. 대저 聖人은 행적을 같이 하고 賢者는 같은 부류를 구하므로 道를 같이 하는 것이지 黨이 아니다. 폐하께서 堯·舜·禹·湯의 德을 받들어 따르지만, 어찌 위로 수천 년의 군주와 黨을 이룬다고 하겠는가? 道德이 같을 따름이다. 漢 시기의 名節·骨鯁의 선비가 있어 同心으로 愛國하였는데, 환관·소인이 질시하여 黨錮의 獄을 일으켜 끝내 천하를 잃어버렸다. 이익을 좇는 사람은 항상 朋比를 만들어 그 사익을 함께 추구하고, 바름을 지키는 사람은 항상 모함에 빠져 그 사익이 없다. 소인은 많고 참언하여 항상 이기고, 正人은 적고 바른 길을 걸어[直道] 항상 이기지 못한다. 가히 경계하지 않으랴!

라고 하였다. 이강이 중간에 서면서[居中] 영합하지 않아[介特] 특히 좌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으므로 마침내 기회를 이용하여 스스로를 밝힌 것이다.

王播가 鹽鐵使에 임명되어 계속 月進을 올렸다. 이강이 말하길 “앞서 천하의 正賦 이외에 다른 헌상[獻]을 올리지 못하게 금지하였음에도 왕파가 망령되게 羨餘라고 하는데, 祿稟·家貲에서 나온 것이 아니므로 모두 有司에게 보내길 원한다”라고 하자 황제가 “좋다”라고 하였다. 이강이 在位한 기간에는 헌상을 禁中에 들이지 않았다.

[원화 7년(812) 是歲] 吐蕃이 涇州를 침범하여 人畜을 약탈하자 이강이 [上]言하길

변경[濱塞]에는 虛籍이 많고 實兵이 적다. 지금 京西·北의 神策鎮軍은

본래 盛秋를 防하였는데, 앉아서 衣食을 향유하며 싸우려 하지 않는다. 일이 닥치면 이에 먼저 中尉에게 품신[稟]한다. 대저 병사가 안을 방어하지[內御] 않는데, 應變에 대비해야 한다. [처음에는] 털끝만큼 잃지만 [뒤에는] 천리나 어긋나게 된다. 청컨대 本道에 나누어 예속시키면 號令이 齊一해지고 앞에서 싸우면 후퇴하는 일이 없다.

라고 하였다. 하지만, 士卒들이 兩軍의 姑息을 즐기고 환관이 이를 구실로 삼았기 때문에 논의가 마침내 그쳤다.⁶⁵⁾

일찍이 盛夏에 延英에서 [問]對할 때 황제가 땀을 흘려 옷을 적셨다. 이강이 나가려고 하자 황제가 말하길 “집이 궁중에서 대면하는 사람은 오직 宦官·女子인데, 卿과 천하의 일을 강구하는 것이 즐거움이다”라고 하였다. 이강이 논쟁하는 것이 없으면 황제가 바로 그 이유를 힐문하였다. 또 말하길 “公 등은 姻[戚]·故[舊]로 冗食하는 자가 있는가. 마땅히 官을 아껴야 할 것이다”라고 하자 [李]吉甫·權德輿가 모두 없다고 하였다. 이강이 말하길

崔祐甫는 재상이 되어 반년도 되지 않아 吏 800인을 제수하였다. 德宗이 “공의 姻故가 많은 것은 왜인가?”라고 묻자 최우보가 말하길 “물으신 것은 맞

65) 『자치통감』 권239, 원화 7년 是歲 조, “吐蕃寇涇州, 及西門之外, [호삼성 주: 先寇涇州界, 進及涇州西門之外] 驅掠人畜而去. 上患之, 李絳上言, ‘京西·京北皆有神策鎮兵, [호삼성 주: 京西, 鳳翔·秦·隴·原·涇·渭也. 京北, 邠·寧·丹·延·鄜·坊·慶·靈·鹽·夏·綏·銀·宥也. 鎮兵註已見前] 始, 置之欲以備禦吐蕃, 使與節度使掎角相應也. 今則鮮衣美食, 坐耗縣官, 每有寇至, 節度使邀與俱進, 則云申取中尉處分, [호삼성 주: 唐神策鎮兵分屯于外, 皆屬左·右神策中尉] …… 請據所在之地土馬及衣糧·器械皆割隸當道節度使, 使號令齊壹, 如臂之使指, 則軍威大振, 虜不敢入寇矣’. 上曰, ‘朕不知舊事如此, 當亟行之’, 既而神策軍驕恣日久, 不樂隸節度使, 竟爲宦者所沮而止”(7698쪽).

기도 하고 맞지 않기도 하다. 신의 親·舊가 아니면 어찌 그 재능을 알 것인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어찌 감히 官을 주겠는가?”라고 하였는데, 당시 名言이라고 하였다. 武后는 命官을 남발하였으나 開元 연간에 유명한 자는 모두 거기서 나왔다. 古人이 말하길 10을 선발하여 5를 얻었으니 그 반을 얻은 것이라고 하였다. 만약 情故를 회피한다면 聖主께서 責成하려는 뜻이 아니다.

라고 하자. 황제가 말하길 “진실로 그렇다. 마땅한 것을 얻는 데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또 묻길 “玄宗 開元 시기에 치세를 이루었으나 天寶 시기에 난이 일어났다. 어찌 한 명의 군주인데, 相反되는가?”라고 하자 이강이 말하길

다스림은 憂危하는 데서 생겨나고 난리는 放肆에서 생겨난다. 현종이 일찍이 官守를 歷試하여 사람의 어려움을 알고 즉위 초기에 姚崇·宋璟을 임용하여 힘써 聽納하였기 때문에 좌우·전후가 모두 正人이었다. [李林甫·楊國忠이 군주를 섬기면서 오로지 傾邪한 사람을 기용하여 要劇을 나누어 총괄하게 하였다. 이에 황제가 직언을 듣지 않고 嗜欲이 날마다 늘어나 안으로 盜臣이 興利를 권하고 밖으로는 武夫가 開邊을 유혹하여 천하가 소란스러웠기 때문에 [安祿山이 틈을 이용하여 일어난 것이다. 이는 모두 小人이 啓導한 것이고 방종·안일하며 교만한 때문이다. 모두 당시 군주의 행위에 달린 것으로 영원한 다스림[常治]도 없고 영원한 어지럽힘도 없다.

고 하였다. 황제가 말하길 “무릇 사람이 일을 행할 때 병폐는 도리에 통하지 않는 것에 있다. 과실을 따져보면 古人이 이를 처리하는 이치가 있는가?”라고 하자 이강이 말하길 “일은 때로 과오가 있으며 聖主도 면할 수 없다. 천자가 諫臣을 두는 것은 과실을 救하기 위함이다. 상하가 한 몸이

되는 것은 마치 手足이 心膂에 의해 부러지는 것과 같다. 단지 삼가 능히 과실을 감싸야만 常情으로 가려진다. 聖人은 과오를 고치는 데 인색하지 않았다. 원컨대 폐하께서 이를 행하시길 바란다”라고 하였다.

教坊使가 密詔를 칭하며 良家子 및 別宅婦人을 선발하여 禁中에 넣으니 京師가 시끄러웠다. 이강이 장차 입궁하여 황제에게 말하려고 하자 [李]吉甫가 말하길 “이는 諫官이 論列할 일이다”라고 하였다. 이강이 말하길 “公은 일찍이 諫官이 論事하는 것을 싫어하였는데, 이 말하기 어려운 것을 그들에게 넘기려는 것인가?”라고 하였다. 이길보는 이에 詔使에게 암시하여 그만두게 하려고 하였다. 이강은 이길보가 두려워서 감히 간언하지 않을 것으로 여기고 마침내 홀로 上疏하였다. 황제가 말하길 “짐은 丹王 등에게 侍者가 없으므로 앞서 閭里에서 찾아 재물로 들이게 명하였다. 백성들이 짐의 뜻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譁擾한 것이다”라고 하고 이에 취한 이들을 모두 돌려보냈다.

足疾 때문에 사임을 청해 [재상을] 파하고 禮部尙書가 되었다. 황제가 이에 토돌승최를 淮南에서 불렀다. 이강은 비록 자리를 떠났다고 해도 마음으로 여전히 나랏일을 그만둘 수 없어 上言하여

北虜가 바야흐로 강성해지니 다섯 가지 우환이 있다. ① 그들은 신의를 멸시하고 이익을 중시하여 매년 말을 보내 가격을 요구하는데, 지금 받아주지 않으면 당연히 다른 음모를 꾸미는 것이 첫째이다. ② 屯土가 부족하고 斥候가 명확하지 않고 城에 완전한 성가퀴[堞]가 없어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어려운 것이 둘째이다. ③ 지금의 營築은 衆謀를 묻지 않고 멀리 塞外에 짓고 城이 요지에 있지 않아 오랑캐가 침입하면 應援이 어려운 것이 셋째이다. ④ 해마다 通好하여 왕래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河山의 兵甲이 모두 알고 있지만, 만약 침략하여 驅脅하면 援兵이 10일이 되어야 도착할 수 있어 도착하면 오랑캐가 떠났고 병사가 철수하면 다시 오는 것이 넷째이다. ⑤ 北狄·西戎은 오

랫동안 원수지만, 지금 回鶻이 叛을 생각하여 만약 서로 연계하여 여러 길로 나란히 들어오면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다섯째이다.

라고 하였다.

[원화] 10년(815) 華州刺史로 진출되었다. 토돌승최의 田이 그 관할 구역에 많았는데, 主奴가 백성을 어지럽히면 이강이 捕繫하였다. 마침 五坊使를 파견하였는데, 황제가 경계하여 말하길 “華에 이르면 마땅히 스스로 행동을 삼가라. 이강은 대신이다. 상주가 있으면 바로 法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州에 捕鷄戶가 있어 매년 일정한 수량을 상공하도록[貢限] 요구되었는데, 이강이 이를 상언하여 畋獵을 그만두게 하니 조서를 내려 澤潞·太原·天威府도 모두 그만두게 하였다. 들어가 兵部尙書가 되었으나 모친상으로 면직하였다. 다시 河中觀察使에 제수되었다. 하중은 이전에 節制였는데, 皇甫鏞이 이강을 미워하여 그 은혜를 낮춘 것으로 논자들이 바르지 않다고 여겼다. 황보박이 죄를 얻으니 다시 兵部로 소환되었다. 御史大夫로 승진하였다.

穆宗이 자주 游畋하자 이강이 그 관속[屬]을 거느리고 延英을 두드려 간절하게 간언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병으로 사직하였다가 다시 병부상서가 되고 東都留守를 역임하였으며 東川節度使로 옮겨다가 다시 留守가 되었다. [敬宗] 寶曆 연간(825~827) 초에 尙書左僕射에 임명되었다. 이강은 장대한 용모[儀質]를 가졌고 강직한 길로 나아가고 물러났다. 위망이 당대에 최고였고 賢·不肖를 지나치게 나누었으므로 자주 모함에 빠졌다. 御史中丞 王璠이 이강을 길에서 만났는데, 피하지 않았다. 이강이 故事를 들어 論列하였으나 재상 李逢吉이 왕변 편을 들어 이강을 太子少師로 좌천시키고 東都에서 分司하게 하였다.

文宗이 즉위하여 불러 太常卿으로 삼았다가 檢校司空으로 山南西道節度使에 임명하고 趙郡公으로 累封하였다. 4년 南蠻이 蜀道를 침략하

자 이강에게 조서를 내려 병사 1천 인을 모집하여 달려가게 하였다. 반쯤 갔을 때 蠻이 떠났기 때문에 병사들이 돌아왔다. 監軍使 楊叔元이 평소 이강을 싫어하였는데, 사람을 보내 병사들을 맞이하여 말하길 “장차 [조정에서] 모집 비용을 회수하고 너희들을 백성으로 되돌릴 것이다”라고 하였다. 병사들이 모두 화를 내고 이에 시끄럽게 떠들면서 들어가 창고의 무기를 겁탈하였다. 이강은 바야흐로 연회 중에 있으면서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 부절을 들고 성가퀴에 올라갔다. 흑자가 성에 줄을 매달면 가히 피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강이 듣지 않았다. 牙將 王景延이 힘을 다해 싸우다 죽고 이강도 마침내 해를 입으니 나이가 67세였다. 幕府의 趙存約·薛齊도 모두 죽었다. 사건이 조정에 보고되자 諫官 崔戎 등이 이강의 억울함을 진술하였다. 司徒로 冊贈하며 시호를 貞이라고 하고 賻禮를 매우 후하게 하였다. 王景延 역시 官을 추증하고 아들 한 명에게 관직[祿]을 주었다. [宣宗] 大中 연간 초에 史官에게 조서를 내려 元和將相을 배열하고 凌煙閣에 도상을 그리게 하였는데, 이강이 그 안에 있었으며 홀로 [도상을] 궁중에 두게 하였다.

이강이 論事한 것이 1만여言인데, 생질 夏侯孜가 그것을 蔣偕에게 주니 七篇으로 편집하였다.

7. 『구당서』 권151, 高崇文傳⁶⁶⁾

고승문⁶⁷⁾은 그 선조가 渤海人⁶⁸⁾이고, 고승문은 [현종 天寶 5년(746년)]⁶⁹⁾ 幽州에서 태어났다. 순박하고 마음이 두텁고[朴厚] 말수가 적었

66) 『구당서』 권151, 고승문전, 中華書局, 4051~4054쪽.

으며 젊어서 平盧軍에 들어갔다.⁷⁰⁾ [德宗] 貞元 연간에 韓全義⁷¹⁾를 따라 長武城⁷²⁾에 주둔하였는데, 군대를 잘 다스려 명성을 얻었다. [정원] 5년(789) 여름⁷³⁾ 吐蕃 3만이 寧州를 침략하자, 고승문이 병사[甲士] 3천을 이끌고 구원하였다. 佛堂原에서 싸워 대파하였는데, 죽인 자가 반을 넘었다. 한전위가 입조하자 고승문이 行營節度留務⁷⁴⁾를 맡고 兼御史大夫가 되었다. [정원] 14년(798) [윤5월 한전위가 夏綏銀宥節度에 임명되자]⁷⁵⁾ 長武城使가 되어 곡식을 저장하고 병사들을 훈련시키니 군대의 명성이 크게 떨쳤다.

-
- 67) 『文苑英華』 892, 碑49, 神道10, 王爵3, 「南平郡王高崇文神道碑」(韋貫之), 中華書局, 4696~4698쪽; 『全唐文』 권531, 韋貫之, 「南平郡王高崇文神道碑」(韋貫之), 中華書局, 6290~5393쪽; 『全唐文新編』 9, 韋貫之, 「南平郡王高崇文神道碑」, 吉林文史出版社, 6171~6174쪽.
- 68) 『구당서』 권162, 高瑀傳, “渤海靺鞨”(4250쪽); 『구당서』 권168, 封敖傳, “其先渤海靺鞨”(4392쪽)이라는 용례도 보인다. 지배선, 『고구려 유민의 나라 제와 당, 그리고 신라·발해·일본 교류사』, 409~413쪽, 426쪽에서는 고승문을 고구려 유민으로 본다. 고승문의 출자에 관해서는 김육불 편저, 『신편 발해국지장편』 하, 신서원, 2008, 226~228쪽 등 참조.
- 69) 이 열전 마지막 부분에서 고승문이 원화 4년(809) 64세로 죽었다고 한 것에서 환산한 것이다.
- 70) 『北夢瑣言』 권7, 高崇文相國詠雪 조, “唐高相國崇文, 本薊州將校也”(中華書局 162쪽).
- 71) 앞의 『구당서』·『신당서』 두황상전도 참조.
- 72) 정병준, 「『舊唐書』·『新唐書』 李納·李師古 등 列傳 譯註」, 422쪽(『구당서』 권121, 이회광전 역주) 참조.
- 73) 『신당서』 권7, 현종본기, 정원 5년 여름(夏) 조, “吐蕃寇長武城, 韓全義敗之于佛堂原”(196쪽).
- 74) 留務는 임시 책임자인 留後의 업무를 말한다.
- 75) 『자치통감』 권235, 정원 14년 윤5월 조, “以神策行營節度使韓全義爲夏·綏·銀·宥節度使. 全義時屯長武城, 詔帥其衆赴鎮”(7590쪽). 정병준, 「『舊唐書』·『新唐書』 吳少誠·吳少陽 등 列傳 譯註」, 『동국사학』 60, 2016, 317쪽(『구당서』 한전의 전) 참조.

[憲宗] 永貞 원년(805) 겨울 [11월]⁷⁶⁾ 劉關이 반역[阻兵]하자 [元和 원년(806) 정월] 조정에서 토벌을 의논하였는데, 재상 杜黃裳이 고승문에 게 전적으로 맡기면 공을 이룰 것이라고 하였다. 원화 원년 봄 [정월] 檢校工部尙書·兼御史大夫·充左神策行營節度使에 배수되고 아울러 左右神策의 奉天·麟遊 諸鎮兵을 통할하여 유벽 토벌에 나섰다.⁷⁷⁾ 당시 專征한 경험이 있는 宿將이 매우 많아 사람들이 모두 자신이 선임될 것으로 여겼는데, 조서가 나오자 크게 놀랐다. 고승문이 長武城에서 병사 5천을 훈련시킬 때 항상 도적[寇]이 실제로 이른 것처럼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中使가 長武에 당도하여 卯時(오전 5시~7시)에 宣命하니 辰時(오전 7시~9시)에 군사 5천을 출발시켰는데, 器用(즉 무기와 장비)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었다. 군대가 興元[府]⁷⁸⁾에 도달하였을 때 軍中에서 어떤 자가 객사[逆旅]의 수저[匕箸]를 부러뜨리자 참수하여 널리 보였다. 서쪽으로 가

76) 『자치통감』 권236, 영정 원년 6월 조, 7616~7617쪽; 同, 8월 조, “…… 支度副使劉關自爲留後。…… 劉關使諸將表求節鉞, 朝廷不許, 己未, 以袁滋爲劍南東·西川·山南西道安撫大使”(7620쪽); 同, 10월 조, “以中書侍郎·同平章事袁滋同平章事·充西川節度使, 徵劉關爲給事中”(7622쪽); 同, 11월 조, “劉關不受徵, 阻兵自守, 袁滋畏其強, 不敢進。上怒, 貶滋爲吉州刺史”(7623쪽); 同, 12월 조, “以給事中劉關爲西川節度副使·知節度事。……”(7623~7624쪽); 『구당서』 권14, 현종 본기상, 영정 원년 10월 조, “以宰臣劍南安撫使袁滋檢校吏部尙書·同中書門下平章事·成都尹·劍南西川節度·觀察等使, 以西川行軍司馬劉關爲給事中。…… (12월)以新除給事中·西川行軍司馬劉關爲成都尹·劍南西川節度使”(412쪽) 등.

77) 『구당서』 권14, 현종 본기상, 원화 원년 정월 조, “以左神策長武城·防秋都知兵馬使高崇文檢校工部尙書·充神策行營節度使以討劉關”(414쪽); 『신당서』 권7, 현종 본기, 원화 원년 정월 조, “癸未, 長武城使高崇文爲左神策行營節度使, 率左右神策京西行營兵馬使李元奕·山南西道節度使嚴礪·劍南東川節度使李康以討劉關。甲申, 太上皇崩。劉關陷梓州, 執李康”(208쪽); 『자치통감』 권237, 원화 원년 정월 조, “劉關旣得旌節, 志益驕, 求兼領三川, 上不許。關遂發兵圍東川節度使李康於梓州, …… 戊子, 命左神策行營節度使高崇文將步騎五千爲前軍, …… 同討關。……”(7626~7627쪽).

78) 『신당서』 권40, 지리지4, 山南道, 興元府·漢中郡 조, 1034쪽.

서 [閬州] 閬中[縣]⁷⁹⁾에서 진입하여 드디어 [劍州] 劍門[縣]⁸⁰⁾의 군사를 물리치고 [劍州] 梓潼[縣]⁸¹⁾의 포위를 풀자 賊將인 邢泚가 달아났다. 군대를 梓州⁸²⁾에 주둔시키자 고승문을 東川節度使에 배수하였다. 이에 앞서 유벽이 東川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절도사 李康을 사로잡았는데, 고승문이 梓州를 함락시키자 이강을 돌려보내면서 자신의 죄를 씻기를 구하였다. 하지만 고승문은 이강이 패하여 지키지 못한 것을 들어 마침내 참수하였다.

成都 북쪽 150리 지점에 [漢州] 鹿頭山⁸³⁾이 있는데, 兩川의 요충에 해당하였다. 유벽이 성을 쌓아 지키고 또 8柵을 연결시켜 掎角의 형세를 펼쳐 王師에 저항하였다. [원화 원년 6월]⁸⁴⁾ 이날 賊 2만을 녹두산 아래에서 격파하였으나 큰 비가 붓듯이 내려 능히 오르지 못하고 중지하였다. 다음날 또 萬勝堆에서 격파하였다. 堆는 鹿頭의 동쪽에 있었는데, 驍將 高霞寓에게 친히 북을 치게 하고 병사들에게 등반하여 오르게 하니 矢石이 비오는 듯하였다. 또 죽음을 각오한 병사들에게 명해 연이어 오르게 하여 그 堆를 빼앗아 그 柵을 불태우니 책 안의 賊이 섬멸되었다. 마침내 堆를 점거하여 녹두성을 아래로 바라보니 성안의 사람과 물체를 셀 수 있었다. 무릇 8차례 크게 싸워 모두 크게 이기니 賊이 동요하였다.

[원화 원년] 8월 阿跌光顏이 고승문과 합류하기로 하였으나 行營에

79) 『신당서』 권40, 지리지4, 山南道, 閬州·閬中郡 조, 1038쪽.

80) 『신당서』 권42, 지리지6, 劍南道, 劍州·普安郡 조, 1090쪽.

81) 『신당서』 권42, 劍南道, 劍州·普安郡 조, 1090쪽.

82) 『신당서』 권42, 劍南道, 梓州·梓東郡 조, 1088쪽.

83) 『太平寰宇記』 권73, 漢州 德陽縣 조, “鹿頭山, 自綿州羅江縣界進入縣界. 古老云昔有張鹿頭於此造宅, 因以爲名”(中華書局, 1492쪽). 덕양현에 관해서는 『구당서』 권41, 지리지4, 劍南道, 漢州 조, 1666쪽 참조.

84) 『자치통감』 권237, 원화 원년 6월 조, “(5월)劉關城鹿頭關, 連八柵, 屯兵萬餘人以拒高崇文. 六月, 丁酉, 崇文擊敗之. 關置柵於關東萬勝堆. 戊戌, 崇文遣驍將范陽高霞寓攻奪之, 下瞰關城, 凡八戰皆捷”(7633쪽).

하루 늦게 도착하자 주살될 것이 두려워서 깊숙이 진입하여 스스로 속죄하고자 하여 鹿頭 서쪽의 大河 입구에 주둔하여 賊의 糧道를 끊으니 적이 크게 놀랐다. 이날 적의 綿江柵將 李文悅이 3천을 거느리고 歸順하고 곧 이어 鹿頭將 仇良輔가 성을 들어 병사 2만과 함께 투항하였다.

유벽의 아들 [劉]方叔과 子壻 蘇強이 앞서 구량보의 軍을 監하였는데, 이날 械繫되어 京師로 보내졌고 투항한 병사가 무기를 버리고 두 손을 묶은 것[面縛]이 십 수 리에 이르니 마침내 長驅하여 곧바로 成都로 향하였다. 德陽 등 縣城에 모두 重兵이 주둔하였으나 모두 깃발을 보고 투항하였으므로 군대가 지체하지 않고 갔다. 유벽이 크게 두려워서 親兵과 逆黨 盧文若과 함께 重寶를 가지고 吐蕃으로 西走하였다. 토번은 평소 그 뇌물을 받았으므로 장차 그를 받아들이고자 하였다. 고승문이 高霞寓·鄺定進을 보내 두 배나 빠른 속도로 추격하게 하니 羊灌田에 이르러 따라잡았다. 유벽은 스스로 岷江에 몸을 던졌으나 치솟는 소용돌이에서 사로잡혔다. 西蜀이 평정되자 유벽을 우리에게 넣어 京師로 보내 처단하게 하였다. 노문약은 물에 뛰어들어 죽었다. 王師가 성도에 들어갔으나 병사가 큰길에 주둔하고 軍令이 엄숙하였기 때문에 珍寶가 산적하였으나 市井이 평소와 같았고 추호도 범하는 것이 없었다.

이에 앞서 賊將 형제가 병사 2만을 거느리고 鹿頭를 구원하다가 항복한 후 다시 배반하였으므로 참수하여 두루 보였다. 衣冠으로 반역에 함몰된 자가 모두 衙門에 포복하며 命을 청하였는데, 고승문이 條奏하여 모두 살려주었다. 제서를 내려 고승문을 檢校司空·兼成都尹·充劍南西川節度·管内度支營田·觀察處置·統押近界諸蠻西山八國·雲南安撫等使에 제수하였다. 南平郡王·食實封300호로 改封하고 조서를 내려 녹두산 아래에 刻石하여 공적을 기록하게 하였다.

고승문은 文字를 알지 못해⁸⁵⁾ 大府 案牘의 謄寫이 번거로운 것을 싫어하고 또 [성도가] 優富의 땅이어서 힘쓸 바가 없었으므로 변새로 가서

변경 수자리에 임하기를 청하는 간절한 疏를 여러 차례 올렸다.⁸⁶⁾ [원화 2년(807) 겨울 [12월] 제서를 내려 同中書門下平章事·邠州刺史·邠寧慶三州節度·觀察等使를 더해주고 아울러 京西都統에 충임하였다.⁸⁷⁾ 그 공을 믿고 사치스러운 마음이 크게 생겨 帑藏의 재부와 百工의 기교를 모두 가지고 가니 蜀都가 모두 비었다. 朝儀를 익히지 않아 入覲을 꺼려하자 優詔를 내려 便道로 번진으로 가게 하였다. 3년 동안 다스리면서 戎備를 크게 손질하였다. 원화 4년(809) [9월]⁸⁸⁾ 추하니 나이가 64세였다. 3일 동안 廢朝하고 司徒로 추증하며 시호를 威武라고 하고 憲宗廟庭에 配享하였다.⁸⁹⁾

[고송문의] 아들 [高]承簡⁹⁰⁾ 은 젊어서 忠武軍 部將이 되었고 후에 신

85) 『北夢瑣言』 권7, 高崇文相國詠雪 조, 162~163쪽에는 고송문이 시를 지었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86) 『자치통감』 권237, 원화 2년 10월 조, “高崇文在蜀期年, 一旦謂監軍曰, ‘崇文, 河朔一卒, [호삼성 주: 高崇文本幽州人] 幸有功, 致位至此. 西川乃宰相回翔之地, 崇文叨居日久, 豈敢自安!’ 屢上表稱‘蜀中安逸, 無所陳力, 願效死邊陲’, 上擇可以代崇文者而難其人. 丁卯, 以門下侍郎·同平章事武元衡同平章事·充西川節度使”(7641쪽).

87) 『자치통감』 권238, 원화 2년 12월 조, “丙寅, 以高崇文同平章事·充邠寧節度·京西諸軍都統. [호삼성 주: 新志曰, 天寶末, 置天下兵馬元帥, 都統朔方·河東·河北·平盧節度使. 都統之名始於此]”(7646~7647쪽); 『唐會要』 권78, 都統, 원화 4년 9월 조, “以邠寧慶三州節度高崇文充南京都統”(上海古籍出版社, 1685쪽).

88) 『文苑英華』 권892, 碑49, 神道10, 王爵3, 「南平郡王高崇文神道碑」(韋貫之, 中華書局, 4697쪽; 『구당서』 권14, 헌종본기상, 원화 4년 9월 조, “丁卯(24일), 邠寧節度使·檢校司空·同平章事高崇文卒”(428쪽).

89) 『구당서』 권18하, 宣宗本紀, 會昌 6년(846) 10월 조, “敕, ‘太廟祫享, 合以功臣配. 其憲宗廟, 以裴度·杜黃裳·李愬·高崇文等配享’”(615쪽).

90) 『전당문』 권724, 崔郾, 「唐義成軍節度·鄭滑潁等州觀察處置等使·金紫光祿大夫·檢校尚書右僕射·使持節·滑州諸軍事·兼滑州刺史·御史大夫·上柱國·襲封密國公·食邑三千戶高德政碑并序」, “公渤海人也. 曾祖夔, … 大父行暉, … 烈考崇文, …”(7448쪽). 王蕾, 「唐代渤海高氏家族研究」, 陝西師範大學 碩士

책군에 소속되었다. 부친이 유벽을 토벌한 공으로 嘉王의 傅에 배수되었다. 裴度が 淮蔡를 토벌할 때 상주하여 고승간을 本官으로 御史大夫를 겸하게 하여 그 軍의 都押衙로 삼았다. 淮西가 평정되자 조서를 내려 鄆城·上蔡·遂平 3현을 澗州로 삼아 鄆城에 치소를 두고 고승간을 자사로 삼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邢州刺史가 되었는데, 觀察使가 時賦가 급하다고 다그치자 고승간이 수백 호를 대신하여 그 租를 냈다.

宋州刺史로 옮겼는데, 때마침 汴州가 그 번수를 축출하고 部將 李齊에게 번수의 일을 행하게 하였다. 이개가 그 장수를 보내 宋의 官私 재물을 요구하자 고승간이 잡아 가두었다. 이로부터 汴의 使가 오면 바로 가두어두고 어느 날 모두 내어 軍門 밖에서 참하니 권위가 주[郡] 안에 떨쳤다. 이개의 병사가 대거 이르러 宋州의 세 성 가운데 남쪽 성을 함락하였다. 고승간이 북쪽의 두 성을 지키며 저항하여 모두 십여 차례 전투가 벌어졌다. 그때 徐州의 구원병이 이르자 汴의 장수인 李質이 이개를 잡아 京師로 傳送하였으며 송주를 포위한 병사들은 바로 달아났다. 고승간에게 檢校左散騎常侍·兗海沂密等州節度·觀察處置等使를 제수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檢校工部尙書·義成軍節度·鄭滑潁等州觀察處置等使로 옮겼다. 檢校尙書右僕射가 더해졌다. 조정으로 들어가 右金吾衛大將軍에 배수되고 右街使에 충임되었다. 다시 나가 邠寧慶等州節度·觀察處置等使가 되었다. 이에 앞서 羌虜가 秋月에 西邊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고승간이 寧州에 병사를 주둔시키길 청하여 이에 대비하였다. 질병으로 인해 上言하여 入覲을 청하고 바로 表를 따라 궁궐로 갔다. [文宗] 大和 원년(827) 8월 [빈주] 永壽縣⁹¹⁾ 傳舍에 이르러 졸하였다. 司空으로 추증하였다.

學位論文, 2007, 26쪽 등 참조.

91) 『구당서』 권38, 지리지1, 關內道, 邠州 조, 1404쪽.

고승문의 손자 [高]駢은 지위가 崇顯하였는데, 淮南節度使로 마쳤다. 따로 열전이 있다.

8. 『신당서』 권170, 高崇文傳⁹²⁾

고승문은 字가 崇文이다. 그 선조가 渤海에서 幽州로 이주하여 7世 동안 분가하지[異居] 않았기 때문에 [玄宗] 개원 연간에 두 차례 그 문[閭]에 표창을 내렸다[表].⁹³⁾ 고승문은 성격이 질박하고 무게가 있으며 말이 적었는데, 젊었을 때 平盧軍에 소속되었다. [德宗] 貞元 연간에 韓全義⁹⁴⁾를 따라 長武城에 주둔하며⁹⁵⁾ 군대를 잘 다스리는 것으로 명성을 얻었다. 승진하여 金吾將軍이 되었다. 吐蕃의 3만이 寧州를 침략하였을 때 고승문이 병사 3천을 이끌고 구원하러 가서 佛堂原에서 싸워 대파하여 渤海郡王에 봉해졌다. 한전의가 입조하자 留知行營節度後務가 되고 長武城都知兵馬使로 승진하였다.

劉關이 反하자 재상 杜黃裳이 그 재능을 천거하니 조서를 내려 檢校工部尙書·左神策行營節度使로 삼아 左右神策과 麟遊·奉天의 諸屯兵을 통솔하여 유벽을 토벌하게 하였다. 당시 많은 공을 세운 宿將들은 자기가 마땅히 선발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조서가 내려오자 모두 크게 놀랐다. 앞서 고승문은 병사 5천을 뽑아 평상시 적군이 이르는 것처럼 대비하였으

92) 『신당서』 권170, 고승문전, 中華書局, 5161~5163쪽.

93) 『구당서』 고태우전 역주의 머리말 부분을 비교 참조.

94) 『구당서』 권162, 한전의전, 4247~4249쪽 ; 『신당서』 권141, 한전의전, 4659~4660쪽.

95) 『구당서』 권162, 高霞寓傳, “貞元中, 徒步造長武城使高崇文, 待以猶子之分, 擢授軍職, 累奏憲宗, 甚見委信”(4249쪽).

므로 이때에 이르러 묘시(오전 5~7시)에 명을 받고 진시(오전 7~9시)에 군대를 출발시켰는데, 기물이 양호하고 기계가 완비되어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다. 興元[府]을 지날 때 군졸 가운데 객사의 수저를 부러뜨린 자가 있자 즉시 참수하여 널리 보였다. 서쪽의 閬中에서 출발하여 劍門의 병사를 물리치고 梓潼의 포위를 풀게 하자 賊將 邢泚는 물러나 梓州를 지켰다. 조서를 내려 고승문을 東川節度使로 삼았다. 앞서 유벽이 東川을 함락시키고 절도사 李康을 사로잡고 죽이지 않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이강을 돌려보내며 잘못을 씻길 청하였다. 고승문은 이강이 지키지 못한 죄를 물어 참살하였다. 鹿頭山은 남쪽으로 成都와 150리 떨어져 있고 兩川의 요충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유벽이 성을 쌓고 옆으로 8屯과 이어지게 하여 동쪽에서 오는 군대를 막게 하였다. 고승문이 비로소 賊 2만을 성 아래에서 격파하였으나 마침 비가 내려 성을 공략하지 못하였다. 다음날 萬勝堆에서 싸웠는데, 堆는 鹿頭의 바로 동쪽이었다. [고승문이] 驍將 高霞寓에게 북을 치게 하여 나아가게 하니 사졸들이 기어 올라갔다. 화살과 돌이 비처럼 쏟아졌으나 죽음을 각오한 사졸을 모집하여 분전하게 하여 마침내 점령하였다. 지키는 병사를 모두 죽이고 그 성채를 불태운 후 아래로 鹿頭城을 바라보니 사람들의 머리 숫자를 셀 수 있을 정도였다. 무릇 여덟 번 싸워 모두 이기자 賊의 마음이 비로소 흔들렸다. 大將 阿跌光顏은 고승문과 약속한 후 기일을 어기자 죄가 두려워서 깊숙이 들어가 스스로 속죄하길 청하고 이에 녹두 서쪽에 군대를 주둔시켜 賊의 糧道를 단절하였다. 적은 크게 두려워서 그 장수 李文悅이 병사 3천을 이끌고 귀순하고 仇良輔는 녹두성의 2만 병사를 이끌고 투항하였으며 유벽의 아들 [劉]方叔과 사위 蘇彊을 사로잡았다. 마침내 成都로 달려가니 나머지 병사는 모두 두 손을 묶은 채[面縛] 항복하였다. 유벽은 도주하였으나 추포되어 경사로 압송되었다.

成都로 들어가 군대를 큰 길에 주둔시켰는데, 市井을 동요시키지 않고

珍貨가 산처럼 많았으나 조금도 범하지 않았다. 邢泚는 행복하였다가 배 반하였으므로 군대 안에서 참수하였고, 衣冠으로 험박받아 더럽혀진 자가 牙[門]에 이르러 명을 청하자 고승문이 자세히 상주하여 모두 살려주었다. 檢校司空·西川節度副大使·南平郡王·實封300호로 승진시키고 돌에 공적을 새겨 鹿頭山에 두었다.

고승문은 글을 몰랐기 때문에 案牘의 諂判을 번거롭다고 싫어하고 또 蜀이 優富하여 일거리가 없었으므로 변경을 지키는 것에 힘쓸 수 있기를 청하였다. 이에 조서를 내려 同中書門下平章事·邠寧慶節度使에 임명하고 京西諸軍都統으로 삼았다. 고승문은 공을 믿고 사치스러워서 蜀의 창고에 보관된 百工의 보물을 모두 가지고 가고 또 조정의 의례를 알지 못해 覲謁을 꺼려하자 조서를 내려 便道로 주둔지로 가게 하였다. 邠에 3년 동안 있으면서 戎備를 잘 정돈하였다.卒하니 나이가 64세였다. 司徒로 추증하고 시호를 威武라고 하였다. [武宗] 會昌 6년 조서를 내려 憲宗廟에 配享하였다.

아들 고승간은 젊어서 忠武軍에 복무하고 후에 다시 神策에 소속되었다. 축을 평정한 고승문의 공으로 嘉王傅에 제수되었다.

裴度が 蔡를 정벌할 때 奏하여 牙將으로 삼았다. 蔡가 평정되자 조서를 내려 上蔡·鄆城·遂平·西平 네 縣을 쪼개어 澗州로 만들고 고승간을 자사로 배수하였으며 鄆城에 치소를 두었다. 처음으로 屯田을 열고 堤防[防庸]을 줄지어 만들었다[列]. 澗[水]에 인접해 이어진 200리 지역에는 다시 수해가 없고 모두 기름진 밭이 되었다. 이에 앞서 賊이 武宮을 쌓아 戰勞를 자랑하였는데, 고승간이 그 언덕을 평평하게 하고 家財를 내어 [유골을] 장사지냈다. 儒宮을 짓고 俎豆를 갖추어 매년 의례를 행하였다. 들판에 당아욱(메밀) 열매가 있어 백성들이 식용으로 먹었다. 將吏가 돌을 세워 공덕을 칭송하였다. 邢州刺史로 승진하였는데, 觀察府가 급하게 부

세[賦]를 요구하자 고승간이 下戶를 대신하여 수백의 租를 냈다.

宋州로 옮겼다. 마침 宣武의 군장 李齊가 反하여 사람을 보내 宋에 재물을 요구하자 고승간이 그를 가두었다. 前後로 여러 명을 바로 獄에 넣어두었다가 어느 날 모두 내어 牙門에서 참살하니 위세가 部中에 떨쳤다. 이개가 병사를 모두 내어 공격하였다. 宋에는 세 城이 있었는데, 南城이 함락되자 고승간이 북쪽의 두 성을 지켰다. 자주 賊의 공격을 받았지만, 마침 徐州의 구원군이 이르러 이개가 李質에게 사로잡히고 병사들이 궤멸하였다. 兗海沂密節度使로 임명되었다.

義成軍·檢校尙書左僕射로 승진하였다. 조정으로 들어가 右金吾衛大將軍이 되었다가 다시 邠寧을 節度하였다. 이에 앞서 오랑캐[虜]가 자주 盛秋에 변경을 침범하였는데, 고승간이 寧州에 주둔하여 그 침략을 제어하길 청하였다. 때마침 병이 들어 조정으로 돌아오던 도중에 卒하였다. 司空으로 추증하고 시호를 敬이라고 하였다.

고승문의 손자 [高]駢은 자신의 傳이 있다.

9. 『구당서』 권162, 高霞寓傳⁹⁶⁾

范陽 사람이다. 조부 [高]仙과 부친 [高]栖鶴은 모두 효로 알려졌다. 무릇 5代가 함께 거주[同爨]하였다. 德宗 시기에 采訪使 洪經綸이 奏하여 그 마을[門閭]에 旌表를 내려주었고, 향리 사람들이 그 일을 아름답게 여겼다. 고하우는 젊어서 『左氏春秋』 및 『孫·吳兵法』을 읽었으며 大言

96) 『구당서』 권162, 고하우전, 4249~4250쪽.

을 좋아하고 자못 절개를 자부하였다. [덕종] 貞元 연간에 걸어서 長武城使 高崇文을 찾아가니 마치 아들처럼 대우해 주며 발탁하여 軍職을 제수하고 憲宗에게 여러 차례 주청하며 각별한 신임을 보였다. [헌종] 元和 연간 초에 조서를 내려 어사대부를 겸하게 하고 고승문을 따라 병사를 이끌고 劉闢을 공격하게 하니 연이어 싸워 모두 이겨 鹿頭城을 함락시키고 李文悅·仇良輔를 항복시켰다. 蜀이 평정되자 공으로 彭州刺史에 배수되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고승문을 이어 장무성사가 되고 感義郡王에 봉해졌다. 원화 5년(810) 左威衛將軍으로 吐突承璀를 따라 王承宗을 공격하였고 또 左散騎常侍가 더해졌다. 이듬해 豐州刺史·三城都團練防禦使로 전임되었고 여섯 차례 승진하여[六遷] 檢校工部尙書에 이르렀다.

원화 10년(815) 조정이 吳元濟를 토벌할 때 [10월] 고하우가 노련한 장수(宿將)라고 하여 山南東道를 두 번진으로 나누어 고하우를 唐鄧隋節度使에 임명하였다.⁹⁷⁾ 고하우는 비록 勇敢하다고 칭해졌으나 평소 機略에 어두웠고 統制하는 것은 더욱 장기가 아니었다. 번진을 통솔하게 되자 [원화 11년(816) 6월(?)] 병사를 이끌고 蕭陂로 달려가 賊과 決戰하였다. 조금 이긴 뒤 또 나아가 文城柵에 이르렀다. 賊軍이 거짓으로 후퇴하였는데, 고하우가 계속 추격하다가 복병의 엄습을 받아 王師가 크게 패하고 고하우는 간신히 몸만 빠져나갔다.⁹⁸⁾ [7월] 그 죄에 저촉되어 歸州刺史로

97) 『구당서』 권15, 헌종본기하, 원화 10년 10월 조, “始析山南東道爲兩節度, 以戶部侍郎李遜爲襄州刺史·充襄復郢均房節度使, 以右羽林將軍高霞寓爲唐州刺史·充唐隨鄧節度使”(454쪽).

98) 『구당서』 권15, 헌종본기하, 원화 11년 6월 조, “高霞寓敗于鐵城, 退保新興柵, 是日人情悚駭, 宰相奏對, 多請罷兵. 上曰, ……”(456쪽); 『자치통감』 권239, 원화 11년 6월 조, 7723쪽; 『구당서』 권145, 吳元濟傳, “(元和11年)六月, 高霞寓爲賊所擊, 敗于鐵城, 退保新興柵. 時諸軍勝負皆不實聞, 多虛稱克捷, 及霞寓敗, 中外恟恟. 宰相諫官屢以罷兵爲請, 唯裴度堅於破賊. 尋以袁滋代霞寓爲唐鄧帥, 滋柔懦不能軍”(3950~3951쪽); 『구당서』 권133, 李愬傳, “(元和11年)七月, 唐鄧節度使高霞寓戰敗”(3678쪽); 『구당서』 권170, 裴度傳, “六月, 蔡州行營唐鄧節度使高霞寓

좌천되었다.⁹⁹⁾ 뒤에 은혜의 예에 따라 右衛大將軍으로 불러들였다. [원화] 13년(818) [9월] 밖으로 나가 振武節度使가 되었다가¹⁰⁰⁾ 들어가 左衛大將軍이 되었다. [穆宗] 長慶 원년(821) [3월] 邠寧節度使에 제수되었다.¹⁰¹⁾ [장경] 3년(823) 檢校右僕射가 더해지고 [敬宗(?)]¹⁰²⁾ 장경 4년(824) 檢校司空이 더해졌다. 또 司徒가 더해졌다. [경종(?)]¹⁰³⁾ 寶曆 2년(826) 종기가 머리에 생겨 다스리는 일을 할 수 없자 조정으로 돌아가기를 청하였다. 그 해 여름 [4월] 右金吾衛大將軍·檢校司徒에 제수되었는데, 도중에 奉天에서卒하니¹⁰⁴⁾ 나이가 55세였고 太保로 추증되었다.

고하우는 병사 가운데 통상적 재질이었으나 처음에 宦官에 의해 進用되어 마침내 節將에 올랐다. 位望이 높아진 뒤 말이 많고 겸손하지 않았는데, 조정이 알고 이동 혹은 파직을 의논하려고 하니 고하우가 자못 憂恐을 느껴 私第를 내어 佛寺로 만들고 상주하여 ‘懷恩’이라는 명호를 내려 주고 황제의 福을 기도하길 청하였는데, 대체로 姦妄하고 兇狡한 것이 이와 같았다. 또 조정 官원[朝列]을 폄하하고 僚屬을 업신여겼으며 비루하고 속된 말을 사용하여 당시 매일 소문이 났다.

兵敗于鐵城，中外恟駭。……及霞寓敗，宰相以上必厭兵，欲以罷兵爲對”(4415쪽).
99) 『구당서』 권15, 현종본기하, 원화 11년 7월 조, “貶隨唐節度使高霞寓爲歸州刺史”(456쪽).

100) 『구당서』 권15, 현종본기하, 원화 13년 9월 조, “以左衛將軍高霞寓爲單于大都護·振武麟勝節度使”(464쪽).

101) 『구당서』 권16, 穆宗本紀, 장경 원년 9월 조, “以右衛大將軍高霞寓檢校工部尚書·邠州刺史·充邠寧節度使。諫官上疏論霞寓敗軍左謫，未宜拜方鎮，不從”(487쪽).

102) 이 해 정월에 목종이 죽고 敬宗이 즉위하였다.

103) 이 해 11월에 경종이 죽고 文宗이 즉위하였다.

104) 『구당서』 권17상, 敬宗本紀, 寶曆 2년 4월 조, “丙辰(19일), 右金吾衛大將軍高霞寓卒”(519쪽).

10. 『신당서』 권141, 高霞寓傳¹⁰⁵⁾

고하우는 幽州 范陽人이다. 그 선조는 5대가 분가[異居]하지 않아 孝가 里閭에 알려졌다. 德宗 초에 探訪使 洪經綸이 이를 말하자 조서를 내려 門에 정표를 세워주었다[表闕].

고하우는 『春秋』 및 兵法을 읽고 자못 마음으로 탄식하며 스스로 자부하였으나 교활[狡譎]하고 多變하였다. 長武城使 高崇文을 찾아가 만나니 고승문이 그 재주를 남다르게 여기고 軍職에 檄任하였다. 劉闢을 공격할 때 종군하여 싸우면 이겼고 鹿頭城을 공격해 함락시켜 李文悅·仇良輔 등을 항복시켰으며, 쫓아가 [彭州] 七盤城¹⁰⁶⁾에서 싸울 때 공을 세우고 [彭州] 羊灌¹⁰⁷⁾에서 유벽을 사로잡았다. 彭州刺史에 임명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승문을 대신하여 장무성사가 되고 感義郡王에 봉해졌다.

[憲宗] 元和 연간에 左威衛將軍으로서 吐突承璀를 따라 王承宗을 토벌하였다. 諸將이 대부분 패배[覆軍]하였으나 홀로 고하우가 공을 세웠다. 조서를 내려 노획한 鎧仗을 神策庫에 수장하여 그 공을 표창하였다. 토돌승최가 盧從史를 사로잡자 그 군대가 놀랐다. 이에 고하우를 보내 깨우치

105) 『신당서』 권141, 고하우전, 4661~4662쪽.

106) 『신당서』 권42, 지리지6, 劍南道, 彭州·濛陽郡 조의 原註, “有府二, 曰天水·唐興. 有威戎軍. 有羊灌田·朋笮·繩橋三守捉城. 有七盤·安遠·龍溪三城. 有當風戍. 有靜塞關”(1080쪽). 한편 『자치통감』 권226, 代宗 大曆 14년 10월 조, “范陽兵迫及於七盤, [胡三省 注: 七盤縣, 屬巴州] 又破之, 遂克維·茂二州”(7271쪽)라고 보이지만, 조금더 고증의 여지가 있다. 巴州는 山南道에 속한다(『신당서』 권40, 지리지4, 山南道, 巴州·淸化郡 조, 1037쪽).

107) 『신당서』 권158, 劉闢傳에서는 ‘羊灌田’이라고 보인다. 羊灌田에 관해서는 바로 앞 각주의 『신당서』 권42, 지리지6, 劍南道, 彭州·濛陽郡 조의 原註 참조.

게 하니 [고하우가] 깃발을 휘날리며 큰 소리로 말하길 “元惡이 사로잡혔다. 公 등은 마땅히 안심하라”고 하고 갑옷을 벗고揖하며 나아가자 무리가 마침내 안정되었고 그를 [藩]帥로 삼으려고 하였다. 고하우가 몰래[間道] 떠났다. 豐州刺史·三城都團練防禦使에 임명되었다.

吳元濟를 토벌할 때 [원화 10년(815) 10월] 山南東道를 나누어 두 鎮으로 만들면서 고하우가 宿將이라고 하여 唐鄧隋節度使로 삼아 賊의 남쪽 요충[南衝]을 막게 하였다.¹⁰⁸⁾ 고하우는 비록 사나웠으나 모락이 부족하고 統制하는 것은 더욱 잘하는 바가 아니었다. 처음에 병사를 이끌고 蕭陂로 달려가 싸워 작은 승리를 거두자 나아가 文城柵에서 賊이 거짓으로 패한 것에 속아 추격하다가 복병의 습격을 받아 마침내 대패하고 겨우 몸만 빠져나왔다.¹⁰⁹⁾ [7월] 조서를 내려 歸州刺史로 좌천시켰다. 그러자 權宦에게 후하게 뇌물을 주어 右衛大將軍으로 소환[召]되고 振武節度使에 임명되었다. 마침 吐蕃이 鹽·豐 2州를 공격하였는데, 고하우가 병사 5천을 拂雲堆에 주둔시키자 오랑캐[虜]가 철수하였다. 金河를 준설하고 소금 땅[鹵地] 수천顷을 개간하였다. 左武衛大將軍이 되고 또 邠寧을 節度하며 檢校司徒가 되었다. [敬宗(?)] 寶曆 연간(825~926)에 중기가 머리에 생겨 일을 처리할 수 없어 右金吾衛大將軍으로 소환하였는데, 길에서 추하였다. 太保로 추증하였다.

108) 『구당서』 권155, 李遜傳, “時遜代嚴綬鎮襄陽, 綬以八州兵討賊在唐州. 既而綬以無功罷兵柄, 命高霞寓代綬將兵於唐州, 其襄陽軍隸于霞寓. 軍士家口在襄州者, 遜厚撫之, 士卒多捨霞寓亡歸. 既而霞寓爲賊所敗, 乃移過于遜, 言供饋不時. 霞寓本出禁軍, 內官皆佐之. 既貶官, 中人皆言遜撓霞寓軍, 所以致敗. 上令中使至襄州聽察曲直, 奏言遜不直”(4124쪽).

109) 『구당서』 권164, 楊於陵傳, “改兵部侍郎·判度支. 時淮西用兵, 於陵用所親爲唐鄧供軍使, 節度使高霞寓以供軍有關, 移牒度支, 於陵不爲之易, 其闕如舊. 霞寓軍屢有摧敗, 詔書督責之, 乃奏以度支饋運不繼. 憲宗怒, 十一年, 貶於陵爲桂陽郡守, 量移原王傳”(4294쪽).

고하우는 지위가 높아지자 언어가 많이 불손하였다. 황제가 그 병권을 파하려고 하자 점차 스스로 근심하였고 이에 私第를 바쳐 佛祠로 삼고 ‘懷恩’이라 명명하길 청하여 황제의 의심을 불식시켰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僚屬을 업신여기고 오만한 말로 大臣을 비방하였으니 그 반복하여 스스로 자만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

11. 『구당서』 권140, 劉關傳¹¹⁰⁾

유벽이란 자는 [德宗] 貞元 연간에 進士에 급제하고 宏詞에 登科하였다. [憲宗]¹¹¹⁾ 永貞 원년(805) 8월 [계축(17일)] 韋臯가 卒하자 [支度副使]¹¹²⁾ 유벽이 스스로 西川節度留後가 되어 成都將校를 거느리고 表를 올려 節鉞을 내려주길 청하였다. 조정이 불허하고 給事中에 제수하며 바로 궁궐로 달려오게 하였으나 유벽이 조서를 받들지 않았다. 당시는 헌종이 처음 즉위하여 아무 일 없이 백성들을 쉬게 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마침내 유벽을 檢校工部尙書·充劍南西川節度使에 제수하였다. 유벽은 점점 凶悖해져 반역[不臣]의 말을 하고 三川을 都統하길 청하였으며 同幕 盧文若과 사이가 좋아 그를 東川節度使로 삼고자 마침내 병사를 내어 梓州를 포위하였다. 헌종은 군대를 일으키는 것이 어렵다고 여겼지만, 宰相 杜黃裳이 상주하여

유벽은 일개 미쳐 날뛰는[狂蹶] 書生일 따름으로 王師가 진군하면 칼날에

110) 『구당서』 권140, 유벽전, 3826~3828쪽.

111) 『자치통감』 권236, 영정 원년 8월 乙巳(9일) 조, “憲宗即位於宣政殿”(7620쪽).

112) 『자치통감』 권236, 영정 원년 8월 조, 7620쪽.

피를 묻히지 않고도 사로잡을 수 있다. 臣은 神策軍使 高崇文이 驍果하므로 가히 일을 맡길 수 있음을 아는데, 기용하면 반드시 공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였다. 황제가 며칠 후 [元和 원년(806) 정월] 바야흐로 이에 따라 고승문과 李元奕에게 神策 京西行營兵을 이끌고 연이어 출발하게 하여 嚴礪·李康과 기각지세로 서로 호응해서 토벌하게 하고 아울러 [유벽에게] 自新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¹¹³⁾

원화 원년(806) 정월 고승문이 출병하여 3월 東川을 수복하였다. 이에 [3월]¹¹⁴⁾ 조서를 내려 말하길

짐이 듣건대 皇祖 玄元皇帝(즉 老子)¹¹⁵⁾ 께서 훈계하길 “군대는 凶器이므로 부득이할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성스러운 가르침을 생각하면 항상 감복할 따름이다. 다만 文誥가 두루 미치지 않고 誠信이 널리 행해지지 않으므로 비로소 사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욕을 참아야 하지만, 짐의 이러한 마음 또한 가히 명확하다. 근래에 德宗皇帝께서 회유정책 [柔服之規]을 펼치며 걸출한 재상[宰衡]을 기용하고 우리 조정의 훌륭한 계책 [廟勝]을 내어 마침내 巴·庸을 수복하여 南詔가 入貢하게 하고 西戎의 환란을 잠재웠다. 成績이 비로소 극에 달하였으나 元臣이 喪亡하자 유벽이 이 變故를 틈 타 符節을 요구하였다. 짐은 狂命을 일삼는 것이 비록 理體에 어긋난

113) 『구당서』 권14, 헌종본기상, 원화 원년 정월 조, 414쪽; 『唐大詔令集』 권118, 招諭, 「招諭討劉闢詔」, 商務印書館, 622쪽.

114) 『구당서』 권14, 헌종본기상, 원화 원년 3월 조, “丁丑(13일) 制削奪劉闢在身官爵”(416쪽); 『唐大詔令集』 권118, 招諭, 「招諭劍南諸州詔」, “…… 其逆賊劉闢在身官爵, 宜並削除. ……”(622쪽).

115) 『구당서』 권5, 高宗本紀上, 乾封 원년 2월 조, “己未, 次亳州. 幸老君廟, 追號曰太上玄元皇帝, 創造祠堂, 其廟置令·丞各一員”(90쪽); 同 권7, 中宗本紀, 神龍 원년 2월 조, “老君依舊爲玄元皇帝”(136쪽) 등.

다고 해도 權便에 따른 것은 輯寧을 바랐기 때문이다. 끝내는 卿士의 계책과 달리 倖求의 마음을 운허하였지만, 유벽에 대한 짐의 은혜가 역시 많았던 것이다. 하지만 은혜를 알지 못하고 牛羊의 힘을 가지고 배부르면 더욱 흉악해지고 梟獍의 마음을 품으며 길들일수록 더욱 어그러진다. 士伍를 미혹시켜 梓州를 둘러싸서 핍박하고 戎臣을 유혹하여 劍路를 막는다. 군대[師徒]가 이르러 남김없이 燒劫하여 질서를 어지럽히는 죄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짐은 사람들의 司牧이 되었으므로 백성들을 어루만져야 하니 유벽의 죄와 같은 것을 감히 방치할 수 없다. 그의 官爵을 삭탈한다[可削奪在身官爵].

라고 하였다.

6월 고승문이 鹿頭關을 격파하고 [淄靑 李師古에게 檢校司徒를 더 하고] 나아가 漢州를 거두었다.¹¹⁶⁾ [윤6월 壬戌 초하루 이사가가 흥거하였다].¹¹⁷⁾ [8월 己巳(9일) (李)師道를 平盧留後·知鄆州事に 임명하였다].¹¹⁸⁾ 9월 고승문이 成都府를 거두었다.¹¹⁹⁾ 유벽이 수십 기병을 이끌고 도주하다가 물에 투신하였으나 죽지 않았다. 騎將 酈定進이 물에 들어가 유벽을 성도부 西洋灌田에서 사로잡았다. 盧文若은 먼저 자신이 그 妻子를 죽인 후 돌을 매달고 江에 투신하였기 때문에 그 시신을 찾지 못했다. 유벽은 京師로 압송[檻送]되는 동안 길에서 평소처럼 음식을 먹으며 죽지 않을 것으로 여겼다. 京西 臨臯驛에 이르렀을 때 左右神策 병사들이 맞이하여 비단으로 머리와 손발을 묶은 후 잡아끌고 들어가자 이에 [유벽이] 놀라 말하길 “어찌 이렇게 하는가!”라고 하였다. 흑자가 속여 말

116) 『구당서』 권14, 현종본기상, 원화 원년 6월 조, “丁酉, 高崇文破賊萬人於鹿頭關. 加幽州劉濟侍中, 淄靑李師古檢校司徒. 癸卯, 高崇文收漢州”(417쪽).

117) 『자치통감』 권237, 원화 원년 윤6월 조, 7634쪽.

118) 『자치통감』 권237, 원화 원년 8월 조, 7635쪽.

119) 『자치통감』 권237, 원화 원년 9월 조, 7636쪽.

하길 “國法에 따른 것이니 걱정말라”고 하였다. 이날 조서를 내려 말하길

유벽은 土族으로 태어났음에도 감히 반역의 마음을 품고 蜀人을 협박하여 王命을 거부하였다. 멋대로 狂逆을 행해 1州를 그르치게 하여 나의 백성으로 하여금 肝腦를 땅에 바르게 하였다. 賊將 崔綱 등이 함께 악을 행하며 서로 선동하여 죽음에 이르러 돌이킬 수 없게 되었으니 모두 마땅히 법에 따라 처단하여 刑典을 바로잡게 하라. 유벽의 아들 [劉]超郎 등 9인도 함께 참형에 처하라.

라고 하였다. 유벽이 京城에 들어가자 황제가 興安樓로 나와 포로[俘馘]를 받고 中使를 보내 樓 아래에서 유벽의 反狀을 힐문하였다. 유벽이 말하길 “臣은 감히 反하지 않았다. 五院 子弟가 악을 행한 것인데, 신이 능히 제어하지 못했다”라고 하였다. 다시 [중사]를 보내 힐문하여 “짐이 중사를 시켜 旌節과 官告를 보냈는데, 어찌하여 받지 않았는가?”라고 하자 유벽이 죄를 인정하였다. 太廟·郊社에 바치고 시장에서 두루 보인 뒤 그날 子城의 서남쪽 모퉁이에서 죽었다.

이전에 일찍이 유벽이 병에 걸렸을 때 문병하러 오는 자들을 보았는데, 모두 손을 땅에 짚고 거꾸로 걸어 유벽의 입으로 들어가니 유벽이 찢어서 먹었다. 다만 노문약이 이르러서는 평상처럼 하였다.¹²⁰⁾ 그리하여 노문약을 더욱 친하게 대했는데, 끝내 함께 악을 행하여 모두 멸족에 처해졌으니 기이하지 아니한가!

120) 아마도 유벽이 병에 걸려 환상을 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12. 『신당서』 권158, 劉關傳¹²¹⁾

유벽이란 자는 字가 太初이고 進士와 宏詞科에 급제하여 韋臯의 府를 보좌[佐]하고 御史中丞·支度副使로 승진하였다. 위고가 추하자 유벽이 後務를 주관하고 諸將에게 旄節을 요구하도록 사주하였다. 憲宗이 給事中을 제수하여 [조정으로] 불렀으나 조서를 받들지 않았다. 당시는 황제가 새로 즉위하였기 때문에 四方을 안정[靜鎮]시키고자 하여 檢校工部尙書·劍南西川節度使에 임명하였다. 유벽은 황제를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점점 오만[驚蹇]해져 不臣의 말을 하고 三川을 다스리기를 요구하며 자신과 친한 盧文若에게 東川을 節度시키고자 하여 병사를 내어 梓州를 취하였다. 또 術家가 五福·太一이 蜀에 모인다고 한 말에 따라 大樓를 지어 상서를 구하였다. 황제가 처음에 征討를 어렵게 여겼으나 재상 杜黃裳이 황제에게 권하길 “유벽은 망령된 書生일 따름이어서 복을 치며 [진군하면] 가히 사로잡을 수 있다”라고 하고 高崇文·李元奔 등을 천거하여 [그들에게] 神策行營兵을 이끌고 모두 서쪽으로 가게 하고 嚴礪·李康과 기각지세를 이루게 하였다.

[元和 원년(806) 정월] 조서를 내려 自新을 허락하였으나 유벽이 듣지 않았다. [3월] 고승문이 東川을 취하자 황제가 조서를 내려 [유벽의] 官을 빼앗았고, [고승문이] 나아가 鹿頭關을 격파하고 마침내 [9월] 成都를 함락시켰다. 유벽이 수십 기병을 이끌고 羊灌田에 이르러 물에 투신하였으나 죽지 못하자 騎將 龐定進이 사로잡았다. 노문약은 먼저 그 가족을 죽이고 돌을 매달아 江에 빠졌기 때문에 그 시신을 찾지 못하였다. 檻車로 유벽을 京師로 보냈는데, [유벽은] 죽지 않길 바라고 도중에 편안히 음식

121) 『신당서』 권158, 유벽전, 4938~4939쪽.

을 먹었다. 장차 도성에 이르게 되었을 때 神策이 병사로 맞이하여 그 목을 잡아매어 끌고 들어가자 놀라 말하길 “왜 이렇게 하는가?”라고 하였다. 황제가 興安樓로 나와 포로를 받고 조서를 내려 反狀을 힐문하였다. 유벽이 말하길 “신은 감히 反하지 않았다. 五院 子弟가 악을 행하였는데, 능히 제어하지 못했다”라고 하였다. 조서를 내려 묻길 “사신을 보내 부절[節]을 하사하였는데, 왜 받지 않았는가?”라고 하자 죄를 인정하였다. 廟社에 헌상하고 시장에서 두루 보인 뒤 城 서남의 獨柳 아래에서 참수하였다. 아들 [劉]超郎 등 9인과 部將 崔綱도 차례로 주살되었다.

이전에 유벽이 일찍이 병에 걸렸을 때 문병자들을 보니 모두 손으로 짚고 가서 그 입으로 들어갔으므로 유벽이 바로 찢어서 먹었다. 다만 盧文若이 이르러서는 평상시와 같았으므로 점점 그와 친해졌지만, 모두 멸족되었다.

13. 『구당서』 권112, 李錡傳¹²²⁾

[李國貞의] 아들 [이]기는 부친의 蔭으로 [입사하여 德宗] 貞元 연간에 湖·杭 2주 자사로 승진하였다. 많은 寶貨를 李齊運에게 뇌물로 주어 潤州刺史·兼鹽鐵使로 승진하여 積財를 가지고 進奉하여 恩澤을 구하니 덕종이 매우 총애하였다. 이기가 은총을 믿고 교만·방자하자 浙西人 布衣 崔善貞이 궁궐로 가서 상주[上封]하여 이기의 죄상을 말하였으나 덕

122) 『구당서』 권112, 이기전, 3341~3342쪽. 이기와 관련된 연구로는 谷川道雄, 『唐代之藩鎮について -浙西の場合』, 『谷川道雄中國史論集』 下卷, 汲古書院, 2017(원래는 1952년); 李碧妍, 『危機與重構 -唐帝國及其地方諸侯』,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15, 489~520쪽 등 참조.

중이 형틀에 채워 이기에게 보냈다. 이기가 마침내 최선정을 구덩이에 묻어 죽이자 천하 사람들이 이를 갈았다. 이에 兵額을 늘려 弓矢에 능한 자를 뽑아 1營으로 만들어 ‘挽硬隨身’이라 부르고, 또 구불구불한 수염을 가진 胡·奚 雜類로 1將을 만들어 ‘蕃落健兒’라고 불렀다. 덕종이 潤州에 다시 鎮海軍을 설치하고 이기를 절도사로 삼으면서 그 鹽鐵使 직무를 그만두게 하였다. 이기는 비록 그 利權을 파직하였으나 절도사가 되었고 反狀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憲宗이 즉위한 지 2년이 되었을 때 諸道の 강경(倔彊)한 자가 入朝하자 이기가 스스로 불안하여 입조를 청하였고 이에 이기를 左僕射에 임명하였다. 이기는 이에 判官 王澹을 留後로 삼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출발을 미루었으므로 왕담과 中使가 자주 말하자 [이기가] 불만을 품고 마침내 將士들을 사주하여 冬衣를 지급하는 날에 왕담을 살해하여 먹게 하였다. 監軍使가 변란을 듣고 衙將 趙琦를 보내 慰諭하자 또 저며서 먹었다. 또 병기를 中使의 목에 겨누자 이기가 거짓으로 놀라는 척하며 구해 주고 別館에 가두었다. 마침내 병사를 일으키면서 실내에 보관해 둔 五劍을 관내 鎮將들에게 나누어 주며 刺史들을 죽이게 하였다. 이때 常州刺史 顏防이 客 李雲의 모책을 채용하여 황제의 제서라고 속이고 蘇·杭·湖·睦 등 州에 격문(檄)을 보내 마침내 그 진장 李深을 죽였고, 湖州의 辛秘 역시 그 진장 趙惟忠을 죽였다. 하지만 蘇州刺史 李素는 鎮將 姚志安에게 잡혀 船舷에 결박되어[鎗] 산채로 이기에게 보내졌는데, 아직 이르기 전에 이기가 패했기 때문에 죽음을 면하였다.

이전에 이기는 宣州가 富饒하기 때문에 并呑할 마음을 가지고 兵馬使 張子良·李奉仙·田少卿을 보내 병사 3천을 거느리고 宣·池 등 주를 나누어 공략하게 하였다. 세 장수는 이전부터 귀순(向順)의 마음이 있었고 이기의 생질(甥) 裴行立도 귀순하려고 하였다. 그들의 密謀는 대부분 배행립에 의해 결정되었고 이에 창을 돌려 城으로 달려가 이기를 군막(幕)

에서 사로잡아 매달아 끌어냈다. 궁궐 아래에서 참수하였는데, 나이가 67세였다. 그 ‘挽硬’과 ‘蕃落’의 將士는 우물에 투신하거나 스스로 목을 매어 분분하게 죽은 자가 모두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재상 鄭綱 등이 이기와 연좌[坐]된 자를 논의할 때 [친척의] 親疏를 명확하게 정하지 못하였다. 이에 兵部郎中 蔣武를 불러 물어 말하길 “조서를 내려 이기 친척에게 죄를 준다면 마땅히 大功[親] 이내여야 하는가?”라고 하자 장무가 말하길 “대공친은 이기의 堂兄弟이므로 淮安王 [李]神通 이하 자손이 해당한다. 淮安은 국가에 큰 공을 세웠으니 후손으로 인해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또 묻길 “이기의 親兄弟는 연좌되는가?”라고 하자 장무가 말하길 “이기의 친형제는 [李]若幽의 아들들인데, 이약유는 王事로 죽은 공이 있다. 만약 이기의 형제가 연좌된다면 이약유는 마땅히 削籍되어야 하는데, 역시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였다. 재상이 자못 옳다고 여겼고 그에 따라 이기를 주살하는 조서가 내려질 때 단지 元惡 1인에 그쳤다.

14. 『신당서』 권224상, 李錡傳¹²³⁾

이기는 淄川王 [李]孝同의 5세손이다. 부친 [李]國貞의 蔭으로 鳳翔府參軍에 임명[調]되었다. 貞元 초에 宗正少卿으로 승진하였다. 일찍이 [宗正]卿 李幹과 爭議하였는데, 이기가 곧으면서도 죄에 저촉되지 않았으므로 德宗이 두 사람을 추궁하지 않았다. 雅王傳에서 나가 杭·湖 2주 자사가 되었다. 그때 李齊運이 권력을 잡자[用事] 이기가 뇌물로 그의 환심

123) 『신당서』 권224상, 叛臣上, 이기전, 6381~6384쪽.

을 샀고 3년 후 潤州刺史·浙西觀察·諸道鹽鐵轉運使로 승진하였다. 奇寶를 많이 모아 매년 奉獻하였으므로 덕종이 좋아하였다. 이기는 은총을 믿고 교만해져 천하의 술 전매[擢酒]와 조운을 마음대로 하면서 권력을 가진 조정 대신에게 이익으로 관계를 맺고 나머지는 모두 그 자신이 차지하였으므로 國計가 날이 갈수록 소모되었다. 浙西의 布衣 崔善貞이 궁궐 아래에서 上書하여 그 죄를 폭로하자 황제가 형틀에 채워 이기에게 보냈다. 이기가 미리 큰 구덩이를 파놓고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형틀과 함께 구덩이에 묻으니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를 갈았다.

이기는 뜻대로 되자 꺼리는 바 없이 오랫동안 안전한 계책을 도모하여 더욱 병사를 모으고 활을 잘 쓰는 자들을 뽑아 1屯으로 하여 '挽硬隨身'이라고 부르고 구불구불한 수염을 가진 胡·奚 雜類로 1將을 만들어 '蕃落健兒'라고 부르며 모두 자신의 복심으로 삼아 녹미[稟]를 10배나 주고 자신을 假父라고 부르게 하였으므로 즐겁게 섬겼다. 황제가 이에 鎮海軍을 다시 설치하여 이기를 절도사로 삼고 鹽鐵轉運을 파직시켰다. 이기는 부절을 얻은 것을 기뻐하며 그 권한이 없어진 것을 망각하고 갈수록 난폭하고 오만해져 屬吏가 잘못도 없이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또 良家 [부녀자]를 핍박하여 더럽혔는데, 寮佐가 힘써 간언해도 소용이 없었으므로 황급히 도망갔다.

憲宗이 즉위하여 方鎮을 假借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경[偏彊]한 자가 점점 입조하였다. 이기가 스스로 불안하여 역시 세 번이나 [入]覲하기를 청하였다. 조서를 내려 尙書左僕射에 배수하고 御史大夫 李元素에게 이기를 대신하게 하였다. 中使가 驛으로 달려가 勞問하며 그 군대를 위로하였다. 이기가 判官 王澹을 留後에 임명하였다. 이기는 입조할 마음이 없었으므로 병을 핑계로 미루며 떠나지 않았다. 왕담과 中使가 자주 재촉하니 이기가 불쾌하게 여기고 왕담이 일을 처리하면서 變更하는 틈을 타 親兵을 사주하여 왕담을 도모하게 하였다. 冬服을 지급할 때 이기가 幄中에

앞아있으면서 挽硬·蕃落에게 자신을 호위하게 하였다. 왕담과 중사가 入謁하고 나가자 병사들이 칼을 들고 업신여기고 욕하며 왕담을 죽여서 먹었다. 監軍使가 牙將 趙琦를 보내 위로하며 깨닫게 하자 또 그를 먹었다. 무기로 중사의 목을 겨누자 이기가 겉으로 놀라는 척 하면서 말리며 풀어 주고 別館에 가두었다. 蕃落兵은 薛頡이 통솔하고, 挽硬兵은 李鈞이 통솔하였다. 또 公孫玠·韓運에게 나머지 군사를 나누어 관장하게 하였다. 실내에 보관해 둔 五劍을 관내 鎭將에게 주어 5주 자사를 죽이게 하였다. 別將 庾伯良을 시켜 병사 3천으로 石頭城을 쌓고 江左를 점거하려고 모의하였다.

常州刺史 顏防은 그客 李雲의 모책을 채용하여 조서가 내려왔다고 속여 招討副使라고 칭하며 鎭將 李深을 죽이고 蘇·杭·湖·睦 4주에 격문을 보내 함께 이기를 토벌하였다. 湖州의 辛祕 또한 鎭將 趙惟忠을 죽였으나 蘇州의 李素는 鎭將 姚志安에게 사로잡혀 舫 위에 결박되어[釘] 이기에게 바쳐졌지만, 이기가 패하였기 때문에 죽음을 면하였다.

헌종이 淮南節度使 王鏐를 諸道行營兵馬招討處置使로 삼고 中官 薛尚衍을 都監招討宣慰使로 삼아 宣武·武寧·武昌·淮南·宣歙·江西·浙東의 병사를 동원하여 宣·杭·信 3주에서부터 進討하게 하였다. 이전에 이기는 宣州가 富饒하기 때문에 四院隨身兵馬使 張子良·李奉仙·田少卿을 보내 병사 3천을 거느리고 宣·歙·池를 공략하게 하였다. 이기의 생질 裴行立은 비록 모의에 참여하였으나 귀순하려고 하였으므로 함께 병사를 돌려 이기를 사로잡기로 약속하고 배행립은 안에서 호응하기로 하였다. 장자량 등이 출발한 뒤 저녁에 군사들에게 말하길 “僕射가 反하였기 때문에 精兵이 사방 모두에서 이르렀다. 常·湖의 鎭將은 머리가 큰길에 걸리고 형세가 위급하고 패하였다. 우리가 그냥 죽는 것은 禍를 바꾸어 복을 구하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하자 部衆이 크게 기뻐하며 마침내 머리를 돌려 城으로 달려갔다. 배행립이 불을 올리자 내외에서 함께 시끄럽게 떠

들었고 배행립이 牙門을 공격하였다. 이기가 크게 놀라자 좌우 사람들이 “城 밖에 군사가 이르렀다”라고 하자 이기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묻자 말하길 “張 中丞이다”라고 하였다. 이기가 매우 화를 내며 말하길 “門 밖의 병사는 누구인가?”라고 묻자 말하길 “裴 侍御이다”라고 하였다. 이기가 가슴을 어루만지며 말하길 “배행립도 나를 叛하였는가!”라고 하고 맨 발로 女樓 아래로 달아났다. [挽硬兵을 통솔하는] 李鈞이 병사 3백을 이끌고 庭院에서 나와 격투를 벌이자 배행립의 병사들이 그 가운데를 관통하여 이균을 참살하고 머리를 성 아래로 보냈다. 이기가 그 소식을 듣고 가족과 함께 통곡하였다. 장자량은 監軍의 명을 받들어 城中에 대해 逆順을 말하고 또 이기에게 몸을 묶어 還朝하라고 부르자 좌우 사람들이 장막 [幕]으로 매달아 끌어냈다. [앞서] 이기가 僕射로 소환되었으나 며칠 후 反狀이 전해지자 조서를 내려 官爵을 삭탈하였는데, 다음날 패하여 京師로 보내졌다. 神策兵이 長樂驛에서부터 호송하여 궁궐 아래에 이르렀다. 황제가 興安門으로 나와 죄를 물으니 대답하길 “장자량이 臣에게 反하게 한 것으로 신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말하길 “너는 宗臣으로 절도사가 되었는데, 어찌 장자량을 참수한 연후에 입조하지 않았는가?”라고 하자 이기가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날 아들 [李]師回와 함께 城 서남에서 腰斬되었는데, 나이가 67세였다. 시신은 며칠 후에 황제가 黃衣 2襲을 내려주며 庶人의 禮로 장사지내게 하였다.

장자량을 檢校工部尙書·左金吾將軍으로 발탁하고 南陽郡王에 봉하며 奉國이라는 이름을 내려주고, 전소경을 檢校左散騎常侍·左羽林將軍·代國公으로 삼고, 이봉선을 檢校右常侍·右羽林將軍·邠國公으로 삼고, 배행립을 泌州刺史로 삼았다. 왕담을 給事中으로 추증하고 조기를 和州刺史로 추증하고, 최선정을 睦州司馬로 추증하였다. 이기를 종실 [屬籍]에서 삭제하고 從弟인 宋州刺史 [李]銛과 通事舍人 [李]銑과 從子 [李]師偃을 嶺南로 流하였다.

15. 『구당서』 권132, 盧從史傳¹²⁴⁾

노종사의 선조는 元魏 이래 관직에 오른 자[冠冕]가 매우 많았다. 부친 [盧]虔은 어릴 때 고아가 되었으나 학문을 좋아하여 進士에 올라[擧] 御史府三院, 刑部郎中, 江·汝 2주 자사, 祕書監을 역임하였다.

노종사¹²⁵⁾는 젊을 때 무력을 숭상하여[矜力] 騎射를 익히고 澤·潞 지역[間]을 유력[遊]하였는데, 節度使 李長榮이 기용하여 大將으로 삼았다. 德宗 중기에 節制를 임명할 때마다 반드시 그 군인들의 마음이 향하는 자를 採訪하게 하였다. 이장영이 추하자 노종사는 軍情에 의지하고 또 中使를 잘 奉迎하여 昭義軍節度使에 제수되었다. 점차 狂恣하고 무도[不道]해져 部將의 妻妾을 빼앗고 교묘한 말로 분식하고 잘못된 이치를 강요하였다. 從事 孔戡 등이 직언을 하였으나 따르지 않자 떠났다. 전 해에 부친상을 당해 조정에서 아직 起復을 논의하지 않았을 때 마침 [元和 4년(809) 3월 成德節度使] 王士眞이 추하였다.¹²⁶⁾ 노종사가 몰래 [王]承宗을 주살할 계책을 헌상하여 황제의 뜻에 영합하자 이에 起授하여 성공을 위탁하였다. [원화 4년 10월] 조서가 내려와 賊을 토벌하게 하자¹²⁷⁾ 병사를 내었으나 [원화 5년(810) 3월] 머물며 나아가지 않고 음으로 왕승종과 通謀하며 군사들에게 적의 신호를 암기하게 하였다. 또한 그 마초·식량[芻粟]의 가격을 비싸게 하여 度支에 팔고 년지시 조정에게 재상 [지위]를 구

124) 『구당서』 권132, 노종사전, 3652~3654쪽.

125) 森部豊, 『ソグド人の東方活動と東ユーラシア世界の歴史的展開』, 關西大學出版部, 2010, 273~276쪽 등 참조.

126) 『신당서』 권7, 현종본기, 원화 4년 3월 조, 210쪽; 『자치통감』 권237, 원화 4년 3월 조, 7657쪽.

127) 『구당서』 권14, 현종본기상, 원화 4년 10월 조, 428~429쪽; 『신당서』 권7, 현종본기, 원화 4년 10월 조, 211쪽; 『자치통감』 권238 원화 4년 10월 조, 7666~7667쪽.

하였고 또 諸軍이 賊과 내통한다고 誣奏하여 병사들이 나아갈 수 없었으므로 황제가 매우 근심하였다.¹²⁸⁾

護軍中尉 吐突承璀가 神策 병사를 이끌고 그와 보루를 마주하였는데, 노종사가 왕왕 그 군영으로 가서 도박을 하였다[博戲]. 노종사는 탐욕스럽고 얻는 것을 좋아하였으므로 토돌승최가 寶帶·奇玩을 내어 자랑하고 그가 아끼고 좋아하면 주었다. 노종사는 매우 기뻐하며 날마다 점점 친숙해졌다. 황제가 그 사실을 알고 裴垍의 모책¹²⁹⁾을 취해 토돌승최에게 그가 와서 도박하는 틈을 이용하게 하자 [원화 5년 4월 甲申(15일)] 擗하며 말할 때 장막[幕] 아래에 壯士를 매복시켜 두었다가 갑자기 뛰어나와 잡아채어 장막 뒤로 끌고 가 포박한 후 수레 안에 넣고 빠르게 궁궐로 달려가게 하였다. 수행자들이 놀라 어지러워지자 10여 인을 참살하였고 나머지는 영을 내리자 이에 안정되었다. 또 密詔를 선포하여 알리고 闕庭으로 追赴하게 하였다. 都將 烏重胤은 평소 忠順한 마음을 품고 있었고 이에 그 군대에 계엄을 내리자 군인들이 감히 거동하지 못하였다. 밤을 틈타 [會夜] 빨리 달려가게 하니 미명에 경역[境]을 나왔는데, 道路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다.¹³⁰⁾ 원화 5년 4월 제서를 내려 말하길

사악함으로 병사를 모으면 스스로 覆車를 초래하고 간교함으로 군주를 섬기면 마땅히 극형에 처해진다. 그러므로 楚人이 변고를 알려 韓信의 환란이 먼저 해소되었고, 蜀 땅에 징조가 보여 鍾會의 화란이 부하들에서 생겼다. 하물며 해악은 楚·蜀보다 심하고 공업은 종회·한신보다 못한데, 이러한 厲階를 꾸몄으므로 公議에 선포하였다. 사사로이 은덕을 배신할 마음을 품었기에 마땅히 嚴科에 처해야 하나 법을 굽히고 은혜를 펼쳐 寬典에 따른다. 前昭義軍

128) 『자치통감』 권238, 원화 5년 3월 조, 7673쪽.

129) 『구당서』 권148, 裴垍傳, 3991쪽; 『신당서』 권169, 裴垍傳, 5148쪽.

130) 『자치통감』 권238, 원화 5년 4월 갑신일 조, 7674쪽.

節度副大使·知節度事 노중사는裨將에서 발탁되어大藩을 다스리면서報國의 정성을 생각하지 않고 매번 徇身의 계략을 세웠다. 근래에 부친상[家禍]을 당했으나 戚容을 드러내지 않고 행동이 人倫을 저버리고 효성이 天性에 결핍되었다. 때마침 常山이 난을 일으키고 朝制가 아직 행해지지 않았을 때 군이 군대를 일으키길[興師] 청하고 구차하게 復位를 구하였다. 기한을 정해 힘을 다하고 술선하기를 청하였으며 날짜를 잡아 귀순하게 하고 홀로 승리할 것이라고 맹서하였다. [짐은 그에게] 懷撫를 나타내고 미루어 정성을 믿었다. 衆論을 물리치고 그 상복[苴麻]을 벗게 하고 마음으로 결심하여 鈇鉞을 제수하고 重任을 맡겨 專征하게 하였다. 章奏가 진술하는 바는 일에 위배되는 것이 없어 恩光을 내리고 매우 아꼈다. 그러나 그는 이익을 탐하고 간악함을 품어 政[事]를 무너뜨리고 법도를 망쳤다. 成師가 이미 출동하였음에도 敵을 보호하며 交通하고, 사악한 계략을 행하며 싸움에 임해[臨戎] 조정을 배반하였다. 諸侯가 힘을 다했으나 호응하지 않고 패한 도적[遺寇]·흩어진 군사들[遊魂]과 서로 위탁하였다. 臣節을 이미 상실하였는데 어찌 살아남을 은혜를 생각하겠는가. 재상의 지위[台位]를 구할 뿐 禮가 갑자기 忠敬에 어긋났다. 그 醜行을 마음껏 행하며 兇威를 높이고 軍中을 逼脅하며 몰래 賊號를 시행하기에까지 이르고 麾下를 깔보고 오염시켜 실로 皇風을 더럽혔다. 재물로 자신을 보호하고 폭압으로 무리를 대우하며 士庶가 원망해도 구휼하지 않고 將校가 고생해도 그들을 위해 도모하지 않았다. 조물주[陶鈞]에게서 명을 받아 일을 행해 여기에 이르렀는데, 天地에서 보건대 나를 등지는 것이 얼마나 많고 또 覆載의 仁을 저버렸으니 어찌 神鬼의 책망을 면하겠는가. 하물며 근래에 上請하여 山東에 就食하고 군대를 돌리게 하며[旋師] 때에 맞춰 명을 받들지 않고 그 무리를 동요시켜 그 마음을 흔들길 바랐으나 劉濟의 굽히지 않는 忠正의 말에 의지하여 邪豎로 하여금 遲迴의 계책을 끊게 하였다. 게다가 鄰境을 두루 隴손하고 몰래 事情을 疏하였으며 反覆이 무상하고 高下가 萬變하였으며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고 저지른 일이 가득하였다. 짐이 始終을 생각하여 포

용[含貸]에 힘쓰고 과오를 후회하기를 기대하며 어찌 더욱 흉악해 질 것을 생각했겠는가. 昭義軍은 忠節이 일찍이 드러나고 義聲이 환하였으며 그 무리의 분노를 일으켜 한마음으로 화합하였으며 大惡을 보고 용서하지 않았고 다행히 全驅하여 화를 면하였으니 마땅히 大戮에 처해 彝章을 바로잡는다. 그러나 그는 일찍이 方隅에 列하며 일찍이 使를 담임하면서 君臣의 體를 아깝게 여겨 中外의 情을 늘렸으므로 魑魅의 땅으로 보내 人神의 憤을 없애려고 한다. 가히 驩州司馬로 屢적한다. 오호라! 간악함은 사실로 증명되는데, 스스로 棄絶의 문을 열었으며 화란은 실로 자신이 초래한 것이다. 어찌 넓고 탁 트인 [恢疏]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으랴. 무릇 士[人]들은 마땅히 짐의 마음을 헤아리길 바란다.

아들 [盧]繼宗 등 4인은 모두 嶺 너머로 屢적되었다.

16. 『신당서』 권141, 盧從史傳¹³¹⁾

노종사의 선조는 元魏 시기에 명족[盛族]이었다. 후에 천거[徙籍]가 일정하지 않았다. 부친 [盧]虔은 학문을 좋아하고 進士에 급제하여 御史·祕書監을 역임하였다.

노종사는 젊을 때 騎射를 좋아하고 澤·潞 지역을 유력하였는데, 절도사 李長榮이 督將에 임명하였다. [德宗] 貞元 연간 이후 藩臣 [자리]가 비면 덕종이 반드시 本軍에서 추대하는 자를 취해 제수하였다. 노종사는 潞에 있으면서 간교함[姦獮]으로 군사의 마음을 얻고 또 中人에게 잘 부회

131) 『신당서』 권141, 노종사전, 4660~4661쪽.

하였다. 때마침 이장영이 쫓하자 바로 昭義節度副大使로 擢拜되었다. 뜻을 이루자 점차 방자하고 무도[不道]해져 部將의 처를 빼앗기도 하여 자신의 비리를 잘 변명하고 분식하였다. 府屬인 孔戣 등이 누차 직언하며 간쟁하였는데, 처음에는 말로 응답하다가 뒤에는 더욱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떠났다. [憲宗] 元和 연간(806~820)에 부친상을 당해 관직을 내려놓았는데, 노종사는 바로 王承宗을 주살하는 계책을 올려 음모로 황제의 뜻에 부합하였고 이로 인해 상복을 벗고 다시 澤潞를 관장하였다. 조서를 받들어 賊을 토벌하였으나 병사를 제어하여 머물면서 몰래 왕승종과 통교하며 그 암호[密號]를 얻어 軍中에 알리고 또 마초·식량[芻粟]의 가격을 높게 하여 度支에 팔았다. 그리고 上書하여 宰相을 겸하길 요구하고 또 諸軍이 賊과 내통한다고 무고하여 병사들이 나아갈 수 없었으므로 헌종이 근심하였다.

앞서 神策中尉 吐突承璀가 그와 마주하여 보루를 쌓았는데, 노종사가 때때로 그 군영에 이르러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였다. 토돌승최는 寶帶와 奇玩을 많이 꺼내 그에게 자랑하였다. 노종사는 천성이 탐욕스럽고 비루하였으므로 가지고 놀며 좋아하면 [토돌승최가] 반드시 주었다. 노종사가 기뻐하며 점점 친숙해져 의심하지 않았다. 황제가 裴垪의 모책을 채용하여 칙서를 내려 토돌승최에게 도모하게 하였다. 토돌승최가 壯士들을 장막[幕] 아래에 매복시켜 두었다가 그가 와서 함께 이야기하는 틈을 타 장사들에게 갑자기 나와 잡아채게 하여 장막 뒤로 끌고 가 포박하여 수레 안에 넣었다. 수행자들이 놀라 어지러워지자 수십 인을 참살하고 密詔를 보이며 깨닫게 하였다. [택로] 大將 烏重胤은 평소 충성스럽고 과감하였는데, 그 병사들을 지휘하여 통제하니 이에 안정되었다. 밤을 틈 타 [수레를] 달리게 하여 未明에 경역을 나왔는데, 도로에서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에 [원화] 5년(810) 여름 4월 조서를 내려 그 군대를 위로하며 노종사의 죄악을 나열하고 驩州司馬로 좌천시킨 뒤 죽음을 내렸다. 아들 [盧]繼宗

등은 모두 嶺南로 유배보냈다[徙].

17. 『구당서』 권141, 田弘正傳¹³²⁾

전홍정은 본명이 興이다. 조부 [田]延暉은 魏博節度使 [田]承嗣의 막내 숙부(季父)이며 지위는 安東都護府司馬에서 죽었다. 전연운은 [田]延玠를 낳았는데, 어려서부터 儒雅에 돈독하고 軍職을 즐기지 않았다. 起家하여 平舒¹³³⁾ 丞이 되고 樂壽¹³⁴⁾ · 清池¹³⁵⁾ · 東城 · 河間¹³⁶⁾ 4縣令으로 승진하였는데, 이르는 곳마다 良吏로 칭해졌다. [代宗] 大曆 연간에 승진하여 太府卿 · 滄州別駕가 되고 滄州刺史 · 兼御史中丞 · 充橫海軍使가 되었다. 전승사가 淄靑 李正己 및 恆州 李寶臣과 사이가 나빠졌을 때 전승사가 전정개에게 滄州를 지키게 하고 있었는데, 이보신과 朱滔가 병사를 연합해 공격하여 그 땅을 점령하려고 하였다. 전정개가 농성하여 굳게 지켰는데, 해를 이어[連年] 적의 공격을 받아 병사가 다하고 식량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식을 바꾸어 먹을 것을 구했으나 끝내 叛하는 자가 없었고 끝내 성을 지켜냈다.¹³⁷⁾ 조정이 가상하게 여겨 洛州刺史로 승진시키고 다시 相州로 바꾸었다. 마침 薛勣이 난을 일으키자 전승사가 薛嵩의 관할을 잠식하였는데,¹³⁸⁾ 전정개는 바른 행동을 견지하며 백성을

132) 『구당서』 권141, 전홍정전, 3848~3852쪽.

133) 『구당서』 권39, 地理志2, 河北道, 瀛洲 조, 1514쪽.

134) 『구당서』 권39, 지리지2, 하북도, 深洲 조, 1506쪽.

135) 『구당서』 권39, 지리지2, 하북도, 滄洲 조, 1507쪽.

136) 東城 · 河間은 瀛洲의 속현이다. 즉 『구당서』 권39, 지리지2, 하북도, 영주 조, 1514쪽.

137) 정병준, 「平盧節度使 李正己에 대해 -代宗時期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94, 2002, 117~118쪽.

어루만져 주고 宗門이라고 하여 절개를 회피하거나 바꾸지 않았다. [德宗] 建中 연간 초에 族姪인 [田]悅¹³⁹⁾이 전승사를 대신하여 軍政을 관장하고 반역[兇逆]을 도모하였는데, 전정개가 따르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불러 節度副使로 삼았다. 전열의 간교한 모략이 명확이 드러나자 전정개가 전열에게 말하길

너는 伯父의 遺業에 의지해서 조정 법도를 지키면 앉아서 부귀를 누릴 것인데, 어찌하여 恆·鄆과 함께 叛臣이 되는가? 반란이 일어난 이래 國家에 謀叛한 자를 살펴보면 宗族을 보전한 자가 드물다. 네가 만약 狂志를 고치지 않는다면 먼저 나를 죽여 내가 田氏의 멸족을 보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고 병을 핑계로 문을 나오지 않았다. 전열이 그 집으로 가서 사죄하였으나 전정개가 문을 닫고 만나지 않았는데, 將吏들이 만나도록 청하였다. 건중 3년(782) 올분으로 卒하였다.¹⁴⁰⁾

전흥정은 전정개의 둘째 아들이다. 젊어서 儒書를 익히고 자못 兵法에 정통하며 騎射에 능하고 용감하면서 예법이 있었기 때문에 伯父 전승사가 아끼고 중히 여겼다. [덕종 貞元 12년(796) 8월] [田]季安¹⁴¹⁾의 세상이 되어¹⁴²⁾ 衙內兵馬使에 임명되었다. 전계안은 ‘지나친 사치[侈靡]’에만 힘

138) 정병준, 「平盧節度使 李正己에 대해」, 115~119쪽.

139) 정병준, 「『舊唐書』·『新唐書』 李納·李師古 등 列傳 譯註」, 395~404쪽(『구당서』 권1411, 전열전 역주) 참조.

140)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관해서는 정병준, 「德宗의 藩鎮改革 政策과 平盧節度使 李正己」, 『중국사연구』 81, 2012, 149쪽 참조.

141) 『구당서』 권141, 田緒傳, “子三人, 季和·季直·季安”(3846쪽); 同, 田季安傳, “母微賤, 嘉誠公主畜爲己子, …… [田]緒卒時, 季安年纔十五, 軍人推爲留後, ……”(3846~3847쪽).

142) 『자치통감』 권235, 정원 12년 8월 조, “以田季安爲魏博節度使”(7574쪽).

쓰고 軍務를 돌아보지 않았으며 자주 殺罰을 행하였다. 전홍정이 매번 완곡하게 바로잡고 타일렀으므로 軍中이 매우 의지하였다. 전계안은 人情이 [전홍정에게] 歸附하자 臨淸鎭將으로 내보내고 그 허물을 찾아 해치려고 하였다. 전홍정은 風痺를 핑계로 휴가를 청하고 전신을 灸灼하자 전계안은 그가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여겼다. 전계안이 위독해지자 그 아들 [田]懷諫은 어리고 어리석었기 때문에 전홍정을 불러 그 옛날 직책에 임명하였다.

[憲宗 원화 7년(812) 8월] 전계안이 졸하자 전회간이 家僮 蔣士則에게 위임하여 軍政을 改易하게 하였는데, 人情이 불만을 느껴 모두가 말하길 “都知兵馬使 田興은 가히 우리의 우두머리가 될 만하다”라고 하고 衙兵 수천 인이 전홍의 사저로 가서 말하며 청하였다. 전홍이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으나 병사들이 소리를 지르며 그치지 않았다. 전홍이 나오자 병사들이 둘러싸고 절하며 府署로 들어가길 청하였다. 전홍이 땅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린 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끝내 모면할 수 없음을 알고 이에 軍中에 영을 내려 말하길 “三軍이 전홍을 불초하다고 여기지 않고 軍務를 맡기려고 한다. 諸軍과 먼저 약속하고자 하는데, 마땅히 명을 들을 것인가?”라고 하자 모두가 말하길 “명을 내리면 따르겠다”고 하였다. 전홍이 말하길

나는 天子의 法을 지키고 6주의 版籍을 보내 관리[吏]를 청하려 하며, 또 副大使를 해치지 말라. 가능한가?

라고 하자 모두가 “좋다”고 하였다. 이날 [절도사] 府에 들어가 일을 보았고 蔣士則과 수십 인을 죽였을 뿐이다.¹⁴³⁾ 저녁에 府에서 집으로 돌아오

143) 『자치통감』 권238, 원화 7년 8월 조, 7692~7694쪽.

자 그 형 [田]融¹⁴⁴⁾ 이 전흥을 꾸짖어 말하길 “네가 끝내 자신을 감추지 못했는데,禍를 얻는 길이다”라고 하였다. 다음날 [원화 7년 10월] 당시 상황을 황제에게 전하자 憲宗이 가상하게 여겨 전흥을 銀青光祿大夫·檢校工部尙書·魏州大都督府長史·兼御史大夫·上柱國·沂國公·充魏博等州節度觀察處置支度營田等使에 제수하고¹⁴⁵⁾ [원화 8년(813) 2월 신묘일(7일)] 弘正이라는 이름을 하사하였다.¹⁴⁶⁾ 아울러 [원화 7년 11월] 中書舍人 裴度を 魏州로 보내 宣慰하고 위박 三軍에게 상으로 錢 150만 貫을 하사하였다.¹⁴⁷⁾

전흥정이 節鉞을 받은 뒤 表를 올려 말하길

臣이 듣건대 君臣·父子는 大倫이어서 이에 紀綱을 세워 上下를 바로잡는다고 한다. 혹 자식이 자식답지 않고 신하가 신하답지 않으면 천지[覆載]가 용납하지 않고 신령[幽明]이 마땅히 함께 죽인다. 신의 집안은 본래 邊塞에 있으면서 여러 대 동안 唐人이었고 조부·부친 때부터 성인 자손의 教化를 받았다. 신은 다행히 宗族으로 인해 일찍부터 偏裨가 되어 戎馬의 땅을 내달렸고 조정의 예법을 목도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하늘이 忠과 孝를 신의 마음에 부여하여 항상 분발하여 생명을 돌보지 않고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칠 것을 생각하였으나 上達할 길이 없어 스스로 아픔을 느꼈다. 어찌 명운이 뜻하지 않게 창성할 것인가. 위난한 상황으로 인해 시퍼런 칼날 아래에서 그릇되게 추대되었다. 천자의 자애가 갑자기 내려와 罪累를 면해주고 조정의 은전이 거둬 내려와 절도사[旂旄]에 임명해 주었다. 全藩을 封壤으로 하사하고 八座의 지위를 내려주시어 君父의 은택이 극한에 도달하였으나 조금의 보답도 하지 못한

144) 『자치통감』 권239, 원화 8년 정월 조, 7698~7699쪽.

145) 『자치통감』 권239, 원화 7년 10월 조, 7695~7696쪽.

146) 『자치통감』 권239, 원화 8년 2월 辛卯 조, 7699쪽.

147) 『자치통감』 권239, 원화 7년 11월 조, 7696쪽.

채 단지 부끄럽게 수치를 느끼며 머리를 숙이고 스스로를 책망할 뿐이었다. 功榮이 높아지면 반드시 危亂이 온다는 것을 아는데 徼幸이 왔건만 도리어 淸平의 나날이다. 자리를 지키며 본분을 헤아린다고 해도 총애가 우려된다. 옳드려 생각건대 [玄宗] 天寶 연간 이래 幽陵(즉 幽州)에서 난이 일어나 山東 땅이 모두 전쟁터(戎墟)로 변하였다. 밖으로는 [공순하게] 車馬를 어루만지나 안으로는 올빼미와 맹수의 마음을 품고 官封을 세습하며 刑賞을 멋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국가가 욕됨을 삼키고 허물을 덮어준 지가 60년이 되었다. 신이 매번 이 일을 생각하면 식사를 해도 삼키기가 어렵다. 만약 하늘이 더 살게 해 준다면 폐하의 모책(宸算)을 받들어 약한 자를 아우르고 우매한 자를 공격하여 요충을 밀쳐내고 허점을 찢러 鷹犬의 힘을 다해 獲禽의 쓰임이 되어 和氣를 높이고 僞風을 없앤 연후에 田園으로 물러나 賢路를 피하고자 한다. 신이 이러한 뜻이 품고 있으니 폐하께서 살피시오.

라고 하자 優詔를 내려 칭찬하며 훌륭하다고 하였다.

전홍정은 앞 시대 忠孝·立功의 일에 대해 듣기를 즐겨하여 府廬에 書樓를 지어 서적 1만여 권을 모아두고 일을 처리하는 사이에 賓佐와 함께 古今 言行之 可否를 담론하였다. 지금 河朔에 『沂公史例』 10권이 전하는데,¹⁴⁸⁾ 전홍정의 객이 그를 위해 지은 것이다. 魏州는 전승사 이래 館宇·服玩이 常制를 넘었는데, 모두 徹毀하게 하고 또 正廳이 크게 사치스럽다고 하여 거처하지 않고¹⁴⁹⁾ 探訪使 청사에서 일을 처리하였다. 賓僚·參佐는 조정에 임명을 청하였다. 자못 儒書를 좋아하고 史氏·左傳·國史에 더욱 정통하여 그 大略을 알았다.

전홍정이 歸國한 때로부터 幽·恆·鄆·蔡가 순망치한의 두려움이 있어

148) 전홍정이 沂國公에 봉해진 것은 앞에서 보았다.

149) 『자치통감』 권239, 원화 7년 11월 조, 7697쪽.

자주 客을 보내 이간(間說)하여 다방면으로 사이가 벌어지게 하려고 유혹 하였으나 전홍정은 끝내 그 지조를 바꾸지 않았다.¹⁵⁰⁾ 裴度는 理體에 밝았고 詞說이 웅변이었는데, 전홍정이 그 말을 듣고 밤늦도록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마침내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이로 인해 황제를 만드는 마음이 더욱 견고해졌다.

원화 10년(815) [정월] 조정이 군사를 동원하여 吳元濟를 토벌하자¹⁵¹⁾ 전홍정이 아들 [田]布를 보내 병사 3천을 거느리고 進討하게 하니 자주 싸워 공을 세웠다. 李師道는 전홍정이 조정에 충성을 다해 그 배후를 습격할 것을 우려하여 감히 공공연히[顯] 오원제를 돕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기각의 원조를 끊어 王師가 능히 토벌을 이룰 수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王承宗이 叛하자 전홍정에게 조서를 내려 全師을 이끌고 영역을 압박하게 하였다. 왕승종이 두려워서 사신을 보내 전홍정에게 도움을 청하자 마침내 그 일을 表로 올렸다. 왕승종이 마침내 두 아들을 인질로 보내고 德·棣 2주를 헌상하며 속죄[自解]하였다.

[원화] 13년(818) 王師가 鄆에 군대를 동원할 때 전홍정에게 조서를 내려 宣武·義成·武寧·橫海 등 五鎮의 군대와 함께 병사를 합쳐 일제히 나아가게 하였다. 11월 전홍정이 직접 全師를 거느리고 楊劉에서 황하를 건너 보루[壘]를 쌓았는데, 鄆과 40리 떨어졌다. 이사도가 大將 劉悟를 보내 重兵을 거느리고 전홍정에게 대항하게 하니 두 진영의 보루가 서로 바라보았다. 전후로 교전하여 魏軍이 크게 이겼고 또 李愬·李光顏이 삼면으로 진격하자 賊이 모두 패배하여 그 형세가 위급해졌다. 14년(819) 3월 유오가 황하 변[河上]의 군대를 되돌려 鄆으로 들어가 이사도를 참수한 후 전홍정에게 항복을 청하였다. 淄靑의 12주가 평정되자 공을 논해 檢校司

150) 『자치통감』 권239, 원화 7년 11월 조, 7697쪽.

151) 『자치통감』 권239, 원화 9년 11월 조, 7707쪽.

徒·同中書門下平章事를 더해주었다.

이 해(819) 8월 전홍정이 입조하자 현종이 매우 융성하게 대우하여 麟德殿에서 대면하고 參佐·將校 200여 인 모두에게 하사하였으며 또 檢校司徒·兼侍中·實封300호를 더해 주었다. 아울러 그 형 檢校刑部尚書·相州刺史 [田]融을 太子賓客·東都留司에 임명하였다. 전홍정이 세 번 章을 올려 조정[闕下]에 머물길 청하였으나 현종이 위로하여 말하길

지난번에 韓弘이 조정에 이르러 병을 칭하며 군무[戎務]를 사직하고자 간청하였을 때 짐이 부득불 따랐다. 지금 卿이 또 머물길 청하니 그 마음이 진실로 가상하나 魏의 땅은 경의 다스림을 즐거워하고 이웃 지역[鄰境]은 경의 위세에 복종하므로 나의 長城과 같다. 사직하지 말고 빨리 藩으로 돌아가도록 하라.

라고 하였다. 전홍정은 항상 어느 날 번고가 생길까 두려워하고 세습의 풍토가 바뀌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兄弟·子姪을 모두 조정에 벼슬[仕]하게 하였는데, 현종이 모두 발탁하여 班列에 두니 朱紫가 집안[庭]에 가득하여 당시 사람들이 영예롭게 여겼다.

[원화] 15년(820) 10월 鎮州의 王承宗이 추하자 穆宗이 전홍정을 檢校司徒·兼中書令·鎮州大都督府長史·充成德軍節度·鎮冀深趙觀察等使로 삼았다. 전홍정은 근래에 鎮人과 교전하여 父兄의 원한이 있었기 때문에 魏兵 2천을 수종위병[衛從]으로 데려갔다. 12월 26일 鎮州에 이르렀는데, 그때 [조정에서] 鎮州의 三軍에게 賞錢 1백만 貫을 하사하였으나 제때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軍衆이 시끄럽게 떠들며 말을 하였다. 전홍정이 직접 어루만지며 깨우치게 하니 人情이 점차 안정되었다. 그리고 表를 올려 魏兵을 머물게 하여 紀綱의 동복[僕]으로 삼아 衆心을 안정시키길 청하고 또 그 糧賜는 有司에서 지급해주길 청하였다.¹⁵²⁾ 당시 度支使

崔俊은 大體를 알지 못해 강하게 그 청을 저지하였고, [전홍정이] 무릇 세 번이나 上表하였으나 답하지 않았다. 이듬해인 [목종 長慶 원년(821)] 7월 병졸을 魏州로 돌려보냈는데, 이 달 28일 밤 軍亂이 일어나 전홍정과 家屬·參佐·將吏 등 300여 인이 모두 해를 입었다. 목종이 그 소식을 듣고 놀라 비통해하고 太尉로 冊贈하고 부의[贈賻]를 많이 보냈다. 전홍정은 孝友하고 慈惠하여 골육에 대한 은혜가 매우 두터웠다. 兩都에 거주하는 兄弟·子姪이 수십 인이었는데, 다투어 화려하게 생활하여[崇飾] 日費가 약 20만이었고, 魏·鎮州의 재화가 모두 수레에 실려 끊임없이 옮겨졌다. 河北의 將卒이 속으로 불평을 품었기 때문에 능히 그 풍속을 모두 바꾸지 못해 끝내 이로써 난이 일어났다. 전홍정의 아들은 [田]布·[田]羣·[田]牟이다.

[田]布¹⁵³⁾는 전홍정의 셋째 아들이다. 처음에 전홍정이 田季安의 裨將이 되어 [貝州] 臨淸縣¹⁵⁴⁾을 鎮[守]할 때 전포는 나이가 아직 어렸으나 전개안의 앞날[身世]이 반드시 위태로울 것으로 인식하고 몰래 그 부친에게 그 鎮하는 바의 병사를 이끌고 조정에 귀순하도록 말하니 전홍정이 매우 기특하게 여겼다. 전홍정이 위박을 節制하자 전포가 親兵을 관장하였고 國家가 淮蔡를 토벌할 때 전포가 偏師를 이끌고 嚴綬에게 예속되어 唐州에 주둔하니 檢校秘書監·兼殿中侍御史에 제수하였다. 전후로 18번

152) 당대의 藩帥들은 많은 家僮을 양성하여 親隨(親從)部曲으로 삼고 移封하는 경우에도 隨從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즉 日野開三郎, 『支那中世の軍閥』(『日野開三郎 東洋史學論集』 第1卷, 三一書房, 1980, 84~85쪽, 109쪽, 149쪽 참조. 또 번수의 親兵 혹은 사병에 관해서는 정병준, 「唐 憲宗 초기 淮西 藩鎮의 地域割據 - 吳少陽의 行동을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135, 2021, 60~61쪽 및 각주 20) 참조.

153) 『구당서』 권141, 전포전, 3852~3854쪽.

154) 『구당서』 권39, 지리지2, 하북도, 貝州 조, 1497쪽.

싸우고 凌雲柵을 격파하고 鄆城을 함락하였는데,¹⁵⁵⁾ 전포가 모두 공을 세워 御史中丞으로 승진하였다. 당시 裴度가 宣撫使가 되어 일찍이 沔口에서 군대를 살펴보았는데, 賊將 董重質¹⁵⁶⁾이 驍騎를 거느리고 급히 이르렀다. 전포가 200기를 이끌고 溝中에서 갑자기 나와 공격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諸軍이 크게 모였고 적이 물러갔다. 淮西가 평정되자 左金吾衛將軍·兼御史大夫에 제수되었다. [원화] 13년(818) 모친상을 당했으나 舊官으로 起復하였다. [원화] 15년(820) 겨울 전홍정이 成德軍으로 변진을 옮기고[移鎮] 전포가 河陽三城懷節度使에 임명되어 부자가 함께 節旄를 공유하게 되었는데, 같은 날 임명되었다. 당시 韓弘 역시 아들 [韓]公武와 함께 절도사가 되었지만, 당시 사람들은 田氏가 더 忠勤하다고 여겼다.

[穆宗] 長慶 원년(821) 봄 涇原으로 변진을 옮겼다. 그 해 가을 鎮州에서 군란이 일어나 전홍정을 살해하고 都知兵馬使 王廷湊를 留後로 삼았다. 당시 위박절도사 李愬는 병이 들어 군대를 지휘할 수 없어 왕정주의 난을 막을 수 없었는데, 魏軍이 전씨의 옛 병사들이어서 이에 급히 전서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게 하고 起復시켜 위박절도사로 삼고 아울러 檢校工部尙書로 승진시키면서 전포에게 傳을 이용하여 변진으로 가게 하였다. 전포가 상복을 입고 堊室(즉 상을 지키는 방)에 있으면서 旌節과 導從의 장식을 치우고 魏州로 들어가 居喪하며 일을 보았는데, 모든 움직임을 禮에 맞게 하였다. 전포의 祿俸은 매월 백만이었으나 하나도 취하지 않고, 또 魏에 있는 옛 재산을 계산하니 모두 錢 10여만貫이었는데 모두 내어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牙將 史憲誠은 자신의 휘하 출신이어서 반

155) 정병준, 『『舊唐書』·『新唐書』李師道·吳元濟·王承宗 등 列傳 역주』, 463~467쪽(『구당서』 오원제전), 474쪽·480쪽(『신당서』 오원제전) 참조.

156) 『구당서』 권161, 동중질전, 4227~4228쪽. 또 정병준, 『『舊唐書』·『新唐書』李師道·吳元濟·王承宗 등 列傳 역주』, 463쪽, 467쪽, 469쪽, 471~473쪽, 475쪽, 482쪽 등 참조.

드시 정성을 다해 보답할 것으로 여기고 [전포가] 先鋒兵馬使로 삼아 정예 병사를 모두 위임하였다. 그때 급한 조서가 자주 내려와 進軍을 재촉하였다. [장경 원년] 10월 전포가 魏軍 3만 7천을 보내 토벌하게 하니 南宮縣 남쪽에 보루를 쌓았다. 12월 군대를 나아가게 하여 賊의 두 柵을 함락시켰다. 그때 朱克融이 張弘靖을 가두고 幽州를 점거하여 왕정주와 기각을 이루며 조정의 명을 거부하였다. 河朔三鎮은 평소 連衡하였으므로 사헌성이 음으로 다른 마음을 가졌다. 당시 魏軍은 교만하고 사치스러웠으며 싸우는 것을 겁냈는데, 마침 눈이 오고 추웠으나 군량이 지급되지 않아 더욱 투지를 상실하자 사헌성이 이를 틈 타 이간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서가 내려와 전포의 병사를 나누어 李光顏에게 습勢시켜 동쪽으로 深州를 구원하게 하였다. 그러자 그 병사들이 스스로 흩어져 대부분이 사헌성의 소유가 되니 전포는 단지 그 병사 8천을 얻었다. 이 달 10일 魏州로 돌아왔다. 11일 諸將을 소집하여 군대를 동원할 것을 다시 논의하였으나 將卒들이 더욱 거만해져 모두가 말하길

尙書께서는 능히 河朔舊事를 행한다면 목숨을 걸고 따르겠지만, 만약 다시 싸우라고 한다면 행할 수 없다.

라고 하였다. 전포는 사헌성의 離間으로 병사들이 끝내 따르지 않을 것을 알고 탄식하며 “功을 이루 수 없다”라고 하였다. 같은 날 密表를 올려 軍情을 진술하고 또 遺表라고 칭하며 대략 말하길

신이 병사들의 뜻을 보건대 끝내 國恩을 저버릴 것이다. 신은 공을 세울 수 없으니 감히 죽지 않을 수 없다. 앞드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속히 [李]光顏·[牛]元翼을 구원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義士와 忠臣이 모두 河朔에서 도륙될 것이다.

라고 하고 표를 받들면서 통곡하고 그 從事 李石에게 절하며 건네준 후 부친의 영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 알리고 칼을 뽑아 자신을 찌르며 말하길 “위로 君父에 감사하고 아래로 三軍에게 보인다”라고 하며 말이 끝나자 목숨이 끊어졌다.¹⁵⁷⁾ 당시 사람들이 말하길 전포는 재능이 비록 부족하였지만, 능히 죽음으로 家國에 보답하였다고 하였는데, 마음의 의지가 결연한 것은 燕·趙의 古風을 이은 것이다.

목종이 이를 듣고 놀라고 탄식하여 3일 동안 廢朝하고 조서를 내려 말하길

故魏博節度使·起復寧遠將軍·檢校工部尙書·兼魏州大都督府長史·御史大夫·賜紫金魚袋 전포는 …… 가히 尙書右僕射로 추증한다.

라고 하였다.

전포의 아들 [田]在宥는 [宣宗] 大中 연간(847~859)에 安南都護가 되어 자못 邊功을 세웠다.

[田]羣은 [文宗] 大和 8년(834)에 小府少監·充入吐蕃使가 되고 棣州刺史·安南都護를 역임하였다.

[田]牟는 [武宗] 會昌 연간(841~846) 초에 豐州刺史·天德軍使가 되었다가 武寧軍節度使를 역임하고 대중 시기에 兗海節度使가 되었다가 天平軍으로 移鎮하였다. 아들들은 모두 변경에서 공을 세우고 누차 藩鎮을 바꾸었으며 忠義로 세상의 평가를 받았다고 칭해졌다.

157) 『신당서』 권148, 전포전, “… 言訖而絕, 年三十八, 贈尙書右僕射, 諡曰孝”(4786쪽).

18. 『신당서』 권148, 田弘正傳¹⁵⁸⁾

전홍정은 字가 安道이다. 부친 [田]廷玠는 儒學을 숭상하고 軍旅를 즐기지 않았다. 전승사와 당형제[從昆弟] 관계였으며 [入]仕하여 平舒丞이 되고 樂壽·淸池·束城·河間 4縣令으로 승진하였는데, 잘 다스린다고 칭해졌다. 滄州刺史로 승진하였다. 李寶臣·朱滔가 전승사와 불화하여 병사를 합쳐 滄州를 포위하자 전정개가 해를 이어 견고하게 지켰는데, 식량이 비록 다해도 叛者가 없었다. 조정이 그 절개를 가상하게 여겨 相州로 옮겼다. 전승사가 磁·相을 흠쳤으나 전정개는 어떤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 [田]悅이 뒤를 잇자 전정개의 올바름[正]을 꺼려하여 불려 節度副使로 삼았다. 전정개가 이르러 전열을 책망하여 말하길

伯父의 緒業을 계승하였으니 마땅히 조정의 法度를 지켜 富貴를 보전해야 할 것이거늘 어찌하여 恆·鄆과 함께 叛臣이 되는가? 전란이 일어난[兵興] 이래 천자에게 叛하고서 능히 宗族을 보전한 자가 누구인가? 뜻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면 먼저 나를 죽여 나로 하여금 전씨가 다른 사람의 칼날에 피 흘리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고 마침내 병을 칭하고 나오지 않았다. 전열이 [그 집에] 이르러 사죄하였으나 문을 닫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올분으로 추하였다.

전홍정은 어려서 兵法에 통달하고 騎射에 능하였기 때문에 전승사가 아끼며 반드시 우리 종족을 흥하게 할 것이라고 여겨 이름을 지어 興이라고 하였다. [田]季安 시기에 衙內兵馬使·同節度副使가 되고 沂國公에

158) 『신당서』 권148, 전홍정전, 4781~4784쪽.

봉해졌다. 전계안은 사치스럽고[侈汰] 임의대로 殺罰하였는데, 전홍정이 완곡하게 경계하여 바로잡았으므로 軍中이 의지하여 분분히 귀부하고 받들었다. 전계안이 속으로 꺼려하여 臨淸鎭將으로 내보내고 죄를 빙자하여 주살하려고 하였다. 전홍정은 겉으로 痺癩(즉 風痺)라고 칭하고 집에 누워 나오지 않아 화를 면하였다. 전계안이 죽고 아들 [田]懷諫이 절도사를 세습하자 불려 舊職을 회복시켜 주었다.

전회간은 政[務]를 家奴 蔣士則에게 위임하였는데, 措置가 공평하지 않자 무리가 화를 내며 모두 말하길 “兵馬使가 우리의 우두머리이다”라고 하였다. 牙兵이 즉시 그 집으로 가서 맞이하였으나 전홍정이 거절하며 받아들이지 않자 무리가 문 앞에서 떠들었다. 이에 전홍정이 나오자 무리가 절을 하고 府로 돌아오도록 강요하였다. 전홍정이 땅에 머리를 조아렸으나 모면할 수 없다고 헤아리고 곧 군대에 명하여 말하길 “너희들은 나를 불초하다고 여기지 않고 군대를 관장하라고 한다. 지금 公들과 약속하려는데, 능히 내 명을 듣겠는가?”라고 하자 모두가 “公의 명에 따르겠다”고 하므로 말하길

나는 天子의 法을 지키고 6주의 版籍을 들어 조정에 관리[吏]를 청하려고 한다. 천자의 명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감히 나에게 旂節를 청하는 자는 죽음에 처하고 살인하거나 사람을 약탈하면 사형에 처한다.

라고 하였다. 모두가 “좋다”고 하므로 마침내 府에 이르러 장사칙과 支黨 10여 인을 죽였다. 이에 魏·博·相·衛·貝·漣의 땅을 지도에 그리고[圖] 그 사람들을 등재하여[籍] 바쳤으며 감히 僚屬을 임명하지 않고 王官을 기다렸다.

이에 앞서 諸將이 밖으로 나가 주둔하면 妻子를 인질로 삼았고 里民은 서로 왕래할 수 없었다. 전홍정은 그러한 금령을 모두 없애고 백성들이

소통하며 慶弔에 대접(饋謝)할 수 있도록 하고 服玩이 분수에 넘치게 사치스러운(僭侈) 것은 그날 徹毀하였다. 전승사 시기에 正寢이 매우 화려하였으므로[華顯] 전홍정이 피하여 감히 거처하지 않고 探訪使 청사(堂皇)에서 일을 처리하였다. 幽·恆·鄆·蔡가 크게 두려워서 客을 보내 권유하며 유혹하였으나 전홍정이 모두 거절하고 보냈다. 憲宗이 그 정성을 훌륭하게 여겨 조서를 내려 檢校工部尙書·充魏博節度使로 삼았다. 또 司封郎中·知制誥 裴度を 보내 宣慰하고 그 軍에 錢 150만 緡을 하사하고 六州 백성에게 1년을 給復해 주고 見囚를 사면하고 高年·惇獨와 廢疾로 인해 자활하기 어려운 자를 存問하게 하였다. 배도는 명석하고 말을 잘하며[明辯] 조정의 두터운 마음을 상세히 말하자 전홍정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표정을 잃었고[自失] 이에 서로 깊이 관계를 맺고 황제를 받드는 것이 더욱 공손하였다. 또 배도에게 관하 지역을 두루 순시하도록 청해 천자의 恩詔를 宣示하였다. 그리고 節度僉謀인 布衣 崔權에게 명해 表를 올려 陳謝하게 하고 또 말하길

天寶 연간 이래 山東 땅이 전쟁터로 변하였고 官封을 세습하며 刑賞을 스스로 행하였으므로 國家가 욕됨을 삼킨 지가 60년이 되었다. 신은 만약 하늘이 더 살게 해 준다면 폐하의 모책을 받들어 和氣를 높이고 僞風을 없앤 연후에 丘園으로 물러나 賢路를 피하기를 바라며, [이렇게 된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하였다. 制詔를 내려 褒答하며 지금의 이름을 하사하였고 사여물이 길에 끊이질 않았다.

천자가 蔡(즉 淮西)를 토벌하자 전홍정이 아들 [田]布를 보내 병사 3천을 이끌고 나아가 싸우게 하니, 자주 공을 세웠다. 李師道는 그가 자신을 습격할 것을 의심하여 감히 공공연히 채를 도우지 못했기 때문에 [吳]元

濟가 지원을 잃어 王師가 주살할 수 있었다. 王承宗이 叛하자 전홍정에게 조서를 내려 全師를 이끌고 경계를 압박하게 하니 그 병사를 南宮[縣]에서 격파하였다. 왕승종이 두렵고 달아날 길이 없어 전홍정에게 귀부하자 전홍정이 조정에 표를 올렸고 마침내 德·棣 2주를 현상하며 사죄하고 두 아들을 인질로 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사도가 조정의 명을 거부하자 전홍정에게 조서를 내려 宣武 등 5절도사 병사와 함께 나아가 토벌하게 하였다. 전홍정이 楊劉에서 황하를 건너 鄆과 40리 거리에 보루를 견고하게 하자[堅壁] 이사도의 大將 劉悟가 精兵을 거느리고 황하 동쪽에 주둔하였다. 陽穀에서 싸울 때 두 차례 교전하여 두 차례 패배시키고 1만여 급을 참수하자 賊 세력이 위축되었다. 유오가 이에 병사를 돌려 이사도의 머리를 베고 전홍정에게 가서 항복하고 12주를 들어 바쳤다. 당초에 유오가 賊을 평정한 후 軍中에서 크게 연회를 베풀며 3일 동안 角觝戲를 열어 魏博의 사신을 이끌고 마당[廷]에 이르러 즐겼는데, 유오가 눈을 부릅뜨고 눈썹을 치켜 올리며 소매를 걷어 올리고 경기를 응원하였기 때문에 좌중 사람들이 모두 유오의 용맹을 무서워하였다. 어떤 客이 전홍정에게 아뢰자 전홍정이 말하길

鄆의 군사는 전쟁에 피로하고 상처 입은 자가 회복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유오가 마땅히 죽은 자를 구출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면서 士大夫의 마음을 위로해야 하는데, 어찌 목전의 즐거움을 취하는 것인가? 내가 조서를 받들어 군대를 어루만지며 유오의 행동을 엿보니 지금 그가 일을 저지르지 못할 것 알겠다.

라고 하였다. 얼마 후 조서를 내려 유오를 義成軍節度使로 삼자 허겁지겁 [狼狽] 길을 떠났다. 당시 사람들이 유오를 보는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하

였다.

功으로 전홍정에게 檢校司徒·同中書門下平章事를 더해주었다. 이 해에 입조하자 麟德殿에서 응대하며 노고를 위로하는 것이 특별하였고 僚佐·將校 200여 인을引見하여 모두에게 班賜하였다. [전홍정에게] 兼侍中·實封300호를 더해주고 그 형 [田]融을 발탁하여 太子賓客·東都留司로 삼았다. 전홍정이 자주 표를 올려 진실로 조정에 머물길 청하였으나 황제가 위로하며 말하길

지난번에 韓弘이 병을 칭하며 변진[軍]에 취임하는 것을 사절하였을 때 짐이 그에 따랐다. 지금 또 卿이 그러한데, 내가 응당 어길 수 없다. 하지만 魏人이 경의 다스림을 즐거워하고 四鄰은 경의 위세를 두려워하니 나의 長城과 같다. 어찌 사직하려고 하는가?

라고 하였으므로 전홍정이 마침내 되돌아갔다. 항상 山東이 舊風을 계승하는 것을 바꾸려고 하였기 때문에 동성 자제[子姓]를 모두 조정으로 보내 벼슬[仕]하게 하니 황제가 전부 발탁하여 임명하였다. 朱紫가 門에 가득하였기 때문에 영예가 당시의 최고였다.

[원화 15년(820) 정월] 穆宗이 즉위한 뒤 [10월 왕승중이 죽고 동생] 王承元¹⁵⁹⁾이 成德軍의 번수를 요청하자 황제가 조서를 내려 전홍정을 兼中書丞에 임명하며 節度使로 삼았다. 전홍정은 근래에 鎮 사람들과 싸워 父兄의 원한이 있었기 때문에 魏兵 2천을 데리고 自衛하여 그 軍으로 들어갔다. 그때 천자가 錢 1백만 緡을 하사하였으나 제때에 이르지 않자 군인들이 원망의 말을 하였다. 전홍정이 친히 어루만지며 깨우쳐주니 이에

159) 정병준, 「『舊唐書』·『新唐書』李師道·吳元濟·王承宗 등 列傳 역주」, 491~493쪽; 同, 「李正己 一家 이후의 山東 藩鎮 -順地化 過程」, 『대외문물교류연구』 3, 2004, 151~152쪽 참조.

안정되었다. 아울러 魏兵을 머물게 하여 紀綱으로 삼아 衆心을 안정시키길 청하였으나 度支[使] 崔俊이 재물[稟]을 아끼려고 저지하여 물리쳤다. [목종] 장경 원년(821) 7월 衛卒을 魏로 돌려보내자 같은 달 군사들이 난을 일으켜 家屬·將吏 300여 인과 함께 모두 해를 입으니 나이가 58세였다. 황제가 소식을 듣고 놀라 비통해하며 太尉로 冊贈하고 시호를 忠愍이라고 하였다.

전홍정은 어려서 고아가 되어 형 전용을 섬기는 것이 매우 공손하였다. 일찍이 軍中에서 曹를 나누어 활쏘기를 연습할 때 전홍정이 쓴 화살이 연이어 명중하자 전용이 물러나 매질하며 꾸짖었고 이로 인해 전계안이 시기하여 흉포를 행할 때 능히 자신을 보전할 수 있었다. 군인들에게 압박받아 추대되었을 때 전용이 좋지 않게 말하길 “네가 끝내 자신을 감추지 못했는데, 禍를 얻는 길이다”라고 하였다. 조정이 그 우애를 알고 조서를 내려 相州刺史에 임명하며 金紫를 하사하고 그들이 서로 멀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전홍정은 성격이 忠孝하고 功名을 좋아하여 누각을 세워 書 1만여 권을 모았으며 『春秋左氏』에 통달하고 賓屬과 함께 종일 담론하였다.客이 그를 위해 『沂公史例』를 지어 세상에 행용되었다.

전홍정이 화를 입을 때 그 判官 劉茂復이 홀로 살아남았는데, [당시] 군사들이 서로 경계하여 말하길 “이 사람은 일을 논할 때 진심[忠]을 다하였으므로 우리의 신망을 얻었다. 감히 그 집안을 범하면 모두가 죽이겠다”라고 하였다.

전홍정의 아들은 布·羣·牟이다.

19. 『구당서』 권161, 烏重胤傳¹⁶⁰⁾

오중윤은 潞州 牙將이었다. [憲宗] 元和 연간에 王承宗이 叛하여 王師가 토벌하였다. 潞의 帥 盧從史는 비록 出軍하였으나 몰래 賊과 內通하였다. 당시 神策行營 吐突承瓘가 노종사 군대와 서로 가깝게 있었는데, 토돌승최가 오중윤과 모의하여 노종사를 장막 아래[帳下]에서 포박하였다. 이날 오중윤이 계엄을 내리자 潞軍에서 감히 움직이는 자가 없었다. 헌종이 그 공로를 칭찬하여 潞府 左司馬에 제수하였다가 懷州刺史·兼充 河陽三城節度使로 승진시켰다.¹⁶¹⁾

때마침 淮蔡를 토벌하였는데, 오중윤에게 경계를 압박하게 하고 또 汝州를 할양하여 河陽에 예속시켰다. 王師가 淮西를 토벌한 지 3년이 되었을 때 오중윤과 李光顏이 기각지세로 호응하면서 大小 100여 차례 싸워 [吳]元濟를 주살하기에 이르렀다. 곧 檢校尙書右僕射가 더해지고 司空으로 轉하였다. 蔡將인 李端이 澗河로 와서 오중윤에게 항복하였다. 그 처는 賊이 나무에 묶어놓고 저머서 먹어[飜食] 죽음에 이르렀는데, 장차 목숨이 끊어지려 할 때도 그 남편을 부르며 말하길 “烏 僕射를 잘 섬기시오”라고 하였다. 그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이와 같았다.

원화 13년(818) [11월] 鄭權을 대신하여 橫海軍節度使가 되었다.¹⁶²⁾ 鎮에 이른 후 [원화 14년(819) 3월] 上言하여 말하길

160) 『구당서』 권161, 오중윤전, 4223~4224쪽.

161) 앞의 『신당서』 권152, 이강전 역주; 『韓昌黎文集校注』 권6, 「烏氏廟碑銘」, 上海古籍出版社, 1987, 395~396쪽 참조.

162) 『자치통감』 권240, 원화 13년 11월 조, “以河陽節度使烏重胤爲橫海節度使”(7755쪽).

신이 생각건대 河朔이 능히 朝命을 거부한 것은 그 大略을 가히 볼 수 있다. 대개 刺史가 그 직권[職]을 상실하고 반대로 鎭將에게 兵事를 다스리게 한 때문이다. 만약 자사가 각각 職分을 가지고 또 鎭兵을 거느리면 節將이 비록 [安]祿山·[史]思明과 같이 간악하다고 해도 어찌 능히 1주에 의거하여 叛하겠는가? 河朔이 60년 동안 능히 朝命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刺史·縣丞의 직권을 빼앗아 스스로 권세[威福]를 행사한 때문이다. 신이 관할하는 德·棣·景 3주는 이미 公牒을 보내[擧] 각각 자사에게 職事를 돌려주었고 모든 州兵은 모두 자사가 관할하게 하였다. 또 景州는 본래 弓高縣이었으니 청컨대 폐지하여 縣으로 삼고, 歸化縣은 본래 草市였으니 청컨대 현을 폐지하고 예전 처럼 德州에 속하게 하시오.

라고 하자 [4월] 조서를 내려 모두 따랐다.¹⁶³⁾ 이로 인해 法制가 세워지고 [修立] 각각 名分을 지키게 되었다.

[穆宗 長慶 원년(821) 10월 王廷湊를 토벌하기 위해] 深州에 군대를 주둔시켰을 때 오중윤은 朝廷의 조치[制置]가 마땅하지 않다고 여기고 또 賊이 바야흐로 압박을 가하였으므로 쉽게 나아가지 못하고 몇 달 동안 관망하였다. 목종이 빨리 叛을 주살하고자 하여 마침내 杜叔良에게 대신하게 하고 오중윤을 檢校司徒·兼興元尹·充山南西道節度使에 임명하였다.¹⁶⁴⁾ 京師로 소환하여 다시 本官을 가지고 天平軍節度·鄆曹濮等州

163) 『자치통감』 권241, 원화 14년 3월 및 4월 조, 7768쪽. 관련 연구로는 日野開三郎, 『支那中世の軍閥』(『日野開三郎 東洋史學論集』 1, 三一書房, 1980), 137쪽, 471~475쪽; 張達志 저, 邢晨 역, 「당 후기 번진과 주의 관계」, 『동국사학』 72, 2021, 513쪽 등 참조.

164) 『자치통감』 권242, 장경 원년 10월 조, “橫海節度使烏重胤將全軍救深州, [호삼성 주: 時王庭湊圍牛元翼於深州] 諸軍倚重胤獨當幽·鎭東南, [호삼성 주: 橫海, 當鎭州之東·幽州之南] 重胤宿將, 知賊未可破, 按兵觀釁. 上怒, 以杜叔良爲橫海節度使, 徙重胤爲山南西道節度使”(7802쪽).

觀察等使로 삼았다. 李同捷이 滄州를 점거하여¹⁶⁵⁾ 부친의 지위를 세습 하길 청하였으나 조정이 따르지 않았다. 논자들은 狡童이 명을 거부한 것을 우려하여 重臣에게 대신하게 하자고 하였으므로 이에 兗海로 鎮을 옮기며 太子太師·平章事를 더해주고 滄景節度를 兼領하게 하고 예전처럼 齊州를 할양하여 [창경에] 예속시켰다. 대략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 평정하기를 바란 것이다. 제서가 내려온 지 10일 쯤에 오중윤이 卒하였고 太尉로 추증하였다.

오중윤은 行間에서 출세[出]하였다. 長帥가 되자 赤心으로 황제를 받들었고 능히 아랫사람과 함께 고생을 감내하였으며 이르는 곳마다 공을 세웠으나 한 번도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다. 賓僚를 잘 대우하였고 禮分이 모두 잘 갖추어져 당시 名士들이 모두 의부하기를 원하였다. 세상을 떠날 날 軍士 20여 인이 모두 股肉을 잘라 제물[祭酌]로 삼았다. 옛날의 名將이라고 해도 이보다 더한 것이 없었다.

아들 [烏]漢弘이 [爵을] 이었고 起復하여 左領軍衛將軍에 제수되었다. 오한홍이 表를 올려 服紀를 마치길 청하자 文宗이 嘉詔를 내려 이에 따랐다. 복상이 끝나자 巴야흐로 官을 제수하였다.

20. 『신당서』 권171, 烏重胤傳¹⁶⁶⁾

오중윤은 字가 保君이고 河東將 [烏]承玘¹⁶⁷⁾의 아들이다. 젊어서 潞의 牙將이 되고 左司馬를 겸하였다. 절도사 盧從史가 조서를 받들어 王

165) 정병준, 「唐 穆宗代 河北三鎮의 叛亂과 山東 藩鎮」, 『중국사연구』 33, 2004, 90~91쪽 참조.

166) 『신당서』 권171, 오중윤전, 5187~5188쪽.

承宗을 토벌할 때 음으로 賊과 연락하였다. 吐突承瓘가 장차 도모하고자 오중윤에게 알렸고 이에 노종사를 포박하였는데, 장막 아래[帳下]의 병사들이 무기를 들고 함께 시끄럽게 떠들었다. 오중윤이 질책하여 말하길 “천자가 명을 내렸다. 따르는 자는 상을 주고 어기는 자는 참수하겠다”라고 하자 병사들이 두려워서 부대[部]로 돌아가 감히 움직이지 않았다. 憲宗이 그 공을 가상하게 여겨 河陽節度使로 발탁하고 張掖郡公에 봉하였다.

황제가 淮蔡를 토벌할 때 조서를 내려 오중윤에게 병사를 이끌고 賊의 경계를 압박하게 하고 汝州를 할양하여 그 軍에 예속시켜 李光顏과 서로 기각을 이루게 하였다. 大小 100여 차례 싸웠으며 무릇 3년이 지나 賊이 평정되었고 두 번 승진하여 檢校司空이 되고 邠國公으로 進[封]되었다. 橫海軍으로 옮겨 建言하길

河朔이 능히 朝命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대개 刺史가 권한을 잃고 鎭將이 군대를 거느리고 능히 권세[威福]를 행사한 때문이다. 자사에게 직권[職]을 가지게 한다면 大帥가 비록 [安]祿山·[史]思明과 같이 간악하다고 해도 능히 1주에 의거하여 叛할 수 있겠는가? 신이 관할하는 3주는 곧바로 자사에게 직권을 돌려주어 각각 그 병사를 관장하게 하였다.

라고 하였다.¹⁶⁸⁾ 또 청원에 따라 景州를 폐지하였다. 法制가 세워져 당시 사람들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王廷湊을 토벌하기 위해 나가 深州에 주둔하였는데, 바야흐로 조정의 號令이 전후에 맞지 않고 賊이 점점 제어되지 않아 오중윤이 오랫동안 감히 나아가지 못하였다. 穆宗이 관망한다고 여기고 조서를 내려 杜叔良에

167) 『韓昌黎文集校注』 권6, 「烏氏廟碑銘」, 396~399쪽.

168) 앞의 『신당서』 이강전 역주에서 魏博의 田季安이 사망하였을 때 이강이 헌종에게 한 말을 아울러 참조하라.

게 대신하게 하고 오중운을 太子太保로 삼았다. 長慶 연간 말에 檢校司徒·同中書門下平章事로 山南西道節度使에 임명되었다. 京師로 소환하여 天平軍을 改節하게 하였다. 文宗 초에 司徒에 眞拜되었다. 李同捷이 부친의 지위를 세습하길 청하였으나 황제가 바야흐로 靜安에 힘썼으므로 이동첩을 兗海에 제수하고 오중운이 帥將이라고 하여 滄景을 겸하여 節度하게 하고 齊州를 軍에 예속시켰다. 얼마 지나지 않아 卒하니 나이가 67세였다. 太尉로 추증하고 시호를 懿穆이라고 하였다.

오중운은 行伍에서 나와 병사를 잘 어루만지고 아랫사람과 함께 고생을 감내하였다. 蔡將 李端이 오중운에게 항복하자 蔡人이 그 처를 잡아 죽였는데, 처가 [남편을] 부르며 말하길 “烏 僕射를 잘 섬기시오”라고 하였다. 士心을 얻는 것도 대략 이와 같았다. 官屬을 대할 때 禮가 있었기 때문에 溫造·石洪과 같은 당시 名士가 모두 幕府에 있었다. 사망하자 [軍]士 20여 명이 넓적다리[股]를 잘라 제사지냈다.

아들 [烏]漢弘이 爵을 이었다. 모친상 중에 기복[奪]시켜 左領軍衛將軍에 임명하였으나 고사하자 황제가 가상하게 여기고 허락하였다.